



■ 연구보고서 2013-31-0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여유진·김수정·김은지·최준영

【책임연구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공저)

【공동연구진】

김수정 동아대학교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13-31-0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13년
저자 여유진 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가격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978-89-6827-069-7 93330

발간사 <<

오늘날 여성의 지위가 분명 100년 전, 아니 30년 전에 비해서 크게 신장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대학진학률이 그 단적인 예로,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이미 남성의 대학진학률을 넘어섰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고, 각종 국가고시에서 여성이 수석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기사거리도 되지 못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격차(gender gap)는 세계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합계출산율 또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역설은 물론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경제·사회·문화적 기반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한 부문에서의 정책적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OECD에서 가장 긴 근로시간은 가사와 양육에서의 남성 참여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는 일-가정 분리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무릅쓰고 일과 가사·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은 고통을 호소하고, 일은 여성에게 창조적이고 자기개발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가정 경제상 불요불급한 활동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 단순히 국가경제적 필요의 차원에서 여성고용을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기간 내에 보육지원이 보편화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고용률이나 출산율이 높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좀 더 근본적이고도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이유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 사회의 여성 고용 현황을 짚어보고 낮은 여성 고용률의 원인과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좀 더 근본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 자평한다.

본 연구는 여유진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 연구진으로 최준영 연구원이 참여하였으며, 원외에서 동아대학교 김수정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박사가 참여하였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유의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원내의 박세경 연구위원, 정은희 부연구위원,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 김영순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윤자영 박사, 그리고 익명의 검독위원회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관련 연구 분야의 토론과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그 결과가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사회적·정책적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4
제2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실태	29
제1절 서론	31
제2절 기존 연구	32
제3절 여성 경제활동참가 실태	34
제4절 소결	49
제3장 여성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분석	53
제1절 서론	55
제2절 연구 배경 및 기존 연구	56
제3절 자료 및 연구 방법	63
제4절 분석 결과	64
제5절 소결	88

제4장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 국가간 비교분석	93
제1절 문제제기	95
제2절 복지국가, 탈산업화와 여성 경제활동참여	97
제3절 한국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여의 특징	99
제4절 복지국가 유형별 OECD 주요 국가들의 여성고용 현황	106
제5절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 국가들의 여성고용	124
제6절 소결	133
제5장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39
제1절 서론	141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143
제3절 연구자료 및 방법	148
제4절 분석결과	155
제5절 소결	166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71
제1절 요약 및 결론	173
제2절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181
참고문헌	189

표 목차

〈표 3- 1〉 분석대상 여성(25~54세)의 특성	65
〈표 3- 2〉 가구소득 계층별 특성	69
〈표 3- 3〉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후의 계층 변화	71
〈표 3- 4〉 유배우여성의 교육수준별 특성	72
〈표 3- 5〉 25~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logit 분석 결과)	74
〈표 3- 6〉 주요 변수의 Odds Ratio(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포함 전체모형)	76
〈표 3- 7〉 소득계층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logit 분석 결과)	77
〈표 3- 8〉 유배우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logit 분석 결과)	82
〈표 3- 9〉 Odds Ratio(유배우여성 전체)	85
〈표 3-10〉 유배우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logit 분석 결과)	86
〈표 3-11〉 여성 경제활동 참가 결정요인(로지트분석 결과 요약)	89
〈표 4- 1〉 한국과 OECD 평균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104
〈표 4- 2〉 한국과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국가 주요 경제활동 특성 (M자곡선 출현소멸시기)	123
〈표 4- 3〉 스웨덴('75, '95)의 주요 고용 특성(M자곡선 출현소멸시기)	126
〈표 4- 4〉 미국('74, '94)의 주요 고용 특성(M자곡선 출현소멸시기)	128
〈표 4- 5〉 독일('84, '00)의 주요 고용 특성(M자곡선 출현소멸시기)	130
〈표 4- 6〉 일본('08)의 주요 고용 특성	132
〈표 4- 7〉 한국('06)의 주요 고용 특성	133
〈표 5- 1〉 아내소득과 가구소득불평등의 관계	145
〈표 5- 2〉 기혼여성 노동시장 참여와 불평등 추이분석 (한국)	147
〈표 5- 3〉 부부소득 상관, 남편/아내/가구소득 상관의 변화(1998~2012)	156
〈표 5- 4〉 여성소득 변화시 분산계수 변화 모의실험 (CV)	159
〈표 5- 5〉 연도별 아내(25~54세) 취업률 변화(25~54세)	160
〈표 5- 6〉 스웨덴, 네덜란드의 여성소득상황을 적용한 분산계수 모의실험	165

부표 목차

〈부표 1〉 1996년 아내소득상황 대입시 지니계수 변화	169
〈부표 2〉 1996년 아내소득상황 대입시 CV 변화)	169

그림 목차

[그림 2-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990~2012년)	35
[그림 2- 2]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1990~2012년)	36
[그림 2- 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38
[그림 2- 4]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인구	38
[그림 2- 5] 산업별 취업자	39
[그림 2- 6] 성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1980~2012년)	41
[그림 2- 7]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1990~2012년)	42
[그림 2- 8] 성별 고용률(1990~2012년)	44
[그림 2- 9] 연령대별 고용률(1990~2012년)	45
[그림 2-10] 혼인상태별 고용률(1990~2012년)	46
[그림 2-11] 성별 실업률(1990~2012년)	47
[그림 2-12] 연령대별 실업률(1990~2012년)	48
[그림 2-13] 혼인상태별 실업률(1990~2012년)	48
[그림 3- 1] 주요 OECD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의 관계(2009년)	58
[그림 4-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963~2012), 15세 이상 전체	100
[그림 4- 2] 연령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1980~2012)	100
[그림 4- 3]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0~2012)	101
[그림 4- 4] OECD 주요 국가들의 여성 고등교육(전문대이상) 학력 비율	102
[그림 4- 5] 한국과 OECD 평균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12)	105
[그림 4- 6] 한국('12)과 OECD 평균('60~'1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106
[그림 4- 7] 자유주의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107
[그림 4- 8] 호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0~2012)	108

[그림 4- 9] 뉴질랜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5~2012)	109
[그림 4-10] 캐나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76~2012)	109
[그림 4-11] 영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4~2012)	109
[그림 4-12] 미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60~2012)	110
[그림 4-13] 보수주의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111
[그림 4-14] 오스트리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94~2012)	112
[그림 4-15] 독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70~2012)	112
[그림 4-16] 벨기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3~2012)	113
[그림 4-17] 프랑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3~2012)	113
[그림 4-18] 네덜란드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90~2012)	113
[그림 4-19] 사민주의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114
[그림 4-20] 덴마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3~2012)	115
[그림 4-21] 핀란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90~2012)	115
[그림 4-22] 노르웨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5~2012)	116
[그림 4-23] 스웨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63~2012)	116
[그림 4-24] 남유럽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117
[그림 4-25] 그리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3~2012)	118
[그림 4-26] 이탈리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5~2012)	118
[그림 4-27] 포르투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74~2012)	119
[그림 4-28] 스페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72~2012)	119
[그림 4-29]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120
[그림 4-30] 일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65~2012)	121
[그림 4-31] 한국과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국가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2)	122
[그림 4-32] 한국과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국가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M자 곡선 출현시기)	122
[그림 5- 1] 아내소득과 가구소득불평등의 관계	153
[그림 5- 2] 도시근로자 유배우가구에서 경상소득, 남편소득, 아내소득 지니계수 변화 (1998~2012)	155

[그림 5- 3] 아내소득변화시 지니변화(1998년 아내 평균과 분포로 통제)	158
[그림 5- 4] 아내소득변화시 지니변화(2012년 아내평균과 분포로 통제)	158
[그림 5- 5] 아내소득변화시 지니계수 변화(아내소득=0)	158
[그림 5- 6] 남편소득분위별 아내고용률	161
[그림 5- 7] 남편소득 분위별 아내소득 변화	162
[그림 6- 1] 연령별 출산율 분포	175
[그림 6- 2] 성별 임금격차	178
[그림 6- 3] 여성취업 장애요인	179

Abstract <<

The study of women's employment activation plan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rends, determinants and impac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Korean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in comparison with their counterparts in selected OECD countries. Also, the authors assess how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influence the households, individual welfare, and inequality, in order to come up with political direction and measures to enhance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analysis results.

Korea is practically the only country with low economic participation rates of women by age showing a clear 'M-shaped' curve among the OECD nations. Second, the industries in which women are mostly distributed include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accommodation and food industry, education service industry,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and it was shown that the number of women who are engaged in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rapidly increased recently. Third, considering the median levels of income of 50~150%, the economic participation of high-income women was as low as 52.0%, whereas the economic participation of low-income women was as high as 80.7%, and this showed a

2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huge deviation in economic participation rates of women by economic class. Fourth, although the availability of children was shown to have a very meaningful impact on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its impact was shown to differ a lot according to the levels of income of women and the age of children. Lastly, it was shown that the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not only made a large contribution to making the society a 'middle-class', but also the income of women contributed to equalizing the households income.

From the findings several political implications are drawn. Firs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urrent mis-match status of women's job, and generate jobs based on the demands of women. Second, it is necessary to create child-rearing policies and educational policies that are friendly to 'mothers with jobs'. Third, it is necessary to change Korean labor market and the welfare system into 'women-friendly' one as claimed by Orloff (2006). Lastly, the employment of women should pursue reducing social inequality, which is regarded as one of major social goals.

I. 서론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실태와 참가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 한편,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구와 개인의 경제적 복지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봄으로써,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할애되었다. 제2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실태”에서는 지난 20여년 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을 연령별·혼인상태별·교육수준별·고용형태별로 분석함으로써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3장 “여성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분석”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가구특성 요인을 밝힘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제4장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 국가간 비교분석”에서는 분석의 지평을 국외로 확장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여의 특성을 좀 더 명확히 도출해 내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들의 특성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5장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여성 배우자의 경제활동, 즉 가구소득에의 기여가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여성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

4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될 경우 가구 경제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은 지금까지의 논의와 분석에 바탕을 두고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끌어내고자 하는데 할애되었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근거에 기반한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해 현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계량적 분석 방법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실태와 결정요인,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OECD 노동통계자료」와 「LIS(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등이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각 장에서는 장별 주제와 관련된 기존 국내외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적 제언에 좀 더 현실성을 부여하고자 관련 정책부서(보건복지부), 연구자(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취업맘에 대한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도 함께 진행하였다.

II.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실태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1963년 37%에 불과하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50%에 도달하였다(김혜원, 2006).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65세 미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2011년 기준 54.9%로 OECD 평균 61.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본 장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 요인이나 그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여성경제활동 참가 실태를 연령별·계층별·혼인지위별·산업별 등으로 분해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누가, 언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성경제활동참가 실태와 추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변화의 경향과 수준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를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이후 제시될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는 토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보면 1990년대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고,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정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9.9%에서 2012년 55.2%로 증가하였다.

둘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35세 미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55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여전히 M자 곡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성의 고학력화로 인해 경제활동참가 시기가 대체로 20대 중반 전후로 늦추어지고 20대 참가율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 1980년대에 비해서는 크게 완화되었으나, 30세 전후 결혼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퇴거가 크게 증가하고 평탄구간이 생김으로써 퇴장기간이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여성의 경우 산업과 직종별 경제활동참가를 살펴보았을 때, 남성에 비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

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급감과 상용 및 임시근로자의 급증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힐 수 있다.

넷째, 2000년대 이후, 여성의 고용률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계층은 25~35세, 35~45세, 45~55세 이상의 연령층이었으며, 이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로는 35~45세의 여성의 고용률은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여성의 실업률은 1998~1999년과 2003년 이후의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등에 영향을 받은 공통적인 흐름이다. 특히, 25~34세 여성의 실업률은 4~6%대로 남녀 평균 3%대보다도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여전히 'M자형'을 그리고 있다. 다만 'M자형'의 계곡은 1980년대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으나, 30세 전후 결혼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퇴거가 크게 증가하고 평탄구간이 생김으로써 퇴장기간이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M자형을 역U자형으로 변환시키는 것, 즉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퇴장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여성 고용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남성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됨으로써 40대 이후 여성의 임금근로자화가 급속히 진

행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 여성의 일자리는 주로 저학력·단순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한편으로는 기존 일자리 질을 높이는 노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고학력 여성들이 취업할만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III. 여성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분석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 성 격차(gender gap)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평등 순위가 조사대상국 136개국 중 111위를 기록한 것이나, 여성문화네트웍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워킹맘 고통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1%가 ‘고통을 느낀다’고 대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높은 장벽과 여러 가지 장애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경제활동 주 연령대(primary age)인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여성의 인적자원 특성, 주양육자(carer)로서의 여성의 역할, 배우자 유무와 배우자의 지위, 여성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의 소득 등이 생애주기별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함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성의 연령, 혼인여부, 계층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참가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집단별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인적 자본의 대표적인 변수라 할 수 있는 교육수준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현저한 특징은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73.2%)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둘째, 연령 효과는 유배우 여성에서만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연령효과는 양으로 나타나 25~39세보다는 40~45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두 집단을 분리해서 분석했을 때는 연령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로 35세를 기점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50대 이후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최근 직장의 고용형태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대체로 최근 직장이 정규직인 경우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에서 여성의 일자리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널리 분포해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 마지막으로 일했던 직장이 정규직 일자리였던 여성의 경우 의중임금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 한편, 최근 일했던 적이 없는 여성(비해당)의 경우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여성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의 유무는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모형에서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6~9세 아동 제외)에서는 가구 내에 돌봐야 할 아동이 존

제하는 것이 그들의 경제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및 시사점

정책적 함의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이미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가 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경우 케어가 필요한 아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만큼 여유가 없는 계층이며, 의중임금이 낮아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계층이다. 정책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육에서 저소득층 맞벌이가구에 대해 좀 더 강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장려세제, 주거급여 등 실질적 소득보장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일과 복지’의 양립을 통해 중산층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기회비용과 의중임금이 높아 비경활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비경활 사유는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맞물려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의식(자녀 교육에 대한 과도한 몰입과 경쟁)과 제도(공보육 및 공교육의 제자리 찾기)가 동시에 바뀌어야 하나 그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사회화함과 동시에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기회비용을 낮추고, ‘유연안정성’의 관점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층 여성들의 경우 내부적·외부적 양극화가 발견된다. 내적 양극화란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이 반반이고, 일하는 여성의 경우 고소득의 안정적이고 기업복지 수준이 높은 일자리에 상대적으로 집중되

어 있다는 것이다. 외적 양극화란 고소득층 일하는 여성의 일자리와 저소득층 일하는 여성의 일자리 간 일자리의 질에 있어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유지하면서 맞벌이가구 확대정책을 추구할 경우 가구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외적 양극화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적으로 일자리 양극화를 줄이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IV.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여: 국가간 비교분석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왔으나, 최근 5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참여의 정체는 특히 출산, 초기 양육기의 경제활동참여 제한과 직결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여의 특징은 임신·출산시기를 전후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다가 중장년기에 다시 유입되는 M자 형을 보이는 데에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일가족양립정책 등의 확충에도 여성경제활동참여가 늘고 있지 않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늘리기 위해 복지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주요 복지국가들과 한국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여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주요 복지국가들에서 여성고용을 늘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특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구간을 살펴볼 것이며,

OECD 주요 국가들의 과거 경험에서 M자형 곡선의 출현이 있었는지, 이와 같은 M자형 곡선은 언제 소멸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M자 곡선의 출현시기와 소멸시기, 여성의 연령별 고용상태를 분석하여 어떤 부분의 고용을 통해 M자 곡선을 탈피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2. 주요 연구결과

본 장에서 분석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으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60세 이상 노년기에서는 한국이 OECD 평균을 상회하여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prime 연령대로 한정할 경우 OECD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연령대별로 분명하게 발견되는 M자 곡선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둘째, 복지국가 유형별로 OECD 주요 국가들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여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복지국가 유형에서 M자 곡선이 출현한 시기가 있었다. 특히 복지국가 유형 중에서는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M자 곡선이 비교적 분명하게 출현하였다.

셋째,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국가들에서 M자 곡선시기와 역U자 곡선시기 부문별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M자 곡선이 개선된 시기 서비스고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M자 곡선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서비스부문 고용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역U자곡선이 출현한 시기의 스웨덴,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다.

넷째, 복지국가 유형별로 대표적인 국가들의 M자 곡선 탈피를 전후한

여성고용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M자형 곡선 이전시기 연령이 높아져도 고용지위는 상승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던 반면, 역U자로 전환된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지위가 개선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관리자, 전문가 등 직업과 임금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스웨덴에는 못 미치지만 직업과 임금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하였고, 독일의 경우에는 M자 곡선이 사라진 이후에도 고용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직업이나 임금 측면에서 개선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M자 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경우 고용의 질은 낮은 수준이었고 연령에 따른 고용지위는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M자 곡선 탈피를 전후하여 공공부문은 모든 국가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M자 곡선의 탈피는 상당부분 공공부문의 안정적 고용에 기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도 공공부문은 연령별로 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임금을 높이는 경력축적의 중요한 경로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이미 탈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지만, 여성들의 고용지위는 임신·초기 양육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경력단절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경력이 축적되지 않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청된다. 우선 노동공급 지원 측면에서, 임신 및 초기출산에 대한 정책의 고용친화성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장년기나 노년기의 재고용, 재취업촉진에 앞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출산초기양육기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은 상당히 확대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니라 어떤 방향의 확대인지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올해 크게 확대된 보육정책의 고용친화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양육수당과 같이 보육시설 수요를 제한하는 정책에서, 국공립보육시설 등 고용지원 인프라의 공급확대 및 관리정책으로 중점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와 같이 임신·초기양육기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다 좋은 고용성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중심의 서비스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단순히 탈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서비스고용의 증가로 M자 곡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서비스고용비율도 이미 낮지 않은 상황이며, 한국보다 서비스고용이 훨씬 높지만 아직도 M자 곡선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복지국가 유형에서 과거 M자 곡선이 발견되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M자 고용을 개선하는 데에는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공공부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수록 여성고용의 질도 높아지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2011년도를 기준으로 전체고용 중 일반정부 고용¹⁾은 북구 국가들의 경우 30%에 육박하며, OECD는 평균적으로 15.5%인데 비해 일본은 6.7%, 한국은 6.5%에 불과하다(OECD, 2013). 성별분리의 위험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1) OECD는 공공부문 고용을 일반정부와 공기업 고용으로 구분하여 통계치를 작성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공기업 고용비율은 따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전문화된 사회복지고용과 공공부문을 통해 탈산업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Esping-Andersen, 1999) M자형 곡선을 탈피하여 여성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스웨덴의 사례는 여성고용증대의 한계에 달해 있는 한국사회에도 함의를 주고 있다.

V.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장에서는 1990년대말 경제위기 이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개인소득불평등의 동학이 가족, 가구단위로 결합됨으로써 전체 불평등의 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는 생애주기에 걸친 여성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경제영역에서 양성평등을 확대시키며 가족 내에서도 협상력을 증가시켜 불평등한 성별분업체제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의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유유상종’ 결혼, 혹은 동류혼(marital homogamy) 현상과 병행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구불평등을 증대시키는 경향과 병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소득동질혼(김영미·신광영, 2008), 직업동질혼(이성균, 2008)이 진척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말 경제위기이후 2012년까지 기혼여성의 소득활동과 가구소득 불평등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유배우가구 소득자료를 이용해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자료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이며 분석 대상

은 유배우 도시근로자가구중 여성연령이 25~54세(핵심근로연령층)인 가구로 한정했다. 분석방법은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가정을 적용해 수행되는 모의실험(simulation) 방법을 적용했다. 이 방법으로 경제위기 이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가구불평등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고, 가족의 소득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가구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경제위기시기인 1998년, 아내소득분포가 가장 불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 아내소득분포의 개선이 가구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반사실적(counterfactual) 실험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98년 이후 아내소득상황(평균과 분포)이 개선되지 않았더라면 가구불평등이 현재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써 98년 이후 아내소득상황의 개선이 가구소득불평등의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아내소득의 평등화 효과와 관련하여 관련 요인들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첫째, 도시근로자 유배우가구에서 경우 1998년이래 아내의 노동공급이 크게 증가했다(1998년 36%에서 2012년 52.6%). 여성경제활동참여가 낮은 국가에서 여성의 취업증가는 가구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고용효과'(employment effect)를 낳는다. 98년 이후 여성취업의 증가는 여성내부의 소득불평등을 줄이고(0값이 감소) 아내 소득비중을 높이기 때문에 가구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다.

둘째, 1998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남편의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아

내의 고용률이 높고 고소득층보다 중간층 및 저소득층에서 노동공급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특히,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의 경우 2012년 71%의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높다. 저소득층 노동공급이 증가할수록 여성내부의 불평등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는 평등화 효과를 낳았다.

셋째, 소득동류혼이 증가할수록 아내소득은 가구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소득 5분위별 아내소득평균은 모든 시기에 걸쳐 소득이 가장 낮은 분위인 1분위에서 가장 높았으며, 고소득 배우자를 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남편고소득분위에서 아내고소득자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부부소득상관계수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동류혼 경향이 뚜렷하지 않고 이로 인한 영향력 역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가구소득불평등은 아내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남편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를 제외하면 아내소득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처럼 아내소득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아내소득불평등에 의한 가구소득불평등 기여는 제한적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가상적 상황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98년에 비해 가구소득불평등이 개선되는데 기여해왔다. 반사실적 가정과 연관된 분석 방법과 관련하여 이 진술의 의미를 보다 특정화한다면, 기혼여성의 노동

시장참여수준이나 소득분포가 98년에 머물러 있었다면 가구소득불평등은 현재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아내소득수준 및 분포가 개선됨으로 인해 불평등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평등화 효과(equalizing effects)’는 노동공급의 전반적인 증가로 인한 ‘고용효과’와 저소득층 아내의 노동공급으로 인한 효과가 주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아내의 노동공급은 이미 70% 수준에 도달해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공급하는 방식은 불평등과 관련하여 큰 개선효과가 없을 것이다. 저소득층 아내의 노동공급을 통해 가구소득 불평등 완화는 저소득층 아내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이 이미 높기 때문에 시효만료되었다는 진단(장지연·이병희, 2013)도 있다. 저소득층 아내들이 취업해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등 노동시장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간층 이상의 아내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중간층 아내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중간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간층가구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해 중간층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는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다.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현실화해가는 것이 우리사회 중간층을 두텁게 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고소득층 여성의 ‘약진’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남녀불평등이 개선되는 징후로 환영할 일이다. 물론 동류혼으로 인해 소득수준의 고-고, 저-저 커플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지만, 등은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분배적 사회정책을 통해 가족, 가구간 격차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여성 경제활동실태와 경제활동 참가 요인 및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봄으로써 여성 경제활동을 고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명확한 'M자형' 곡선 형태를 보이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동일한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일본 역시 'M자형'을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그 골이 깊지 않으며,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둘째, 여성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산업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며, 특히 최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급감하고 대신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셋째, 중위소득 50~150%를 기준으로 할 때, 고소득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0%로 낮은 반면,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여성의 경우 64.4%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였다. 넷째, 아동의 존재는 여성 경제활동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도는 여성의 소득계층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중산층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려와는 달리 유배우 여성의 소득은 가구소득을 평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본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여성 일자리 불일치(mis-match)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의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비경활인구에 대한 대표성있는 조사 실시, 시간제 일자리의 유연안전성 확보,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양성평등과 여성 독립성 고취 교육 등이 요구된다. 둘째, '취업맘 친화적'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의 재편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취업맘 중심적인 보육시설의 인센티브 강화, 직장 및 공공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정책 설계시 여성의 고용영향평가 실시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복지 지형 자체를 Orloff(2006)가 말하는 바의 '친여성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관련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제고, 정서 및 감정 노동에 대한 안전규범 강화, 노동시장 내 남녀간 임금 격차와 근로조건 차별 해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여성, 고용활성화, 경제활동참가 요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북구유럽이나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²⁾. OECD의 15~64세 기준 여성 고용률은 2011년 53.1%로, 스웨덴(71.9%), 노르웨이(74.4%), 덴마크(70.4%) 등 북구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영국(65.3%), 미국(62.0%) 등 영미권 국가와 OECD 평균(56.7%)에도 못 미친다. 그 동안 여성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한 상황³⁾에서 이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의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낮은 고용률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기업과 가족문화, 자녀 양육의 비사회화와 과도한 교육투자예의 몰입, 양질의 여성 일자리 부족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명확한 'M'자형을 그리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결혼, 출산과 아동 양육기에 경제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가지적·비가시적 장벽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사회 양극화로 인하여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적 차원에서 남성 주부양자 중심의 경제활

2) 최초 통계 작성시점인 1963년 당시 여성의 고용률은 34.3%에 불과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3년에는 40.6%까지 상승하였고, 2011년 현재는 48.1% 수준이다(www.kosis.kr).

3) 2011년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75%로 남성의 70.2%를 4.8%p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용노동부, 2012).

동만으로 가족의 복지와 안정을 추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여성 개인의 차원에서 고학력화와 평등의식의 고양으로 인해 일을 통한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라는 의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일-가정 양립은 점점 더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 정부도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과 여성의 고용 확대를 주요 세부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근거에 기반한 실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실태와 참가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 한편,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구와 개인의 경제적 복지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봄으로써,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 내용

본 보고서는 「여성고용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는데 주요 부분을 할애하기보다는 여성 경제활동의 실태를 엄밀히 분석하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혹은 하지 않는” 요인을 밝히고,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특성을 OECD 국가와 비교하며, 여성 경제활동이 가구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여성 고용을 증진시킴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대안이 설계될 수 있도록 근거와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할애되었다.

제2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실태”에서는 지난 20여년 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을 연령별·혼인상태별·교육수준별·고용형태별로 분석함으로써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90~2012년)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연령을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노인을 제외한 경활인구의 경제활동 추이를 좀 더 명확히 보고자 하였다. 또한 남성 경제활동과의 비교를 통하여 여성 경제활동이 가지는 특성을 도출해 내하고자 하였다.

제3장 “여성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분석”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가구특성 요인을 밝힘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 조사(Wave 2012)의 가구조사와 개인조사 결과를 머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앞의 2장보다 그 대상 범위를 좀 더 축소하여- 노동시장의 주(prime)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25~54세로 한정하였으며, 분석 단위는 여성 개인이다. 먼저, 개인 특성별·가구 특성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소득을 기술분석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의 특성별 결정요인의 차이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분석 모형을 전체, 무배우자와 유배우자, 25~39세와 40~54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 국가간 비교분석”에서는 분석의 지평을 국외로 확장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여의 특성을 좀 더 명확히 도출해 내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들의 특성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M자형’ 곡선이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종단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M자형’ 곡선이 사라지면서 ‘역U자형’으로 전환되는데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했는지에 주목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관련 통계, 그리고 LIS(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들을 자유주의 국가군(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영국), 보수주의 국가군(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사민주의 국가군(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남유럽 국가군(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동아시아 국가군(일본, 한국)으로 나누어 복지국가 유형별로 연대별·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국가(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를 선정하여, M자형 곡선이 역U자형으로 전환하는 동안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다.

제5장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여성 배우자의 경제활동, 즉 가구소득에의 기여가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여성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될 경우 가구 경제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동류혼(marital homogamy)과 결합될 때 가구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이를 사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함이다. 분석을 위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

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주 연령층인 25~54세 가구이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가구소득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가정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모의실험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동류혼적 성향과 맞벌이 증가 경향이 가구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족의 소득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은 지금까지의 논의와 분석에 바탕을 두고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끌어내고자 하는데 할애되었다.

2. 연구 방법

지금까지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 실태와 변화의 경향, 여성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OECD 국가의 복지레짐별·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 경향과 최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적 요인 분석, 여성 경제활동참가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여성 고용 활성화 방향과 방안에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근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하여 현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계량적 분석 방법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실태와 결정요인,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 분석 기간, 요구되는 변수에 따

라 가장 적확하다고 판단되는 원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여성 경제활동 실태와 변화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여성 개인 단위의 경제활동 참가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변수를 포괄적으로 갖추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OECD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 경향과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OECD 노동통계자료」와 「LIS(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를,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참가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관련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신뢰도 높은 원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된 다각도의 계량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시사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각 장에서는 장별 주제와 관련된 기존 국내외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각 장의 분석 가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결과의 비교 검토를 위해서이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적 제언에 좀 더 현실성을 부여하고자 관련 정책부서(보건복지부), 연구자(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취업맘에 대한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도 함께 진행하였다.



제2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실태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연구

제3절 여성 경제활동참가 실태

제4절 소결

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실태 <<

제1절 서론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1963년 37%에 불과하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50%에 도달하였다(김혜원, 2006).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65세 미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 54.9%로 OECD 평균 61.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가사와 양육부담을 여성들이 주로 부담하는 전통적인 문화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은 급격히 높아진 것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저조라는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 요인이나 그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여성경제활동 참가 실태를 연령별·계층별·혼인지위별·산업별 등으로 분해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누가, 언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성경제활동참가 실태와 추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변화의 경향과 수준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를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이후 제시될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는 토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2절 기존 연구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및 산업구조의 재편과 더불어 가족 재구조화와 성역할의 변화 역시 여성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 요인이다.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평생고용의 의미가 사라지고,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담당자의 성별분업에 기초한 가족임금제의 패러다임이 흔들리면서 여성의 취업은 삶의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어가고 있으며, 여성은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가계의 경제를 책임지거나 함께 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렇듯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를 상회하는 북유럽국가들이나 북미 국가들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취업이 된 경우에도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머물 확률이 높고, 전문직보다는 서비스, 판매직, 또는 단순직에 종사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 연구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이유를 성차별적인 시장구조, 필요노동력 수급의 문제, 직업교육이나 훈련의 부족에서 비롯된 시장능력의 차이, 출산과 자녀양육의 가족책임, 가부장적인 기업문화 등에서 찾고 있다 (백진아, 2004).

또한, 최근 김복순(2012)의 연구는 성장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의 고용 속내를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핵심계층인 30~40대 연령층의 고용률이 2012년 정체되어 있는 반면, 50대 연령층의 고용률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에 달해 있음을 밝혔다. 이들 여성들의 고용률 상승은 주로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임시직 채용 증가나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창업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지표로 보이는 경기보다도 더 좋지 않은 체감경기를 일정 정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처럼 여성고용의 증가는 '괜찮은 일자리'의 증가보다는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를 수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30대 연령층에서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 노동시장 양극화의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한 김영옥 외(2006: 71)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은 남성과 비교해서, 그리고 이론적 양극화 논의에서와 같은 뚜렷한 U자형 양극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위수준과 상위수준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중간수준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간수준의 일자리도, 하위나 상위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더딘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즉, 비대칭적 양극화 추이를 보였다. 하위 일자리 취업 여성들의 빈곤화를 예측할 수 있는 유형으로 여성노동시장의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위 일자리의 증가가 상위나 중간수준 일자리 증가폭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하위 일자리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김복순(2012)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상위와 중간수준 일자리의 증가추세가 목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일자리에는 저학력인 반면 높은 연령대의 여성들이 주로 취업하며 단시간 비정규직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일자리 특성은 전반적인 여성근로층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확대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김영옥 외, 2006:71).

금재호·윤자영(2011:94-100)연구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39.3%, 여성은 51.0%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49천명에 달하지만 이중 실망실업자는 63천명, 한계근로자는 6천명에 불과하였다. 단, 취업희망자는 184천명으로 실업자 규모(4주 기준)의 60.6%를 차지하였다. 여성의 실망실업자, 한계근로자 및 취업희망자 규모나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남성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낮았다. 즉,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취업활동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첫째,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의사가 별로 없는 '실질적인' 비경활동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저임금의 서비스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어 여성 노동시장의 주변화 내지 양극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30대를 전후로 한 여성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거'현상은 여전히 이러한 현상이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본 장에서도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여성 경제활동참가 실태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제3절 여성 경제활동참가 실태

본 장에서 활용한 분석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이다. 본 조사는 취업 및 실업, 노동력 등 경제활동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국가공식통계이다. 활용데이터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0~2012년 머지데이터이며, 전체, 남성, 여성의 특성별(연령, 혼인상태, 가구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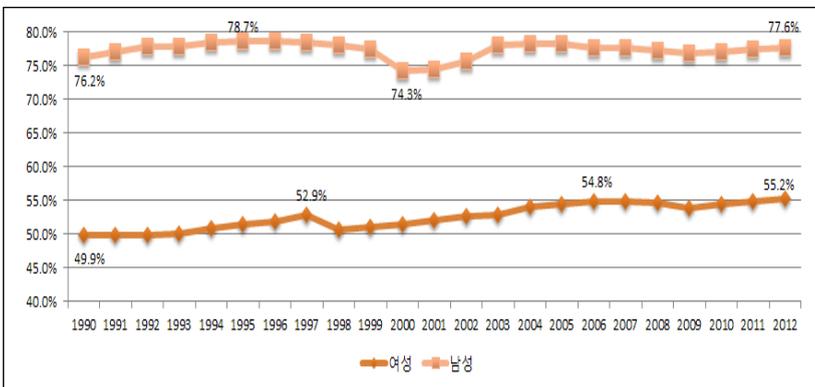
의 관계, 교육수준, 고용형태)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1.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먼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보면 1990년대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고,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정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76.2%에서 2012년 77.6%로 1.4%p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00년 74.3%로 최근 23년간 가장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9.9%에서 2012년 55.2%로 5.3%p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2011년 기준 OECD 평균 61.8%, 한국 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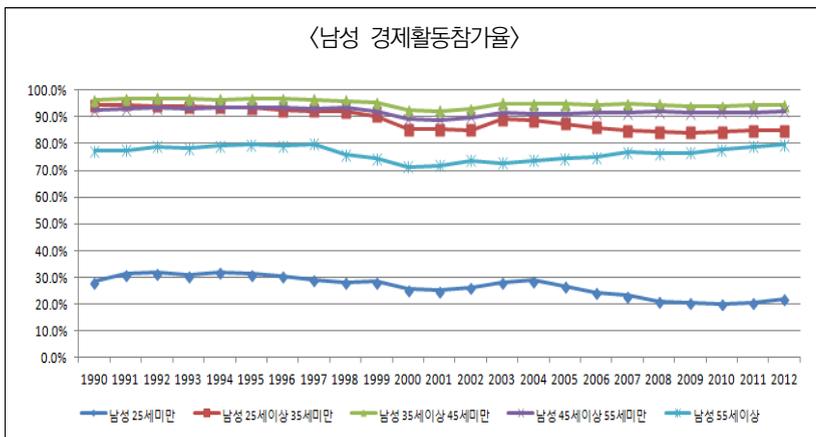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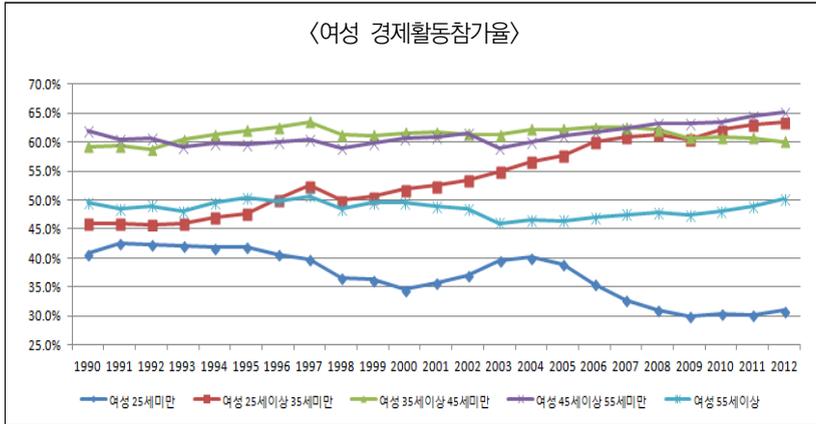
[그림 2-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990~2012년)



주: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1990~2012)

3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2-2]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1990~2012년)



주: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1990~2012)

다음으로,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5세 미만의 경우 1990년 40.7%에서 2012년 30.9%로 9.8%p 감소하였으며, 25~34세의 경우 46.0%에서 63.4%로 17.4%p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고학력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고졸 이후 취업이 줄어들고 대졸 이상 취업이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3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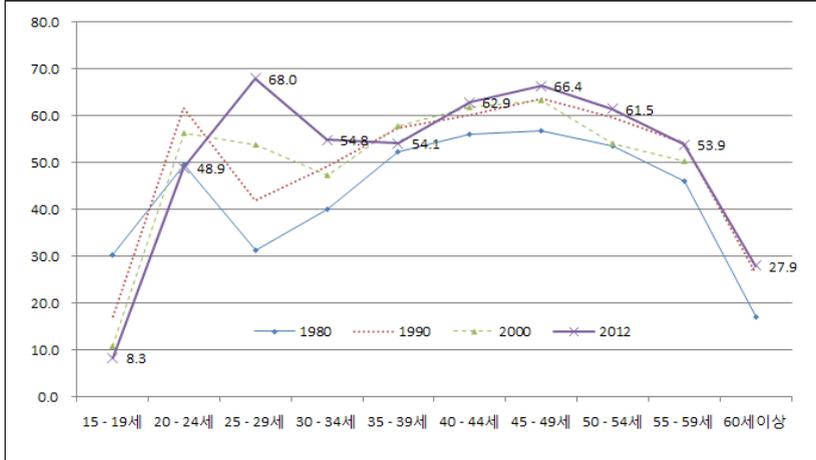
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거나, 증가폭에 있어 35~44세의 경우 0.6%p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는 만혼과 비혼의 증가와 출산 연령지연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45~54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이 3.1%p로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35세 미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면, 55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여전히 M자 곡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성의 고학력화로 인해 경제활동참가 시기가 대체로 20대 중반 전후로 늦추어지고 20대 참가율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M자형'의 계곡은 1980년대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으나, 30세 전후 결혼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퇴거가 크게 증가하고 평탄구간이 생김으로써 퇴장기간이 좀 더 늘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즉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절대적인 여성의 수는 40대가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은 남성과 달리 생애주기에 따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구조에서 나타나는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경제활동참가율이 20~24세(최근에는 25~29세)와 40~54세의 연령층에서 최고 수준을 보이며, 그 사이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단절되어 이른바 M자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물론 완만해지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특정연령층에 속한 여성노동단절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백진아, 2004).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시장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출산이나 육아, 자녀교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과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김복순, 2012; 백진아,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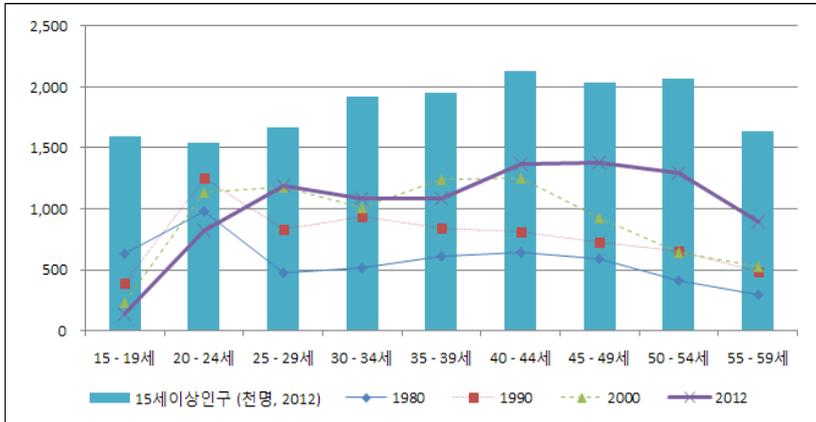
38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2-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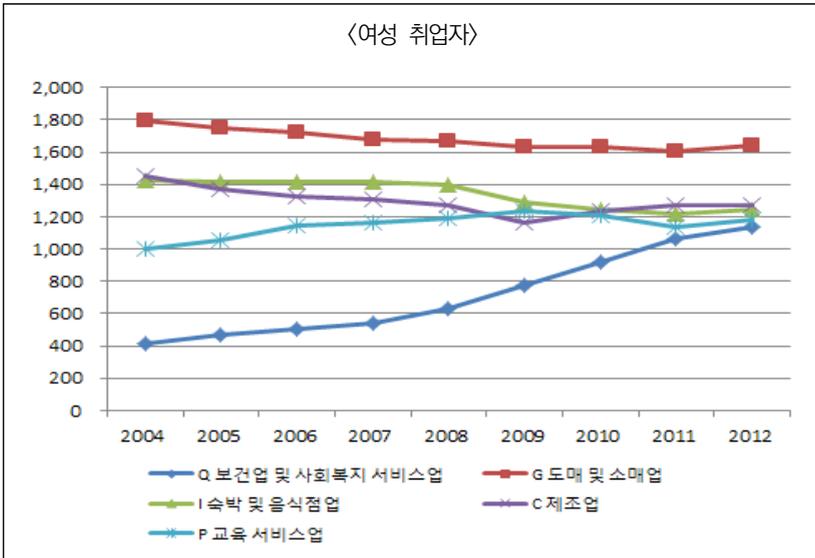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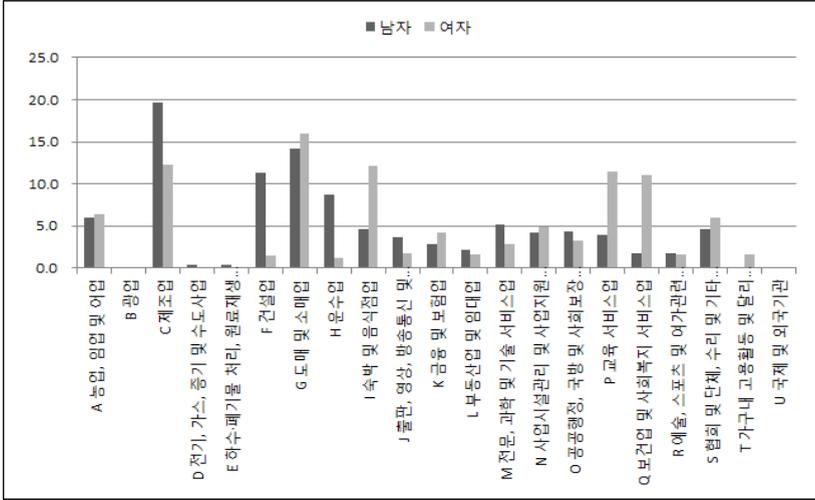
자료: www.kosis.kr(원자료 다운일자: 2013/06/12)

[그림 2-4]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인구



자료: www.kosis.kr(원자료 다운일자: 2013/06/12)

[그림 2-5] 산업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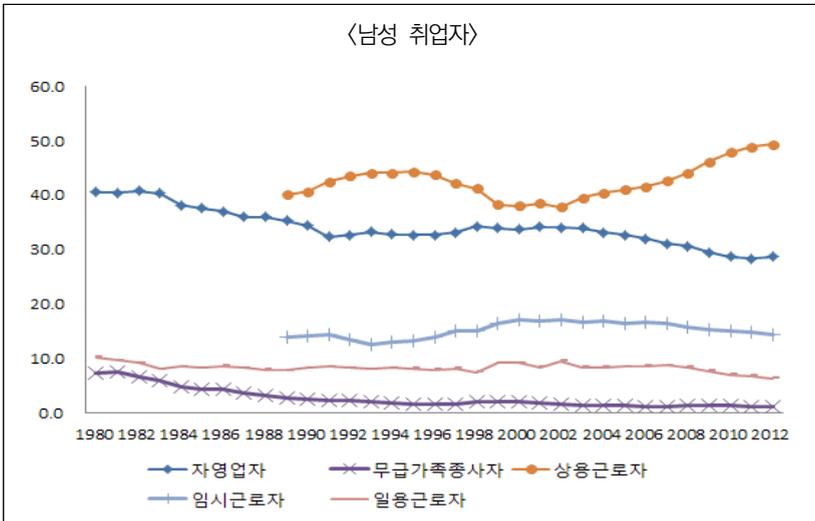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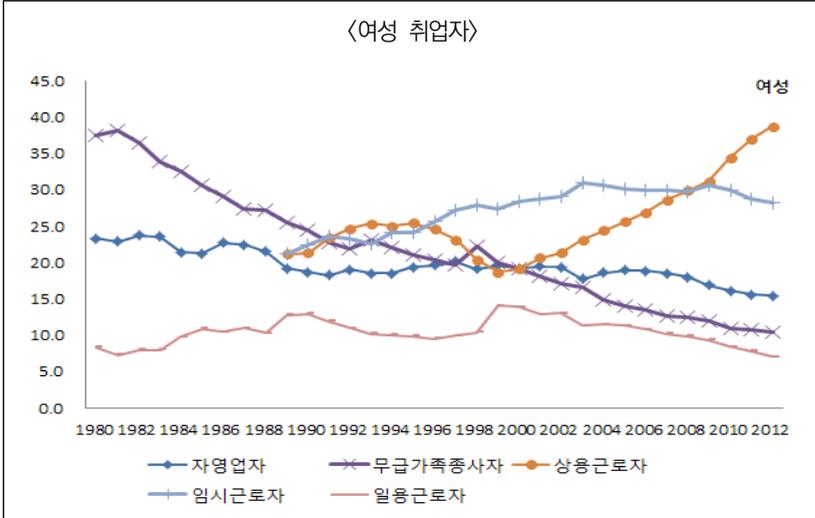


자료: www.kosis.kr(원자료 다운로드: 2013/06/13)

산업과 직종별 경제활동참가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2006년까지만 해도 502천명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현재 1,138천명으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장기요양서비스, 보육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급증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기존에 여성이 대거 진출해 있던 숙박음식점업, 도 소매업, 제조업 등은 최근 몇 년간 여성 취업자 수가 정체 상태이거나 약간 감소한데 비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김복순(2012)의 경우 50대 고용률 상승을 주도한 것이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서의 임시직 채용이나 창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최근 이러한 기존 여성 주고용 산업부문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의 이동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지난 20여년 동안 종사상 지위별 분포나 순위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데 비해, 여성의 경우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급감과 이에 반비례하는 상용 및 임시근로자의 증가이다. 표면상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약간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여성취업자의 내부구성에는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 자영자-여성 무급가족종사자를 대신하는 '실질적인' 양별이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그림 2-6] 성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1980~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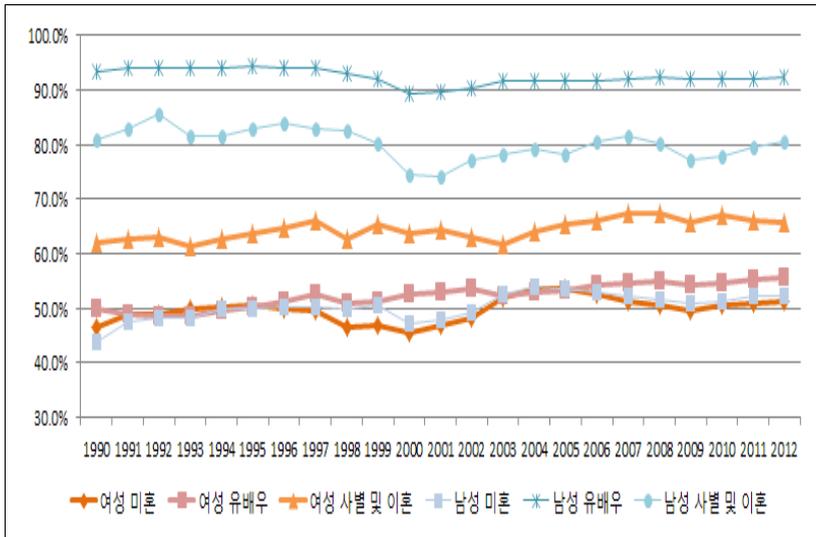


자료: www.kosis.kr(원자료 다운일자: 2013/06/13)

42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자영업 비중이 서구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⁴⁾에서 이러한 변화는 서구 복지국가의 ‘남성가장-여성주부’형 복지국가에서 ‘맞벌이’형 복지국가로의 변화에 견줄 수 있는 새로운 변화양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여성의 ‘임금근로자화’현상으로, 이를 앞선 결과와 결합시키면 무급가족종사자의 상당수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2-7]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1990~2012년)



주: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1990~2012)

4) 2012년 자영업자는 571.8만명으로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취업자 대비 비중 23.2%)로, 한국은 OECD 국가에서 터키, 그리스,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기획재정부, 2013).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미혼여성은 1990년 46.5%에서 2012년 51.1%로 4.6%p 증가하였으며, 사별 및 이혼 여성 역시 62.2%에서 65.7%로 3.5%p 증가하였다. 유배우 여성도 1990년 49.8%에서 55.7%로 5.9%p 증가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우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경향이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서구 국가에서의 맞벌이가구가 증가와 동일한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유배우 남성과 사별 및 이혼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약간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미혼 남성의 경우에는 1990년 43.9%에서 2012년 52.2%로 8.3%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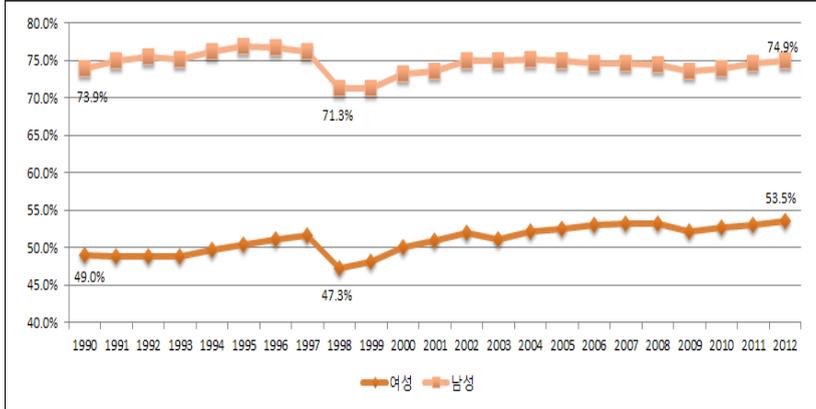
2. 고용률⁵⁾ 비교

여성 고용률은 1990년 49.0%에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7.3%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53.5%를 기록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1990년 73.9%에서 2012년 74.9%로 1%p 증가하는데 그쳤다. 남성의 경우 지난 20여년 동안 고용률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나 공급 측면에서 모두 어느 정도 '포화'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남성에 비해 산업별·종사상 지위별로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수요 측면에서나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와 '수용'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5)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에 비해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따라서 둘 간의 차이는 실업자를 포함하느냐의 여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44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2-8] 성별 고용률(1990~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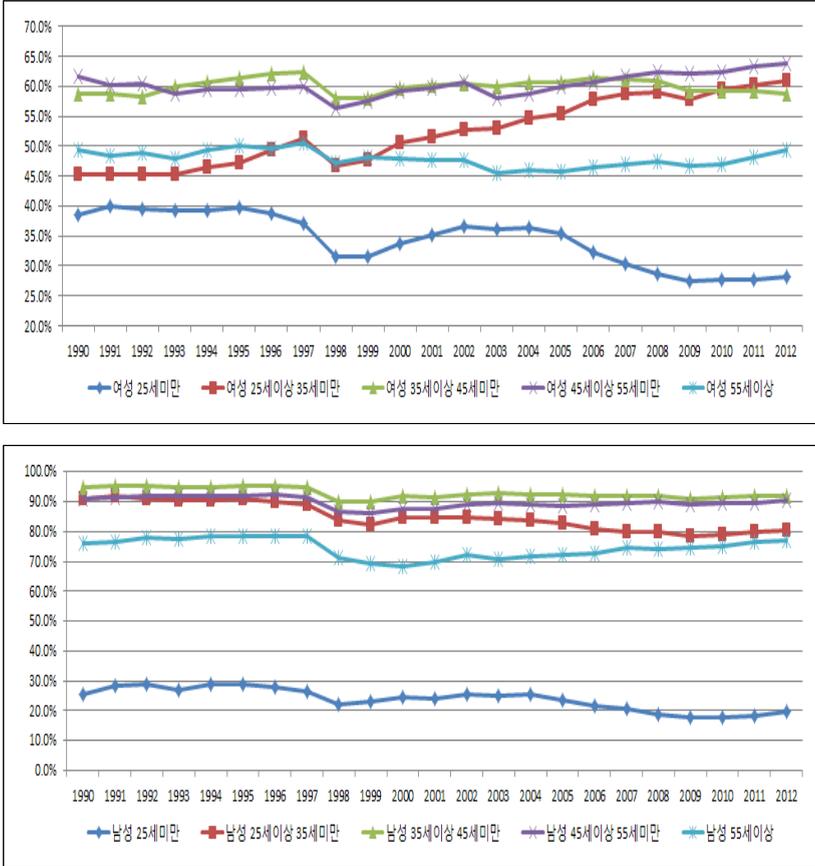


주: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1990~2012)

여성 고용률의 경우, 25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감소하는 추이(10.2%p)를 보였으며, 또한, 25~34세에서 1990년 45.3%에서 2012년 60.9%로 15.6%p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진 증가를 보였다. 남성 고용률의 경우, 여성과 마찬가지로 25세 미만과 25~34세 연령대에서는 감소하는 추이(25세 미만: 5.8%p, 25~34세: 10.9%p)를 보였으며, 55세 이상의 남성만이 0.9%p로 고용률의 증가를 보였다. 연령대별 고용률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여성의 고용률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계층은 25~35세, 35~45세, 45~55세 이상의 연령층이었다. 이는 성재민(2012)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고용률은 2000년대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25~29세, 30~34세, 45~49세, 50~59세에서 2000년대에 뚜렷한 고용률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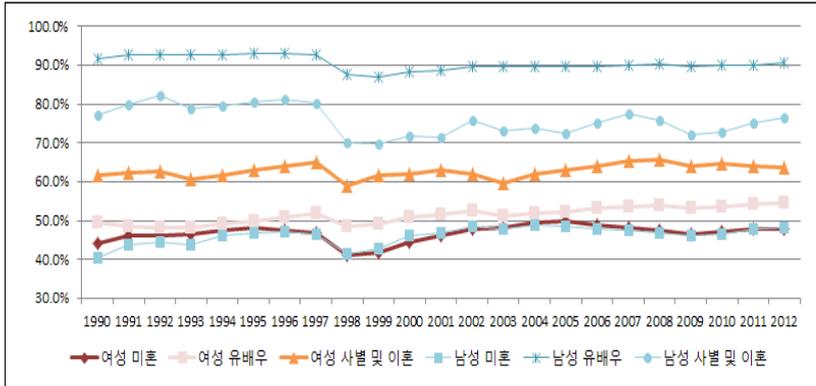
[그림 2-9] 연령대별 고용률(1990~2012년)



주: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1990~2012)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로는 35~45세의 여성의 고용률은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는데 이는 늦어진 출산에 따른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함께 이 연령대 여성에게 맞는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일자리가 충분치 않은 것도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성재민, 2012).

[그림 2-10] 혼인상태별 고용률(1990~2012년)



주: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199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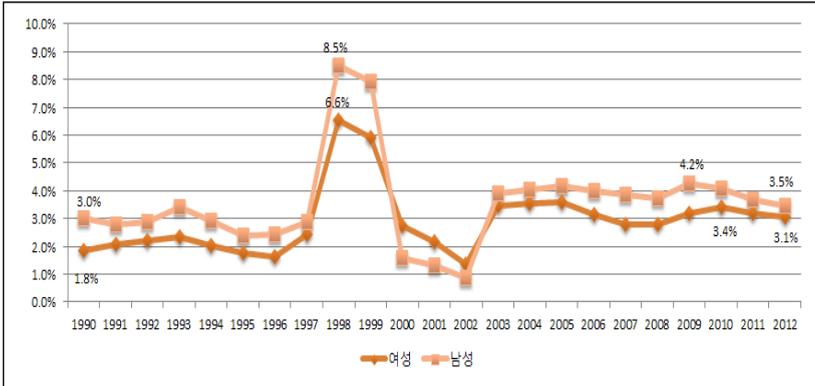
혼인상태별로 볼 때, 여성 고용률의 경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미혼여성은 약 4%p, 유배우 여성은 5.2%p, 사별 및 이혼 여성은 2.1%p의 증가폭을 보이는 반면, 남성 고용률은 미혼남성의 경우, 7.8%p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물론 유배우 여성의 고용률 증감이 크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는 2012년 유배우 여성은 54.7%인데 반해, 유배우 남성은 90.6%의 차이로 큰 격차를 드러냈다.

3. 실업률 비교

마지막으로 실업률을 살펴보면, 여성의 실업률은 1990년 1.8%에서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6.6%까지 치솟았다가 2012년 3.1%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실업률 역시 1990년 3.0%에서 외환위기에 8.5%를 기록한 이후 다시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3.5% 수준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남성 실업률은 약간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여성실업

률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구직활동이 증가한 결과로 추정된다.

[그림 2-11] 성별 실업률(1990~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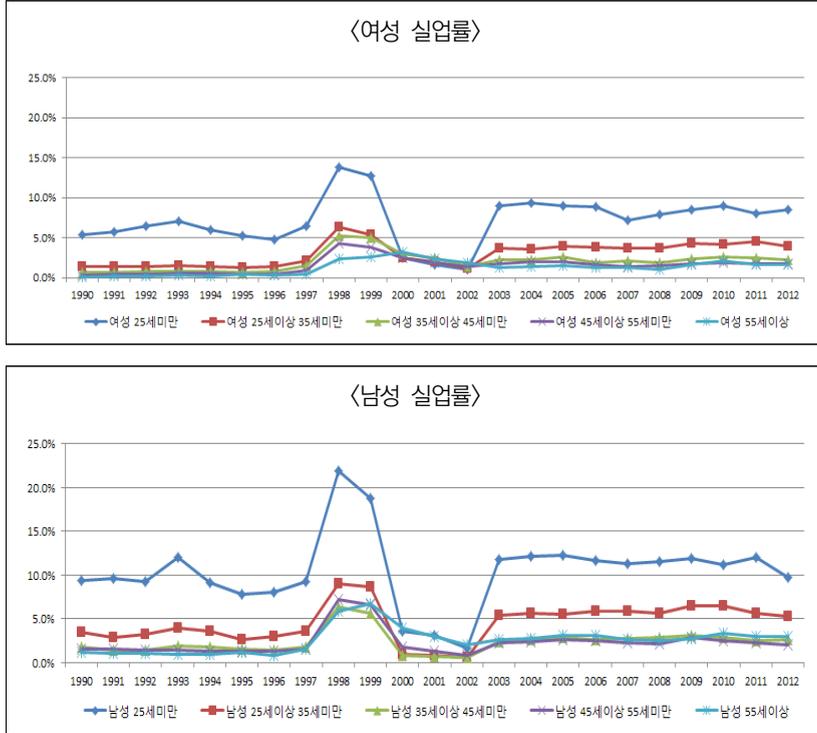
주: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1990~2012)

연령대별 실업률은 여성은 1998~1999년과 2003년 이후의 실업률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5세 미만의 여성은 10%의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25~34세 여성이 4~6%대의 실업률로 남녀 평균 3%대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데, 이는 여성의 고용률이 M형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또한, 25~35세 여성의 실업률이 2002년 이후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35~45세 여성의 실업률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만혼과 저출산이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진다고 볼 수 있다(금재호, 윤자영,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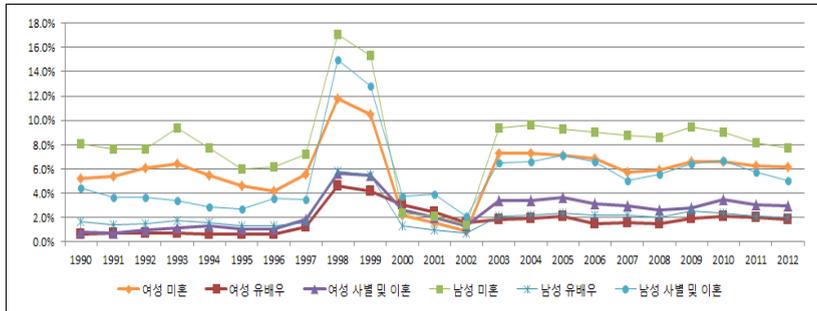
48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2-12] 연령대별 실업률(1990~2012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1990~2012)

[그림 2-13] 혼인상태별 실업률(1990~2012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1990~2012)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여성경제활동참가 실태와 추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령별,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참가 비교 분석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이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토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첫째,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보면 1990년대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고,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정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76.2%에서 2012년 77.6%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2000년 74.3%로 최근 23년간 가장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였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9.9%에서 2012년 55.2%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를 상회하는 노르딕국가들이나 북미국가들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35세 미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55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여전히 M자 곡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성의 고학력화로 인해 경제활동참가 시기가 대체로 20대 중반 전후로 늦추어지고 20대 참가율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비해서는 크게 완화되었으나, 30세 전후 결혼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퇴거가 크게 증가하고 평탄구간이 생김으로써 퇴장기간이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과는 다르게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특성을 나타

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에서 출산이나 육아,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복순, 2012; 백진아, 2004).

셋째, 여성의 경우 산업과 직종별 경제활동참가를 살펴보았을 때, 남성에 비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종사상지위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살펴보면 남성은 지난 20년 동안 분포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중, 무급가족종사자의 급감과 상용 및 임시근로자의 급증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힐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종사상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상용 및 임시근로자로 이동하는 것은 최근 보건·복지 관련 제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일자리가 증가한 결과로 추정된다.

넷째, 2000년대 이후, 여성의 고용률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계층은 25~35세, 35~45세, 45~55세 이상의 연령층이었으며, 이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로는 35~45세의 여성의 고용률은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는데 이는 늦어진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함께 이 연령대 여성에게 맞는,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일자리가 충분치 않은 것도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성재민, 2012).

다섯째, 여성의 실업률은 1998~1999년과 2003년 이후의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등에 영향을 받은 공통적인 흐름이다. 특히, 25~34세 여성의 실업률은 4~6%대로 남녀 평균 3%대보다도 높은 실업률을 보였으며, 이는 여성의 고용률이 M형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여전히 'M자형'을 그리고 있다. 다만 'M자형'의 계곡은 1980년대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으나, 30세 전후 결혼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퇴거가 크게 증가하고 평탄구간이 생김으로써 퇴장기간이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M자형을 역U자형으로 변환시키는 것, 즉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퇴장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여성 고용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남성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됨으로써 40대 이후 여성의 임금 근로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 여성의 일자리는 주로 저학력·단순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한편으로는 기존 일자리 질을 높이는 노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고학력 여성들이 취업할만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장 여성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연구 배경 및 기존 연구

제3절 자료 및 연구 방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소결

3

여성경제활동에 영향을 << 미치는 요인: 국내분석

제1절 서론

최근 여성과 관련된 두 가지 발표가 본 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사적이다. 그 중 하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 성 격차(gender gap)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평등 순위가 조사대상국 136개국 중 111위를 기록한 것이다(World Economic Forum, 2013)⁶⁾.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활동 참가, 교육수준, 건강, 정치적 권한의 네 가지 하위 범주에서 성 격차를 계측하고 있는데, 한국은 특히 경제활동 참가 부문이 118위로 성 격차(gender gap)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나는 여성문화네트웍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워킹맘 고통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1%가 ‘고통을 느낀다’고 대답한 것이다⁷⁾. 더구나 고통지수의 평균은 3.33점으로 지난해(3.04)에 비해 0.2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여년 간 “일-가정 양립”과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사회적 노력이 경주되어 왔지만 여전히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높은 장벽과 여러 가지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경제활동 주 연령대(primary age)인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 경제활동의 장벽과 장애는 비단 가구내적 요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즉,

6) WEF(2013) 보고서는 여성 지위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남성과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으며, 문화적 측면 등이 도외시되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7) 한겨레신문(2013.10.28.일자). “워킹맘들 작년보다 더 고통스럽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출을 제약하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수요자(기업)의 명시적·암묵적 장벽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강력하지만 양적으로 계측하기 어려운 비가시적 요인이나 공급자측의 구조적 제약과 같은 외생적 요인보다는 여성 개인이나 여성이 속해 있는 가구의 특성에 주목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여성의 인적자원 특성, 주양육자(carer)로서의 여성의 역할, 배우자 유무와 배우자의 지위, 여성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의 소득 등이 생애주기별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함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성의 연령, 혼인여부, 계층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참가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집단별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 배경 및 기존 연구

1. 연구 배경

전산업사회와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의 차이는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절연(絶緣)과 가정과 일터의 분리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의 특성이 여성의 일과 삶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전산업사회, 즉 농업을 주로 하고 화폐경제가 저발달되어 있던 사회의 노동은 자급자족의 가족노동과 마을공동체의 공동노동에 기초해 있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은 가사노동과 농사일의 경계가 미분화되어 있었으며, 가정과 일터는 거의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산업화 초기 여성의 노동은 아동노동과 마찬가지로 주류 남성노동을 보완하는데 주로 활용되었다. 이후 포드주의적 생산-소비양식이 정착되면서 남성 주부양자-

여성주부의 일인부양자모형이 일반화되었다⁸⁾. 여성주부는 가정경제를 책임진다고는 하지만, 주부양자의 관점에서는 피부양자로 간주되고 가사노동, 즉 무급노동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었다. 다른 한편 가정과 일터의 분리 또한 공장제 생산이 일반화되면서 산업화시대의 전형적 특징으로 자리잡게 된다. 일터의 분리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즉, 가정과 직장의 분리는 가사(양육)와 일을 병행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데 한몫을 함으로써 여성을 유급노동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배제하는데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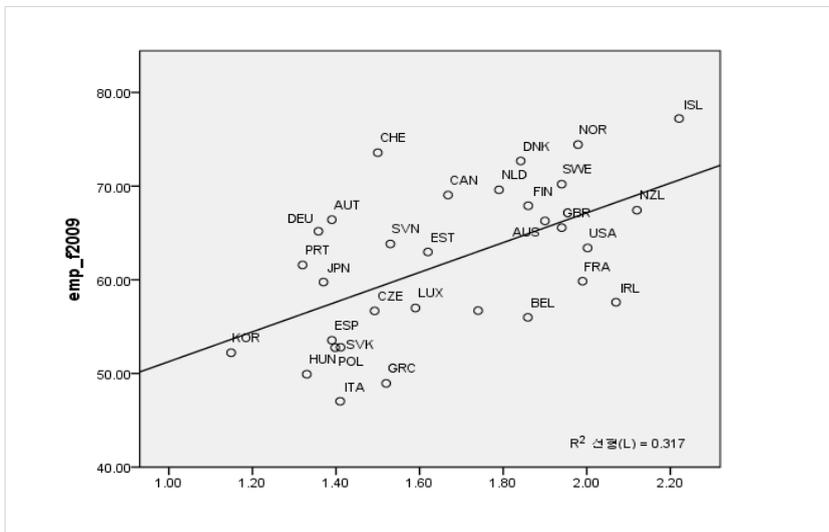
다른 한편, 의무교육 보편화⁹⁾와 여성 참정권 확대¹⁰⁾는 여성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차대전 이후 사회·경제적 재건 과정에서 노동인력 부족도 유럽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가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교육과 성찰을 통한 성역할에 대한 문화적 규범의 변화와 복지국가 발달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OECD 국가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전반적 증가에 기여하였음이 여러 문헌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Cipollone, Patacchini & Vallanti, 2012).

이와 같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해서

-
- 8) 전후 여성들은 전업주부로, 남성들은 '표준 생산직 노동자'로 가정되었는데, 이것은 반숙련 제조업 노동자가 가족소득과 사회적 권리의 유일한 제공자임을 의미한다. 나아가 전후 정치경제는 전형적인 생애주기유형에 기초한 것이기도 했다. 여성들은 결혼 및 출산과 함께 퇴직하고 처음에는 자녀를, 나중에는 나이든 부모를 돌보았다. 이를 통해, 가족은 대인 서비스, 사회서비스의 필요를 자급자족적으로 충족할 수 있었다. 남성들은 16세까지는 교육을 받고, 65세까지 계속 취업하고 그 이후에 퇴직하는 틀에 박힌 경로를 따랐다.
- 9) 최초의 현대적인 의무교육은 1852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법제화되었다. 이어서 1860년에는 영국, 1872년에는 프랑스, 1885년에는 일본이 각각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10) 여성 참정권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여러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여성의 참정권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뉴질랜드로 1893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핀란드가 1906년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노르웨이(1913), 덴마크(1915년) 등이 뒤를 이었다. 영국은 1918년 30세 이상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고, 1928년에야 비로소 남성과 동등하게 21세 이상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위키백과, ko.wikipedia.org/wiki/여성_참정권).

양방향성을 가진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의 노동의 특성으로 인해 전형적으로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어 온 유교나 가톨릭 전통이 강한 나라들의 여성 경제활동은 명시적·암묵적으로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와 양성평등이 강조되는 북유럽국가나 자유주의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보육의 사회화, 일-가족양립정책, 일터에서의 양성평등정책, 페미니즘 운동 등에 의해 고무되어 왔다. 그 결과 여성 경제활동의 양적·질적 특성은 복지국가의 차이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 주요 OECD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의 관계(2009년)



주: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 제외
 자료: stats.oecd.org(2013.11.05.다운로드)

다른 한편, 여성고용률이 높은 나라에서 출산율 역시 높고, 여성고용률이 저조한 나라에서 출산율 역시 낮은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위 그림은 이러한 역설적 관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낮은 국가의 전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비록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북구유럽이나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¹¹⁾.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 합계출산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낮은 고용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사회의 노동의 특성과 유교주의적 문화의 특성이 결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가사, 육아 부담을 여성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와 긴 근로시간, 양질의 여성 일자리 부족 등을 여성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꼽을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자녀 교육을 두고 벌어지는 과도한 경쟁이 여성 취업의 기회비용과 의증임금¹²⁾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참가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 앞서의 요인들이 여성 경제활동에 장벽으로 작용함을 방증해주고 있다.

2. 기존연구

여성 경제활동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들은 크게 미시데

11) 최초 통계 작성시점인 1963년 당시 여성의 고용률은 34.3%에 불과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3년에는 40.6%까지 상승하였고, 2011년 현재는 48.1% 수준이다(www.kosis.kr). OECD 여성고용률(15~64세 여성 대비 고용률) 기준으로는 2011년 53.1%이다. 유럽의 경우, 평균적으로 여성경제활동 참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였다. 평균적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1990년 초반 55%에서 2008년 66%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기 동안 여성 고용률은 49%에서 61%로 증가하였다(Cipollone, Patacchini & Vallanti, 2012).

12) 신고전 경제학의 노동공급 모델에서는 가사노동과 가족 돌봄의 의무는 여성의 의증임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여성의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가구 관련 책임과 여성 고용 간의 부적인 관계를 밝혀 왔다(Goodpaster, 2010; Cipollone, Patacchini & Vallanti, 2012 재인용).

이타를 활용한 가구분석 연구와 거시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간 비교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한 나라의 가구분석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은 여성 개인의 특성이나 가구와 배우자의 특성이 여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이에 비해, 후자는 국가 간 노동시장제도, 보육시스템, 사회복지제도 등의 차이가 각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수준과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다수 국가의 미시 가구데이터를 활용한 다수준 분석을 통해 제도와 개인·가구 특성을 동시에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도 적지 않다.

신고전 노동공급 모델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 요인을 밝혀온 연구들(Leigh, 2010; Munasinghe, Reif & Henriques, 2008; Gustafsson & Kenjoh, 2008)에서는 가사노동과 가족돌봄 의무는 그들의 의존임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전형적으로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감소시키며,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당 시장가격이 시간당 여성의 시장임금보다 더 클 때, 여성은 전형적으로 노동시장을 탈출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Cipollone, Patacchini & Vallanti, 2012). 이들은 실증연구를 통해 가족 관련 책임이 클수록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률은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교육은 여성의 잠재적 시장임금을 높임으로써 노동공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신욱(2009)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로 배우자가 25세 이상 60세 이하 가구의 맞벌이 결정요인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배우자의 학력이 대졸자인 가구에 비해 중졸 배우자 가구의 맞벌이 확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 및 고졸 학력 배우자의 맞벌이 확률은 대졸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 가구구성 측면에서 3세 이하의 영아 수와 3~6세의 유아 수가 많아질수록 맞벌이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전 노동공급 모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최선영·장경섭

(2012)은 독특하게 중년 남성생계부양자의 노동생애 불안정성이 여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남성 배우자의 직업지위가 변화하여 가구경제에 불안정성이 도입되는 경우 결혼 초기의 규범적 양성분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배우자 여성이 가족생계부양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0대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육아 및 교육 부담의 경감으로 인한 자발적 재진입 요인과 더불어 남성 가구주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타의적 재진입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된다.

구조적·제도적 요인으로 보육서비스의 공적인 제공의 효과성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아동수당보다는 아동보육 시설을 통해 모성을 지원하는 나라들이 더 높은 여성 노동공급과 더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Apps & Rees, 2004; Lundin, Mörk & Óckert, 2008). 또, 노동시장 제도들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장(Genre et al., 2005; 2010)은 노조 응집성이 높을수록, 고용보호가 강하고 실업급여가 관대할수록 여성의 참가율은 더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발러(Balleer et al., 2009)는 근로세, 노조 응집성, 실업급여와 평균 자녀수와 같은 많은 제도적 요인들이 여성 노동력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연령집단과 가족에 따라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좀 더 종합적이고, 다국가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자모트(Jaumotte, 2003)는 17개 OECD 국가들에 대해 1985~1999년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다수준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25~54세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분석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정책 결정인자로 노동시간 제도들의 유연성, 2차소득자에 대한 세금(단독소득자와 상대적인), 가족지원(아동케어 보조금, 아동수당, 유급부모휴가) 등의 정책

결정인자와 여성 학력수준, 기혼여성 비율, 아동 수 등의 개인과 가구 특성 결정인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분석 결과, 맞벌이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보육지원, 유급의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이 여성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 일반적인 노동시장의 조건, 문화적 태도 또한 여성의 근로활동을 증진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아동수당은 소득효과로 인해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폴론 등(Cipollone, Patacchini & Vallanti, 2012)의 연구는 최근 연구 중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요인에 대해 가장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ECHP(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와 EU-SILC(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두 원자료로부터 연간 미시자료를 결합하고, 국가와 시간에 따라 비교가능한 가구 및 개인 수준 특성의 독창적 데이터셋 만들었다. 이를 통해 1994년에서 2009년까지 EU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 패턴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첫째, 지난 20여년 동안 고용률에서의 젠더 격차는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연령대, 즉 25~54세의 저학력 여성들에 의해 추동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형' 일자리의 활용가능성과 더 유연한 형태의 고용 증가, 다시 말해 젠더 간의 일자리 '질' 차이를 희생한 결과였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학령전 아동을 가진 여성들의 참여와 고용은 이 기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사민주의 국가들에서 현저하고 남유럽 국가들은 그보다 덜했으며, 영국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탐지되지 않았다. 반면, 비공식적 노인 돌봄이 고용과 경제활동 참여에 미친 부정적 효과는 시간에 따라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자료 및 연구 방법

여성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컨소시엄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조사이다. 이 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로서 읍면지역의 농어가까지 포함함으로써 대표성 높은 표본을 구성하고 있다. 1차 조사완료된 표본 규모는 7,072가구이며,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추출하고, 중위소득 60%이상의 일반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다. 물론 최종적인 조사결과가 전국 대표성을 띌 수 있도록 가중치를 통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자료는 2012년 조사된 7차 조사 결과(Wave 2012)로서 가구조사 5,731가구, 개인조사 11,599명(15세 이상 중고등학생이 아닌 가구원)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조사 데이터에 가구변수를 결합한 머지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을 25~54세 주연령 여성으로 제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대상은 2,775명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년 당시 경제활동참가 여부이다. 독립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첫 직장의 고용형태, 최근(혹은 현재) 직장의 고용형태를 포함한 여성 본인 특성변수가 포함되었다. 연령은 연속변수이며,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이하, 4년제 대학 졸업 이하, 대학원 이상의 5분위 서열변수로 조작화하였다. 첫 직장과 최근(혹은 현재) 직장의

고용형태는 한국복지패널 1~7차 진입차수에 따라 해당 변수를 결합하여 활용하였으며,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기타(비해당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독립변수로 0~2세의 영아 유무, 3~5세의 유아 유무, 6~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유무, 65세 이상 노인 유무, 장애인 유무와 같은 돌봄 대상 변수, 배우자의 고용 형태와 업종, 직종을 포함하는 배우자 지위 변수, 그리고 본인 소득을 제외한 가구 경상소득과 소득의 공급이 독립변수로 투입되었다.

여성의 개인적 특성 혹은 가구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대상을 무배우자와 유배우자, 25~39세와 40~54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절 분석 결과

1. 분석대상 여성(25~54세)의 개인 및 가구 특성

아래 <표 3-1>은 분석 대상인 25~54세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 특성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해당 연령대 여성이 속한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6명이며, 41.1%가 4인가구, 26.6%가 3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평균 가구원은 3.8명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에 비해 0.8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평균 가구원수는 3.8명으로 동일했다.

〈표 3-1〉 분석대상 여성(25~54세)의 특성

(단위: %, 만원/년)

구분	전체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중		연령	
		무배우	유배우	비경활	경활	25~39	40~54
가구원수							
1인	4.3	16.9	0.1	0.1	0.1	5.2	3.4
2인	12.1	17.9	10.2	10.1	10.2	11.7	12.5
3인	26.6	30.5	25.3	23.0	27.0	23.7	29.5
4인	41.1	23.4	47.0	50.0	44.9	41.0	41.3
5인	12.0	8.5	13.2	13.6	12.9	13.5	10.5
6인 이상	3.9	2.9	4.2	3.2	4.9	4.9	2.8
평균가구원수	3.6	3.0	3.8	3.8	3.8	3.6	3.5
가구주 여부							
가구주 아님	88.8	58.4	98.9	99.2	98.7	92.5	85.1
가구주	11.2	41.6	1.1	0.8	1.3	7.5	14.9
연령구분							
25~39세	50.0	68.4	43.9	53.3	37.0	100.0	0.0
40~54세	50.0	31.6	56.2	46.7	63.0	0.0	100.0
평균연령	39.6	35.0	41.2	40.0	42.1	32.4	46.9
학력							
중졸 이하	10.5	10.7	10.4	8.9	11.5	1.2	19.7
고졸 이하	40.8	27.0	45.4	44.6	46.0	29.4	52.1
전문대졸	17.4	22.0	15.9	18.1	14.3	27.3	7.5
4년제 대졸	27.5	33.9	25.4	27.3	24.0	37.0	18.0
대학원 이상	3.9	6.5	3.0	1.2	4.3	5.1	2.6
경제활동상태							
비경활	35.4	15.4	42.0	100.0	0.0	37.6	33.1
상용직	25.5	41.5	20.2	0.0	34.9	33.4	17.7
임시직	19.8	26.8	17.5	0.0	30.2	17.6	22.1
일용(자활)직	6.5	7.2	6.3	0.0	10.8	3.8	9.2
고용주및자영자	7.0	6.2	7.2	0.0	12.5	4.0	9.9
무급가족종사자	4.8	0.3	6.3	0.0	10.9	2.2	7.4
실업자	1.0	2.6	0.5	0.0	0.8	1.3	0.6

구분	전체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중		연령	
		무배우	유배우	비경활	경활	25~39	40~54
업종							
1차산업	2.3	0.8	3.0		3.0	0.3	4.1
2차산업	13.9	12.7	14.5		14.5	13.7	14.1
3차산업	83.8	86.6	82.5		82.5	86.0	81.8
직종							
관리직 및 전문직	27.5	31.1	25.9		25.9	36.4	19.4
사무직	21.6	31.4	17.0		17.0	34.2	10.0
서비스 및 판매직	27.5	21.6	30.3		30.3	17.9	36.3
숙련 및 기능직	6.4	3.1	8.0		8.0	3.3	9.3
단순노무직	17.0	12.8	18.9		18.9	8.2	25.0
배우자유무							
무배우	25.0					34.2	15.8
유배우	75.0					65.8	8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득							
가구경상소득	5,901	4,839	6,255	5,869	6,535	5,827	5,974
가구가처분소득	5,356	4,453	5,657	5,276	5,933	5,291	5,420
본인소득	1,258	1,781	1,084	112	1,788	1,294	1,222
기초보장수급형태							
비수급	96.1	90.3	98.0	97.3	98.5	97.2	95.0
일반수급	2.9	6.9	1.5	2.4	0.9	1.8	3.9
조건부수급	1.1	2.8	0.5	0.3	0.6	1.0	1.1

자료: 한국복지패널 7차 데이터(기준년도: 2011년)

약 10명 중 한 명(11.2%)은 여성 본인이 가구주였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였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중 본인이 가구주라고 응답한 여성은 1.1%에 불과하였다. 25~39세 여성(7.5%)보다는 40~54세 여성(14.9%)의 가구주 비율이 높았다. 이 연령대에서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의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의 평

균 연령은 39.6세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평균 연령(35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평균 연령(41.2)세보다 낮았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연령(40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평균 연령(42.1세)보다 2.1세 정도 낮았다. 이는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0대 중후반의 주 양육기에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것과 연관지어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여성의 약 50%는 고졸 이하의 교육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상대적으로 저학력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여성의 고학력화가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앞선 분석 결과에서 유배우자의 평균 연령이 무배우자보다 높은 점이 이러한 결과와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5~39세 여성의 30.6%만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반면, 40~54세 여성의 71.8%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졌다는 점도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유배우자 중 경제활동 참가자와 비참가자의 학력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 중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4.3%)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특이할 만하다.

무배우 여성의 경우 15.4%만이 2011년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대조적으로, 유배우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42%에 달한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유배우 여성의 경우 34.9%만이 상용직 인데 비해, 무배우여성의 경우 41.5%가 상용직이다. 유배우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시일용직, 자영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부분 자영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직종별로는 유배우 여성의 경우 무배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및 판매직과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유배우 여성이 무배우 여성에 비해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과 특히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여성들은 가정 내 역할, 특히 어머니로서의 역할로 인해 남성보다 짧은 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며, 따라서 저임금직종에 여성이 집중하게 된다는 폴라켓(Polacheck, 1991)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김영옥 외, 2006:19 재인용).

분석 대상 여성이 포함된 가구의 경상소득은 연 5,901만원, 가처분 소득은 5,356만원으로 각각 월 평균 약 492만원과 446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본인의 소득은 연간 평균 1,258만원으로 월 105만원이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148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월평균 소득 90만원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속한 가구 중 9.7%가 일반수급이나 조건부수급 형태로 기초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포함된 가구의 기초보장 수급률은 2%에 불과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속한 가구 중에서도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의 기초보장 수급률은 더욱 낮아 1.5%에 불과하였으며, 이에 대비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유배우가구의 기초보장 수급률은 2.7%로 상대적으로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배우가구가 무배우가구보다, 유배우가구 중에서도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경제적 상황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가구원수나 집단 내부의 소득 분포를 통제하지 않은 결과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아래의 표는 여성이 속한 가구의 소득계층별 특성과 소득수준을 살펴본 결과이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계층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80.7%)이 중산층 여성(64.4%)이나 고소득층 여성(52%)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가구소득 계층별 특성

(단위: %, 만원/년)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경활 상태	비경활	19.3	35.6	48.0	35.4
	상용직	29.1	24.9	24.2	25.5
	임시직	26.3	20.6	12.5	19.8
	일용(자활)직	11.5	6.7	1.8	6.5
	고용주 및 자영자	10.1	6.1	6.6	7.0
	무급가족종사자	2.3	5.2	6.1	4.8
	실업자	1.5	0.9	0.8	1.0
	계	100.0	100.0	100.0	100.0
가구 소득	가구경상소득	2,722	5,196	10,319	5,901
	가구가처분소득	2,537	4,771	9,173	5,356
	본인소득	1,701	1,154	1,151	1,258
	본인소득 (비경활자제외)	2,045	1,729	2,135	1,879
요보호 가족의 존재	0~2세 아동	5.8	12.2	9.4	10.8
	3~5세 아동	11.2	22.5	15.3	19.5
	6~9세 아동	19.9	28.3	22.5	25.9
	65세 이상 노인	8.5	8.4	6.0	7.7
	장애인	22.9	10.6	8.2	11.1

자료: 한국복지패널 7차 데이터(기준년도: 2011년)

그러나 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고소득층 여성이 상용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저소득층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하는 여성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상용직 고소득층 여성의 비율은 46.5%에 이르는 데 비해,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36.1%가 상용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경제활동비율이 소득계층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결과로, 저소득층 여성의 평균적인 본인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을 제외할 경우 여성의 소득은 고소득층 여성이 가장 높은 2,135만원, 저소득층 여성 2,045만원, 중산층 여성 1,729만원 순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계층의 변화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본인의 소득을 제외할 경우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으로 분류되는 가구의 비율은 19.2%에 이르렀으나, 여성의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 그 비율은 12.7%로 6.5%p 줄어들었다. 중산층(중위소득 50~150%)의 비중은 57.8%에서 66.4%로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이상)의 비율은 23.0%에서 21.0%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은 중산층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소득을 포함하여 가구 경상소득을 산출할 경우, 이를 제외했을 때 저소득에 속하던 가구 중 44% 정도가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섰다. 여성 소득을 제외했을 때, 중산층이던 가구 중 3.8%는 저소득층으로 하향이동, 8%는 고소득층으로 상향이동했다. 이에 비해, 고소득층이던 가구의 약 30% 정도는 중산층으로 하향이동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성의 소득은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과 계층 상승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3-3〉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후의 계층 변화

(단위: %)

구분		비율	본인소득 제외시 계층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19.2	57.8	23.0	100.0
본인 소득 포함시 계층	저소득층	12.7	54.9	3.8	0.0	12.7
	중산층	66.4	44.0	88.3	29.9	66.4
	고소득층	21.0	1.1	8.0	70.1	2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7차 데이터(기준년도: 2011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할 확률이 무배우 여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특성, 특히 인적자본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유배우 여성의 교육수준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유배우여성 중 비경활자의 비율은 학력수준과의 관계에서 약한 ‘역-U’자형 커브를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비경활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대학원 이상 여성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경활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낮았다¹³⁾. 즉, 이들 여성의 16.8%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는 인적자본에 대한 높은 투자를 회수하고자, 다른 한편으로는 고학력여성의 높은 자아성취 욕구와 자존감으로 인해, 또다른 한편 안정적인 고수익 일자리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 학력군에서 경활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유배우여성의 57.2%가 상용직으로

13) 단, 이러한 결과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의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이기 때문에 아래 로짓분석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학력군에 비해 2배~7배 정도 높은 비율이다. 또한, 이들의 77.7%는 관리직 및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유배우여성의 교육수준별 특성

(단위: %, 만원/년)

구분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 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	계
경활 상태	비경활	35.8	41.3	47.8	45.1	16.8	42.0
	상용직	8.1	14.5	23.7	28.9	57.2	20.2
	임시직	17.3	19.4	19.1	13.6	14.4	17.5
	일용(자활)직	12.9	9.6	1.3	1.3	1.0	6.3
	고용주 및 자영자	10.2	6.9	4.9	8.4	4.2	7.2
	무급가족종사자	15.7	7.7	3.3	2.4	2.9	6.3
	실업자	0.0	0.6	0.0	0.3	3.6	0.5
업종	1차산업	18.1	1.9	0.4	0.0	0.0	3.0
	2차산업	19.0	20.3	9.1	5.5	9.7	14.5
	3차산업	62.9	77.9	90.5	94.5	90.3	82.5
직종	관리직 및 전문직	2.5	7.3	35.1	58.2	77.7	25.9
	사무직	0.7	12.9	26.6	26.9	15.9	17.0
	서비스 및 판매직	33.2	42.1	26.5	12.7	6.4	30.3
	숙련 및 기능직	27.9	9.5	2.2	0.3	0.0	8.0
	단순노무직	35.7	28.3	9.6	2.0	0.0	18.9
소득	가구경상소득	4,722	5,778	5,878	7,647	9,020	6,255
	가구가처분소득	4,402	5,279	5,311	6,805	7,853	5,657
	본인소득	686	878	960	1,485	2,851	1,083
	비경활제외 본인소득	997	1,403	1,727	2,657	3,379	1,787

자료: 한국복지패널 7차 데이터(기준년도: 2011년)

본인의 평균소득도 약 3,400만원 정도로, 전문대졸 학력을 가진 여성의 약 2배에 이른다. 한편,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 직종과 본인소득은 물론이고, 가구소득의 편차도 뚜렷이 나타나 동질혼적 성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가. 전체

다음 표는 25~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무급가족종사자와 실업자의 경우 자기 시간에 대한 통제와 유연성이 다른 경제활동참가자보다 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경제활동참가자에 포함한 모형과 이들을 제외한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무급가족종사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모형에서, 본인특성변수모형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혼인여부, 최근직장의 고용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25~39세 여성에 비해 40~54세 여성이, 저학력여성에 비해 고학력여성, 최근직장 혹은 현재의 직종이 자영업이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일수록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유배우자일수록, 최근 직종이 정규직이나 기타(주로 비경활)인 경우 경제활동참가 확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보호가족 요인은 대부분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아동과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비해, 가구에 노인이 있는 경우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내 노인이 주로 아동양육과 가사의 조력자 역할, 즉 여성의 가사활동을 대체 혹은 분담하는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¹⁴⁾.

14) 그러나 노인의 존재와 여성 경제활동참가 간의 인과성에 대한 이러한 해석에 대해 위험성도 제기되었다. 역방향의 인과관계, 즉 여성의 경제활동이 노인과의 동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더 무게중심을 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노인과의 동거가 여성 경제활동에 선행하는 것이냐 후행하는 것이냐, 혹은 우연적인 것이냐 인위적인 것이냐의 문제를 논외로 할 때, '노인과의 동거 자체'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74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소득과 소득의 제곱은 모두 유의미하나 이차항은 양수, 일차항은 음수인 2차함수 형태, 즉 “U”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기술통계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저학력의 저소득층 여성과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저소득가구의 여성은 가계수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득가구의 여성은 안정적이고 자아실현이 가능한 일자리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5〉 25~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logit 분석 결과)

구분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포함)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제외)		
	본인특성	요보호가족	전체	본인특성	요보호5가족	전체
연령(25~39세=0)						
40~54세	0.455*** (3.72)		0.04 (0.27)	0.485*** (4.02)		0.12 (0.84)
교육수준(중졸이하=0)						
고졸 이하	0.398* (2.31)		0.349* (2.02)	0.510** (2.99)		0.463** (2.77)
전문대졸 이하	0.573* (2.51)		0.530* (2.33)	0.826*** (3.89)		0.787*** (3.76)
대졸 이하	0.842*** (4.11)		0.828*** (4.00)	1.089*** (5.49)		1.071*** (5.39)
대학원 이상	2.108*** (5.00)		2.172*** (5.18)	1.973*** (5.26)		2.022*** (5.42)
배우자 유무(무배우=0)						
유배우	-1.363*** (-8.36)		-0.969*** (-5.65)	-1.278*** (-8.45)		-0.933*** (-5.86)
첫 직장 고용형태(비정규직=0)						
정규직	0.28 (1.95)		0.25 (1.67)	0.18 (1.30)		0.14 (1.01)
고용주 및 자영자	(0.74) (-1.68)		(0.59) (-1.32)	(0.56) (-1.32)		(0.43) (-1.00)
무급가족종사자	0.20 (0.64)		0.14 (0.46)	0.33 (1.09)		0.28 (0.92)
기타(비해당)	1.98 (1.95)		2.011* (1.98)	1.57 (1.48)		1.52 (1.50)

구분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포함)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제외)		
	본인특성	요보호가족	전체	본인특성	요보호5가족	전체
최근 직장 고용형태(비정규직=0)						
정규직	-0.473*** (-3.42)		-0.454** (-3.22)	-0.361** (-2.68)		-0.337* (-2.46)
고용주 및 자영자	0.471* (2.03)		0.39 (1.69)	0.20 (0.94)		0.13 (0.60)
무급가족종사자	0.731* (2.39)		0.694* (2.22)	-1.037*** (-4.45)		-1.088*** (-4.68)
기타(비해당)	-2.427* (-2.37)		-2.611* (-2.55)	(2.03) (-1.90)		-2.128* (-2.08)
요보호자 유무						
0~2세 아동 유무		-0.816*** (-4.32)	-0.722*** (-3.51)		-0.640*** (-3.39)	-0.629** (-3.09)
3~5세 아동 유무		-0.513*** (-3.51)	-0.452** (-2.88)		-0.404** (-2.78)	-0.382* (-2.40)
6~9세 아동 유무		-0.764*** (-6.24)	-0.564*** (-4.06)		-0.668*** (-5.54)	-0.561*** (-4.07)
노인 유무		0.549** (3.13)	0.494* (2.55)		0.498** (3.08)	0.436* (2.42)
장애인 유무		-0.636*** (-4.20)	-0.623*** (-3.75)		-0.668*** (-4.48)	-0.596*** (-3.69)
경상소득(본인소득제외)	-0.000164*** (-5.11)	-0.000201*** (-6.13)	-0.000174*** (-5.28)	-0.000191*** (-6.24)	-0.000216*** (-6.74)	-0.000200*** (-6.43)
소득세급	4.04e-09** (2.70)	5.41e-09** (3.03)	4.17e-09** (2.72)	5.07e-09*** (3.66)	5.99e-09*** (3.36)	5.20e-09*** (3.68)
상수항	1.583*** (6.55)	1.738*** (14.36)	1.882*** (7.62)	1.289*** (5.74)	1.471*** (12.71)	1.578*** (6.77)
N	2,775	2,775	2,775	2,775	2,775	2,775
pseudo R-sq	0.10	0.08	0.12	0.11	0.07	0.12

자료: 한국복지패널 7차 데이터(기준년도: 2011년)

전체 모형에서는 개인특성모형에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던 연령변수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연령효과가 주로 요보호아동의 존재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즉, 요보호아동 변수가 연령변수의 효과를 흡수한 결과로 추정된다.

아래 <표 3-6>은 주요 변수의 승산비(Odds Ratio)를 산출한 결과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평균)하다고 가정할 때,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1.42배, 4년제 대졸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2.29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8.78배 경제활동을 할 확률이 더 높았다. 앞서 기술통계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특히 대학원 졸업 이상의 여성들은 그들 소득을 제외하더라도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고전 노동공급 모델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 요인을 밝혀온 연구 결과들(Leigh, 2010; Munasinghe, Reif & Henriques, 2008; Gustafsson & Kenjoh, 2008)과도 일치한다.

<표 3-6> 주요 변수의 Odds Ratio(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포함 전체모형)

40~54세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하	4년제 대졸 이하	대학원 이상	
1.04	1.42	1.70	2.29	8.78	
유배우	0~2세 아동 있음	3~5세 아동 있음	6~9세 아동 있음	노인 있음	장애인 있음
0.38	0.49	0.64	0.57	1.64	0.54

자료: 한국복지패널 7차 데이터(기준년도: 2011년)

교육수준과는 반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0.38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유무와 무관하게 결혼 그 자체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 확률을 절반 정도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1.6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 소득계층별

소득계층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유인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가구정상소득—여성본인소득) 중위소득 50~150%를 기준으로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분리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가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 중 저소득층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부 학력 변수와 장애유무 뿐이었다. 고졸과 대졸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중졸 학력을 가진 여성들에 비해 취업에 나설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내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층 여성 중 비경활자는 19.3%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는 점에 의해 뒷받침된다. 즉,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의 수지균형상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의 존재나 특히 양육해야 할 아동의 존재에도 “불구하고(혹은 무관하게)” 일하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3-7〉 소득계층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logit 분석 결과)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연령(25~39세=0)			
40~54세	-0.42 (0.35)	0.20 (0.18)	0.30 (0.41)
교육수준(중졸 이하=0)			
고졸 이하	0.853** (0.32)	0.23 (0.22)	-0.09 (0.46)
전문대졸 이하	0.92 (0.49)	0.536* (0.27)	0.11 (0.62)
대졸 이하	0.972* (0.48)	0.768** (0.26)	0.41 (0.51)

78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대학원 이상	0.00 (.)	1.832*** (0.55)	1.840* (0.90)
배우자 유무(무배우=0)			
유배우	-0.33 (0.31)	-0.992*** (0.25)	-3.076*** (0.71)
첫 직장 고용형태(비정규직=0)			
정규직	0.53 (0.37)	0.20 (0.17)	0.25 (0.41)
고용주 및 자영자	0.96 (0.78)	-0.05 (0.57)	-2.194* (1.01)
무급가족종사자	0.35 (0.50)	0.07 (0.40)	-0.22 (0.91)
기타(비해당)	-0.85 (0.46)	1.47 (0.95)	13.564*** (0.90)
최근 직장 고용형태(비정규직=0)			
정규직	-0.65 (0.40)	-0.349* (0.17)	-0.51 (0.34)
고용주 및 자영자	-0.22 (0.45)	0.52 (0.33)	0.74 (0.49)
무급가족종사자	0.51 (0.61)	0.802* (0.34)	0.45 (0.71)
기타(비해당)	0.00 (.)	-2.155* (0.98)	-14.437*** (0.87)
요보호자 유무			
0~2세 아동 유무	-0.07 (1.15)	-0.914*** (0.23)	0.13 (0.50)
3~5세 아동 유무	-0.95 (0.63)	-0.707*** (0.19)	0.60 (0.39)
6~9세 아동 유무	0.20 (0.51)	-0.612*** (0.16)	-0.805* (0.38)
노인 유무	-0.46 (0.34)	0.41 (0.23)	1.876** (0.58)
장애인 유무	-0.929** (0.29)	-0.564** (0.21)	-0.64 (0.54)
상수항	1.405** (0.45)	1.382*** (0.31)	2.624*** (0.79)
N	616	1,639	506
pr2	0.10	0.11	0.18

자료: 한국복지패널 7차 데이터(기준년도: 2011년)

이에 비해, 중산층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양육해야 할 아동이나 장애인의 유무가 경제활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산층 여성만으로 제한할 때, 인적자본변수, 즉 학력변수는 일관되게 여성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여성은 경제활동을 할 확률이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보다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아동의 존재는 9세 이하의 모든 아동의 존재가 중산층 여성의 취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여성과는 매우 상이한 결과라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중산층 여성의 경우,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모두가 경제활동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배우자의 소득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 유지가 가능하고 양육해야 할 아동이 있는 여성의 경우 일에 대한 기회비용과 의중임금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특히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여성에게 가용한 ‘괜찮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자리 경험 중 정규직과 비경험(비해당)에 속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확률이 낮은 것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고소득층 여성의 경우, 무엇보다도 과거 일자리 경험과 대학원이상의 고학력, 배우자의 유무, 그리고 노인의 유무가 경제활동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0~5세까지 영유아의 존재는 이들 고소득 여성의 경제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6~9세 아동이 있는 경우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즉, 이들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학력·전문직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아 고소득의 안정적 일자리와 높은 기업복지(혹은 상대적 시간활용의 유연성)가 가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높은 가구소득으로 인해 가사와

양육부담의 외주화 가능한 것도 고소득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유아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가사와 양육부담의 외주화의 한 측면으로 부모 또는 대리양육자와의 동거일텐데, 분석 결과 고소득층 여성에서 유일하게 노인의 존재가 여성 경제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층 여성의 경우, 최근 직장 고용 형태가 무직(비해당)인 경우가 현재 경제활동 참여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 일한 경험이 없는 경우 고숙련 전문직이나 고소득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득 여성이 여타의 기회비용을 포기하면서까지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다른 계층에 비해 떨어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계층별 여성 경제활동참가 요인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저소득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참가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가진 요인들, 예컨대 양육해야 할 아동의 존재나 과거 일자리 경험, 학력 등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근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가구의 수지 균형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절박함이 근로활동의 장애요인들보다 더 클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비해, 중산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이 가장 잘 들어맞는 집단이다. 즉, 학력과 아동의 유무가 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여성의 경우 과거 일자리 경험과 가사와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경제활동 참가는 계층별로 그 유인과 장애 요인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다. 유배우여성

다음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만을 추출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참가 결정 요인 분석 결과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유배우 여성의 경우 앞서 분석했던 변수들에 더해, 배우자의 특성, 즉 배우자의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산업과 직종을 추가로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같은 인적자본 변수와 최근 일자리의 고용 형태, 요보호가족의 유무, 그리고 배우자의 산업과 직종 등이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40~54세의 유배우 여성들이 25~39세 여성들에 비해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 육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25~39세 시기에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유배우 여성의 경우 대학이상의 고학력 여성만이 중졸이하의 저학력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나 전문대졸 학력의 여성은 중졸이하 여성과 경제활동 참가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의 고용형태보다는 최근 혹은 현재 직장의 고용형태가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 취업하기 어려운 반면, 고용주나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비정규직보다 경제활동을 할 확률이 높았다. 전자는 경력단절 여성이 정규직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며, 후자는 상대적으로 시간활용성과 유연성이 임금근로에 비해 높은 고용주나 무급가족종사자에 여성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유배우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 내 아동과 장애인의 존재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앞선 몇몇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인이 있는 경우 오히려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산업이 영향을 미친 것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대부분이 가족노동을 활용하는 경우, 즉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배우자가 서비스 및 판매직이나 단순노무직인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비록 소득을 통제하기는 하였지만- 이들 가구가 상대적으로 수지균형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8〉 유배우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logit 분석 결과)

구분	본인특성	요보호가족	배우자특성	전체
연령(25~39세=0)				
40~54세	0.032** (0.010)			0.029** (0.010)
교육수준(중졸 이하=0)				
고졸 이하	0.195 (0.190)			0.258 (0.218)
전문대졸 이하	0.230 (0.269)			0.425 (0.269)
대졸 이하	0.440 (0.230)			0.711** (0.268)
대학원 이상	1.956*** (0.453)			1.956*** (0.446)
첫 직장 고용형태(비정규직=0)				
정규직	0.212 (0.154)			0.224 (0.137)
고용주 및 자영자	-0.679 (0.477)			-0.268 (0.432)
무급가족종사자	-0.040 (0.333)			0.021 (0.289)
기타(비해당)	1.679 (1.063)			14.590 (847.578)
최근 직장 고용형태(비정규직=0)				
정규직	-0.360* (0.143)			-0.299* (0.130)

구분	본인특성	요보호가족	배우자특성	전체
고용주 및 자영자	0.665** (0.242)			0.628** (0.234)
무급가족종사자	0.836** (0.324)			0.805** (0.256)
기타(비해당)	-2.411* (1.086)			-15.101 (847.578)
요보호자 유무				
0~2세 아동 유무		-0.733*** (0.192)		-0.715*** (0.167)
3~5세 아동 유무		-0.428** (0.150)		-0.334* (0.137)
6~9세 아동 유무		-0.613*** (0.127)		-0.485*** (0.123)
노인 유무		0.638** (0.212)		0.694*** (0.189)
장애인 유무		-0.412* (0.173)		-0.417* (0.169)
배우자 교육수준(중졸 이하=0)				
고졸 이하			-0.209 (0.199)	0.102 (0.222)
전문대졸 이하			-0.364 (0.250)	0.198 (0.271)
대졸 이하			-0.023 (0.231)	0.266 (0.265)
대학원 이상			-0.529 (0.329)	-0.123 (0.344)
배우자 경황상태				
임시직			0.524* (0.205)	0.175 (0.181)
일용직			0.261 (0.237)	-0.329 (0.221)
고용주 및 자영자			0.537*** (0.160)	0.369* (0.151)
실업자			0.000	0.000
배우자산업(1차산업=0)				
2차산업			-1.177** (0.411)	-0.778* (0.338)
3차산업			-0.979* (0.399)	-0.716* (0.325)

구분	본인특성	요보호가족	배우자특성	전체
배우자직종(관리전문직=0)				
사무직			0.067 (0.191)	0.291 (0.171)
서비스 및 판매직			0.251 (0.206)	0.512** (0.190)
숙련 및 기능직			0.199 (0.185)	0.211 (0.168)
단순노무직			0.444 (0.254)	0.478* (0.234)
경상소득(본인소득제외)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소득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상수항	(0.376) (0.517)	1.528*** (0.152)	1.139* (0.448)	0.170 (0.614)
N	2,103	2,103	1,931	1,931
pr2	0.072	0.059	0.030	0.117

자료: 한국복지패널 7차 데이터(기준년도: 2011년)

승산비 계측 결과, 앞서 전체 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학력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졸 여성의 경우 중졸 이하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1.29배 높았으며, 전문대졸 여성은 1.53배, 4년제대졸 여성은 2.04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7.07배나 높았다. 이에 비해, 특히 0~2세 영유아가 있는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며, 다른 연령대의 아동이 있는 경우도 이보다는 덜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자영자인 경우, 서비스판매직이나 단순노무직 종사자인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1.45배, 1.67배, 1.61배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Odds Ratio(유배우여성 전체)

본인 특성	40~54세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하	4년대졸 이하	대학원 이상
	1.03	1.29	1.53	2.04	7.07
	정규직	고용주 및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0.74	1.87	2.24		
요보호 가족	0~2세 아동	3~5세 아동	6~9세 아동	노인	장애인
	0.49	0.72	0.62	2.00	0.66
배우자 특성	자영자	2차산업	3차산업	서비스판매직	단순노무직
	1.45	0.46	0.49	1.67	1.61

자료: 한국복지패널 7차 데이터(기준년도: 2011년)

라. 유배우여성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에서 'M'자 곡선의 변곡점은 대체로 40세 전후, 즉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어린 자녀의 육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25~39세 시기와 자녀가 주양육자의 전적인 의존을 벗어나는 시기인 40세 이후 여성이 노동시장에의 재진입을 고려하는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유배우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두 연령대를 분리해서 분석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은 여성경제활동 참가 결정에 있어 이전 일자리 경험이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이전에 일자리 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 하는데 실질적·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5~39세 여성의 경우 0~2세 영아와 6~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있는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유배우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logit 분석 결과)

구분	25~39세	40~54세
연령(연속변수)	-0.006 (0.029)	-0.038 (0.025)
교육수준(중졸 이하=0)	(.)	(.)
고졸 이하	2.694** (0.977)	0.041 (0.296)
전문대졸 이하	2.817** (1.000)	0.126 (0.523)
대졸 이하	3.162** (1.012)	0.376 (0.410)
대학원 이상	4.576*** (1.157)	2.364** (0.756)
첫 직장 고용형태(비정규직=0)	(.)	(.)
정규직	0.009 (0.249)	0.357 (0.236)
고용주 및 자영자	-0.298 (0.795)	-1.015 (0.755)
무급가족종사자	0.351 (0.877)	-0.398 (0.426)
기타(비해당)	12.109*** (0.895)	12.536*** (0.958)
최근 직장 고용형태(비정규직=0)	(.)	(.)
정규직	0.113 (0.236)	-0.815*** (0.216)
고용주 및 자영자	0.341 (0.508)	0.425 (0.311)
무급가족종사자	0.714 (0.628)	0.227 (0.388)
기타(비해당)	-11.921*** (0.931)	-14.542*** (1.056)
요보호자 유무		
0~2세 아동 유무	-0.675** (0.234)	-1.376 (0.830)
3~5세 아동 유무	-0.283 (0.188)	-0.780 (0.483)
6~9세 아동 유무	-0.470* (0.194)	-0.661* (0.275)
노인 유무	0.845* (0.421)	1.025** (0.318)
장애인 유무	-0.646 (0.403)	-0.279 (0.244)

구분	25~39세	40~54세
배우자 교육수준(중졸 이하=0)	(.)	(.)
고졸 이하	-0.088 (0.682)	-0.003 (0.300)
전문대졸 이하	-0.157 (0.723)	-0.245 (0.472)
대졸 이하	0.097 (0.719)	0.139 (0.382)
대학원 이상	-0.062 (0.805)	-0.976 (0.514)
배우자 경활상태	(.)	(.)
임시직	0.168 (0.317)	0.267 (0.309)
일용직	0.168 (0.470)	-0.204 (0.350)
고용주 및 자영자	0.266 (0.260)	0.410 (0.236)
실업자	0.000	0.000
배우자 산업(1차산업=0)	(.)	(.)
2차산업	0.420 (0.628)	-1.518* (0.596)
3차산업	0.482 (0.610)	-1.270* (0.583)
배우자 직종(관리전문직=0)	(.)	(.)
사무직	0.096 (0.274)	0.231 (0.327)
서비스 및 판매직	0.301 (0.285)	0.181 (0.345)
숙련 및 기능직	0.366 (0.279)	-0.125 (0.305)
단순노무직	0.731 (0.409)	0.193 (0.406)
경상소득(본인소득제외)	-0.000*** 0.000	-0.000*** 0.000
소득제공	0.000** 0.000	0.000* 0.000
상수항	-2.172 (1.448)	4.797*** (1.453)
N	852	1,079
pr2	0.077	0.153

자료: 한국복지패널 7차 데이터(기준년도: 2011년)

제5절 소결

인류 역사의 초기 단계부터 여성은 생업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수렵과 채집 시절, 여성은 주로 아이의 행동 반경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사와 채집을 병행했을 것이다. 농경사회에서도 여성은 아이를 낳고 기르고 노인을 돌보고 가사와 농사일까지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와 같이 일과 가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사회에서 가사 및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이 여성에게 손쉬운 대안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문화의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고, 직장에서도 남성중심의 문화와 긴 근로시간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선택은 가구경제상 불가피하거나 가사와 육아의 외주화가 가능하지 않은 한 쉽지 않은 선택이다.

본 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여성 본인(배우자 유무, 연령)과 여성이 속한 가구의 특성(소득계층)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각각이 처한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고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한 표가 아래 <표 3-1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인적 자본의 대표적 변수라 할 수 있는 교육수준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현저한 특징은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73.2%)이 두드러지게 높다는 점이다. 이들 중 25.9%가 관리직 및 전문직, 47.3%는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여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모형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고전 노동공급모델에 기반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 결과들(Leigh, 2010; Munasinghe, Reif & Henriques, 2008; Gustafsson & Kenjoh, 2008; 강신욱, 2009)과도 일치한다.

〈표 3-11〉 여성 경제활동 참가 결정요인(로지트분석 결과 요약)

구분	비경활 포함여부		소득계층			유배우			
	포함	비포함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	전체	25~39	40~54	
연령(25~39세=0)									
40~54세	+	+	-	+	+	+	**	-	-
교육수준(중졸 이하=0)									
고졸 이하	+	*	+	**	+	+	+	**	+
전문대졸 이하	+	*	+	**	+	+	+	**	+
대졸 이하	+	**	+	*	+	+	**	+	+
대학원 이상	+	**	+	+	+	+	**	+	**
유배우(무배우=0)	-	**	-	**	-	**	×	×	×
최근 직장 고용형태(비정규직=0)									
정규직	-	**	-	*	-	-	*	+	**
고용주 및 자영자	+	*	+	-	+	+	**	+	+
무급가족종사자	+	*	-	**	+	+	**	+	+
기타(비해당)	-	*	-	*	+	-	*	-	**
요보호자 유무									
0~2세 아동 유무	-	**	-	**	-	-	**	-	**
3~5세 아동 유무	-	**	-	*	-	-	*	-	-
6~9세 아동 유무	-	**	-	**	+	-	**	-	*
노인 유무	+	*	+	*	-	+	+	**	+
장애인 유무	-	**	-	**	-	-	*	-	-
배우자 산업(1차산업=0)									
2차산업	×	×	×	×	×	×	×	×	*
3차산업	×	×	×	×	×	×	×	×	*
경상소득	-	**	-	**	×	×	**	-	**
소득제곱	+	**	+	**	×	×	**	+	*

둘째, 연령 효과는 유배우 여성에서만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연령효과는 양으로 나타나 25~39세보다는 40~45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두 집단을 분리해서 분석했을 때는 연령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로 35세를 기점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50대 이후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5~29세(68%)와 45~49세(66.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30~39세 사이에 낮은 쌍봉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 문제, 즉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 노동시장 참가를 증가시키기 위한 핵심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근 직장의 고용형태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대체로 최근 직장이 정규직인 경우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에서 여성의 일자리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널리 분포해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 마지막으로 일했던 직장이 정규직 일자리였던 여성의 경우 의증임금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 한편, 최근 일했던 적이 없는 여성(비해당)의 경우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여성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의 유무는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모형에서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부분은 소득계층별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6~9세 아동 제외)에서는 가구 내에 돌봐야 할 아동이 존재하는 것이 그들의 경제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 여성의 경우 가구 경제상의 문제로 인해 아동양육의 기회비용과 의중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아동의 유무가 이들 여성의 취업 결정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고소득층 여성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동이 있는 경우만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영유아의 존재는 취업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들은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경제적 여력으로 인해 가사와 양육 부담의 외주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영유아가 이들의 취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동일하나, 그 원인은 상이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한편 유배우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9세 이하 모든 아동의 존재는 어머니의 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5세 유아의 영향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보육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공적인 보육 지원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이들 연령층 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이 다른 연령층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결과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양육의 사회화’가 빚어낸 새로운 풍경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아를 위한 육아휴직제와 초등학생에 대한 보육과 교육 시스템도 좀 더 ‘친취업맘’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부분이다¹⁵⁾.

정책적 함의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이미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가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경우 케어가 필요한 아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만큼 여유가 없는 계층이며, 의중임금이 낮아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계층이다. 정책

15) 심층인터뷰에서 몇몇 엄마들은 보육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잡아감에 따라 3~5세 아동에 대한 육아부담은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으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오히려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은 물론이고 방과후 공백 시간에 대한 고민이 더 깊다고 토로한다.

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육에서 저소득층 맞벌이가구에 대해 좀 더 강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장려세제, 주거급여 등 실질적 소득보장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일과 복지'의 양립을 통해 중산층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기회비용과 의존임금이 높아 비경활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비경활 사유는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맞물려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의식(자녀 교육에 대한 과도한 몰입과 경쟁)과 제도(공보육 및 공교육의 제자리 찾기)가 동시에 바뀌어야 하나 그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사회화함과 동시에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기회비용을 낮추고, '유연안정성'의 관점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층 여성들의 경우 내부적·외부적 양극화가 발견된다. 내적 양극화란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이 반반이고, 일하는 여성의 경우 고소득의 안정적이고 기업복지 수준이 높은 일자리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외적 양극화란 고소득층 일하는 여성의 일자리와 저소득층 일하는 여성의 일자리 간 일자리의 질에 있어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유지하면서 맞벌이가구 확대정책을 추구할 경우 가구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⁶⁾. 이러한 외적 양극화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적으로 일자리 양극화를 줄이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16) 현재 수준에서도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5장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4장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 국가간 비교분석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복지국가, 탈산업화와 여성 경제활동참여

제3절 한국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여의 특징

제4절 복지국가 유형별 OECD 주요 국가들의 여성고용 현황

제5절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 국가들의 여성고용

제6절 소결

4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 << 국가간 비교분석

제1절 문제제기

본 연구는 OECD 주요 국가들에서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특성과 한국 정책에의 함의를 찾기 위한 연구이다.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왔으나, 최근 50%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참여의 정체는 특히 출산, 초기 양육기의 경제활동참여 제한과 직결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여의 특징은 임신·출산시기를 전후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다가 중장년기 다시 유입되는 M자형을 보이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M자형 곡선은 계층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데, 특히 고학력 여성들은 임신·출산시기를 전후하여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노동시장경제활동참가율의 정체와 M자형 곡선의 유지는 지난 10년간 초기 양육기 일가족양립을 지원하는 휴가 및 보육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과 대비해 볼 때 정책의 효과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더욱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정체는 그 자체로 여성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례로 보육서비스의 확충은 여성고용을 지원하기 보다는 일하지 않는 여성들의 보육서비스 이용율을 높임으로서 여성고용과 상충되는 양육수당의 도입을 가져오는 효과를 낳았다(홍승아 외, 2013).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일가족양립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려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이규용 외, 2004).

일가족양립정책 등의 확충에도 여성경제활동참여가 늘고 있지 않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늘리기 위해 복지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주요 복지국가들과 한국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여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주요 복지국가들에서 여성고용을 늘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특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구간을 살펴볼 것이며, OECD 주요 국가들의 과거 경험에서 M자형 곡선의 출현이 있었는지, 이와 같은 M자형 곡선은 언제 소멸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M자 곡선의 출현시기와 소멸시기, 여성의 연령별 고용상태를 분석하여 어떤 부문의 고용을 통해 M자 곡선을 탈피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여의 특징은 어떠한가?
2. 복지국가 유형별로 OECD 주요 국가들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여의 추이는 어떠한가? 어떤 복지국가 유형에서 M자 곡선이 출현하고 소멸하였는가?
3. 복지국가 유형별로 대표 국가의 연령별 여성고용은 어떤 부문에서 이루어졌는가? M자 곡선 시기에서 역U자시기로 전환하면서 여성고용을 흡수한 부문은 무엇인가?

이러한 분석을 위해 다양한 통계가 사용되었다. 국내분석의 경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주요 국가에 대해서는 OECD 통계를, 연령별 여성고용 부문 분석을 위해서는 Luxembourg Income Study(LIS, 룩셈부르크 소득조사) 원자료 분석을 활용하였다.

제2절 복지국가, 탈산업화와 여성 경제활동참여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고전이 된 Esping-Andersen(1990)은 복지국가가 여성의 고용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독일, 스웨덴, 미국의 1960~1980년 고용에서 나타난 탈산업화의 추세를 비교할 때, 복지국가의 차이는 탈산업화에서도 서로 다른 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독일의 경우, 탈산업화가 지체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여 전통적 산업의 비중이 높다. 전통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유지되어 노동시장 내의 성평등도 달성되지 않는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전문화된 사회복지고용과 공공부문을 통해 탈산업화 사회로 이행하였다. 단 탈산업화 산업 부문에서 사회복지분야 외의 분야는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다. 사회복지분야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여성에게 경제활동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전문직, 기술직에 다수 분포하고 관리직까지는 충분히 진입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한편 복지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미국의 경우, 여성 고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공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전통적 산업과 탈산업 산업이 함께 증가하였다. 탈산업화는 복지분야 뿐 아니라 '생산서비스(기업서비스, 금융, 부동산)', '오락(여가, 요식, 숙박)' 분야의 일자리 증가를 통해서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직업에는 관리직과 나쁜 일자리가 둘 다 많으며, 여성은 관리직에도 다수 진출하고 나쁜 일자리 집중도 줄어들어 성별 탈분절은 오히려 미국에서 가장 현저하다. 탈산업화는 시장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고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확대는 소극적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의 실증연구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여성의 고용에 다음의 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Mandel & Semyonov, 2006). 즉 복지국가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서는 노동공급 측면(가족정책의 확충)과 노동수요 측면(여성의 일자리)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노동공급측면에서는, 복지국가의 발전은 특히 가족정책을 통해 일가족양립을 용이하게 하여 여성고용 증대에 기여한다(Gornick et al, 1997; Gornick & Meyers, 2005). 가족정책 중에서 특히 부모휴가,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반대로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을 통한 여성일자리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기회를 제공한다(Rein, 1985; Cusack, Notermans & Rein, 1989; Kolberg, 1991; Mandel & Semyonov, 2006에서 재인용). 그러나 복지국가를 통한 여성경제활동참여는 또한 성별분리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Gornick & Jacobs, 1998). Mandel & Semyonov(2006)는 실증연구를 통해 복지국가는 여성을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했지만 힘있고 바람직한 고용지위에 진입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Mandel & Semyonov, 2006). 이러한 주장은 Walby(1990)가 복지국가는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 가부장제의 형태를 바꾸는 데 그쳤다는 비판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구 국가들의 논의는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여 맥락과는 다소 상이하다.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는 출산, 양육기 이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가 출산, 양육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퇴거하고 이후 다시 진입하는 뚜렷한 M자 곡선의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M자 곡선의 문제는 서구 다른 국가들에서는 더 이상 관찰되지 않는 패턴으로, 최근의 서구 연구들에서는 이를 주요 주제로 다루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도 이와 같은 경제활동참여곡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OECD 국가 중 일본이 거의 유일하며, M자 곡선에 대한 논의도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여성들의 '주부화'를 연구한 Ochiai(1997)에 따르면, 실제로 서구 국가들에서도 20세기 초반 산업화 시기 '여성의 주부화'는

발견되었으며, 산업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한세대 전체가 노동 시장에서 퇴장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후발국가에서는 산업화와 탈산업화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한 세대 내에서도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이 발견되며, 이로 인해 ‘M자형 곡선’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가설 수준으로, 실제로 서구 국가들에서 M자형 곡선이 발견되는지에 대한 실증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Ochiai(1997) 연구로부터 15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이러한 M자 패턴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탈산업화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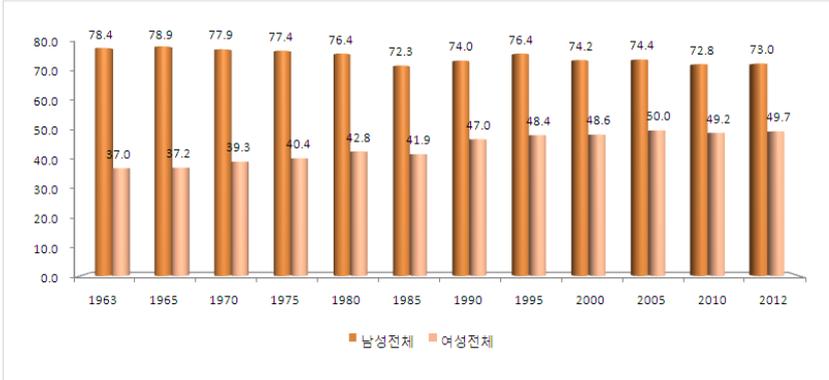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특히 M자 곡선의 출현과 소멸에 주목하여, 주요 OECD 국가들에서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여 곡선의 변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방향을 제언할 것이다.

제3절 한국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여의 특징

1. 한국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여 추이 분석

한국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여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60년대부터의 장기추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고,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1963~2012년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보면 남성은 78.4%에서 73.0%로 5.4%p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은 37.0%에서 49.7%로 12.7%p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은 50%를 넘기지 못하는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그림 4-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963~2012), 15세 이상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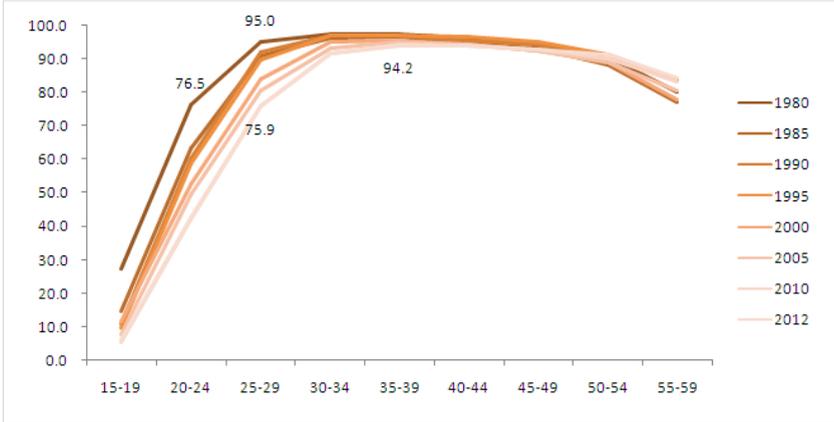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구직기간 1주일 기준)

이러한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전체적인 곡선의 형태는 유지된 채 위치만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성의 경우 역U자 패턴은 유지된 채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0년에는 20대 후반이 정점에 달하였으나 2012년에는 30대 후반에서 정점을 보인다.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특히 30대까지가 분명하며, 5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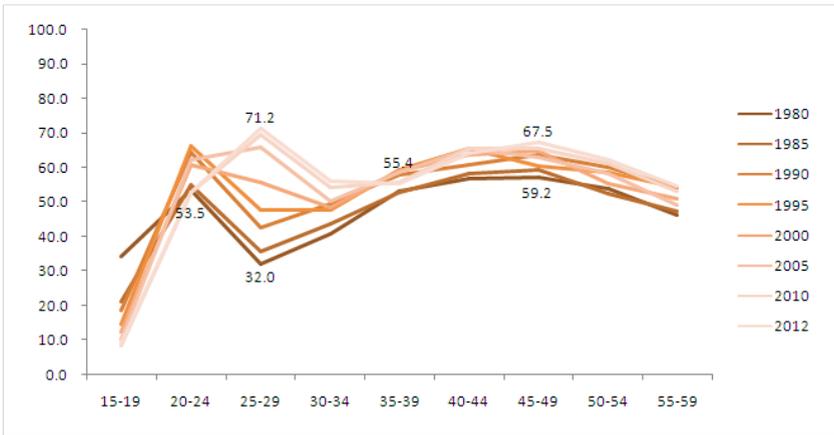
여성의 경우 M자형 곡선의 모양은 유지되는 가운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정점이 2005년 이후 20대 후반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이다. 이는 만혼 및 비혼 증가, 출산연령지연의 효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정점이 1980년 53.5%(20대 초반)에서 2012년에는 71.2%(20대 후반)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다. M자 곡선이 꺾이는 꼭지점도 1980년 32.0%(20대 후반)에서 2012년 55.4%(30대 후반)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어 M자의 정도는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림 4-2] 연령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1980~2012)



주: 연령별 분리자료는 1980년부터 생산, 60세 이후는 1990년부터 생산되어 제외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구직기간 1주일 기준)

[그림 4-3]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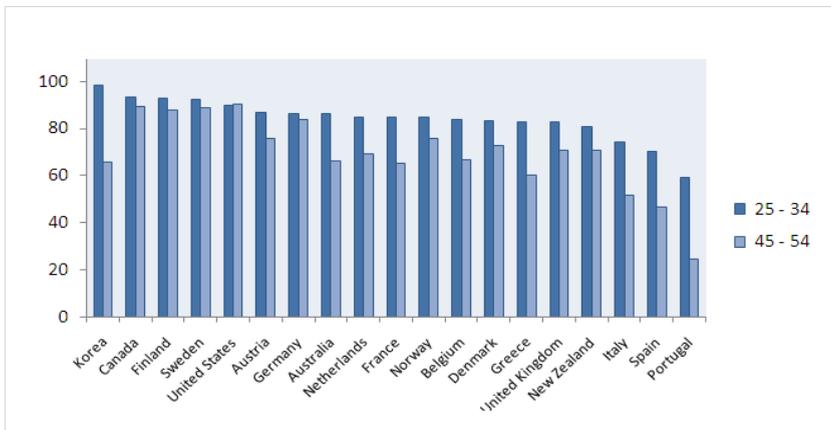


주: 연령별 분리자료는 1980년부터 생산, 60세 이후는 1990년부터 생산되어 제외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구직기간 1주일 기준)

특히 이와 같은 연령별 고용률을 학력 및 고용지위로 분리한 연구(금재 호·윤자영, 2011)에 따르면, M자 곡선의 첫 번째 정점을 이루는 집단과

두 번째 정점을 이루는 집단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정점은 주로 대졸이상의 고학력 여성으로, 고졸이하 저학력 여성들은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반면, 두 번째 정점은 고졸이하 저학력 여성들로, 대졸이상 여성들은 재진입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더욱이 20~30대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면 다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5~34세 고등교육(전문대, 대학) 이상 학력의 여성비율은 OECD와 비교할 때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림 4-4] OECD 주요 국가들의 여성 고등교육(전문대이상) 학력 비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Chart CO3.1: A 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at least an upper second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2010

2. OECD 국가들과 한국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여 비교

그렇다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어떤 연령대에서 참여율이 가장 낮은가? 경제활동참여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은 연령대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수치가 없으며, 국가마다 상이

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및 전체 인구의 연령대, 군인 수 (armed force), 조사주기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OECD에서는 주로 두 가지 경제활동참가율을 사용하는데, 전체인구 대비 전체 경제활동인구, 15~64세 대비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두 가지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표 4-1〉와 [그림 4-5]는 연령대별로 한국과 OECD 평균 남, 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활용하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며¹⁷⁾, 이는 49.9%로 OECD 평균인 51.5%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차이는 1.6%p 수준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그러나 연령대를 15~64세로 제한하면 한국은 55.2%로 OECD 평균인 62.3%보다 7.1%p 낮으며, 주(prime) 연령대인 25~54세로 제한하면 62.8%로 OECD 평균인 71.7%와 8.9%p나 차이가 나게 된다. 즉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에는 노인 경제활동참가율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 연령대로 한정할 경우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연령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확한 M자 곡선이 prime 연령대의 한국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분명한 원인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10대와 2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20대 후반에 OECD 수준 이상에 잠시 도달하였다가 30대에 그 차이가 가장 벌어져 30~34세의 경우 56.4%로 OECD 70.3%보다 13.9%p, 35~39세의

17) OECD 노동통계는 연령별 총인구수, 경제활동참가자 수, 참가비율 수치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나,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따로 계산하지 않고 있다. OECD 노동통계 상에서 제공되는 한국의 'Total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수치는 15~64세 총인구 대비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자(65세 이상 포함) 비율로 계산되어 있어 오류가 있다. 예컨대 한국의 2012년도 여성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49.9%이며 15~64세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55.2%이지만, OECD의 여성 'Total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수치는 59.7%로 제시되어 있다.

경우 55.5%로 OECD 평균 71.7%보다 15.6%p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이와 같은 차이는 40대를 넘어서면 점차 좁혀지지만 50대까지는 여전히 한국이 OECD 평균이 미치지 못한다. 다만 60대 이상 노년기에 접어들면 한국이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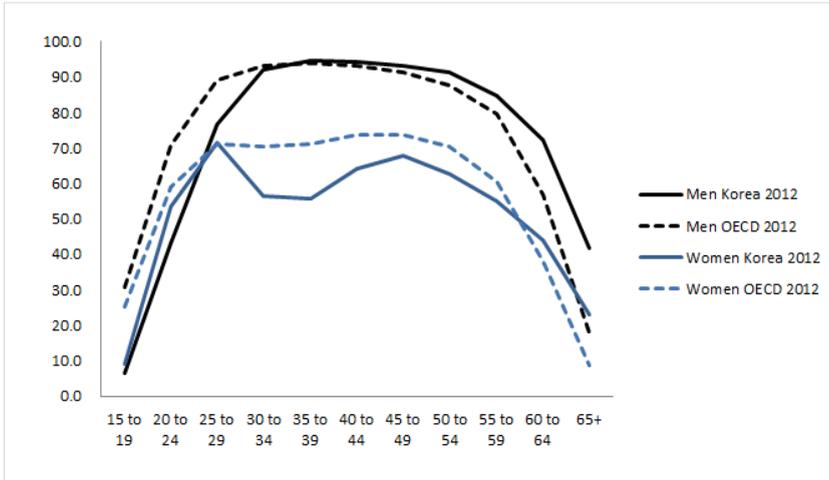
한편, 남성의 경우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73.3%로 OECD 평균수준인 69.5%를 상회하지만, 연령대를 근로가능연령대로 제한하면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대~30대 초반까지 한국 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30대 후반부터는 OECD 수준을 상회하며, 그 차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즉 한국 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늦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늦게 퇴장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역U자 모양의 경제활동참여곡선이 OECD 국가들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표 4-1〉 한국과 OECD 평균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구분		15 ~ 19	20 ~ 24	25 ~ 29	30 ~ 34	35 ~ 39	40 ~ 44	45 ~ 49	50 ~ 54	55 ~ 59	60 ~ 64	65 이상	25 ~ 54	15 ~ 64	15 이상
여성	한국 (A)	9.1	53.5	71.6	56.4	55.5	64.3	67.7	62.5	54.8	43.9	23.0	62.8	55.2	49.9
	OECD (B)	25.3	59.1	71.0	70.3	71.1	73.6	73.8	70.3	60.6	38.0	8.8	71.7	62.3	51.5
	차이 (B-A)	-16.2	-5.6	0.6	-13.9	-15.6	-9.3	-6.1	-7.8	-5.8	5.9	14.2	-8.9	-7.1	-1.6
남성	한국 (A)	6.3	43.4	76.5	92.1	94.4	94.3	93.0	91.4	84.7	72.3	41.6	90.7	77.6	73.3
	OECD (B)	30.8	70.7	89.1	93.3	94.0	93.3	91.4	87.6	79.7	56.7	17.9	91.5	79.7	69.5
	차이 (B-A)	-24.5	-27.3	-12.6	-1.2	0.4	1	1.6	3.8	5	15.6	23.7	-0.8	-2.1	3.8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5] 한국과 OECD 평균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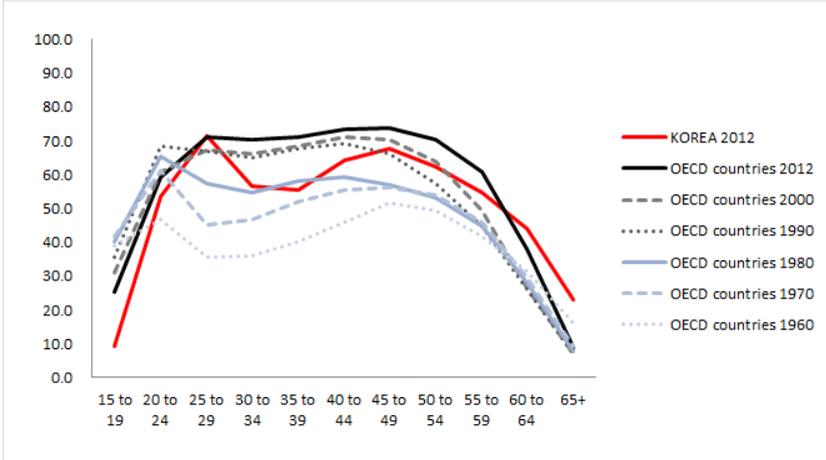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러나 OECD 국가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는 비교적 분명한 M자 곡선이 존재하였고, 1990년대가 되어서야 역U자 패턴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의 OECD 평균 여성경제활동참여 곡선은 한국의 2012년도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하면, 한국인의 경제활동참여는 남녀 모두 OECD보다 늦게 시작하여 늦게 퇴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성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역U자형을 유지하여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여성들의 경우 초기양육기인 30대에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감소하였다가 40대 후반에 다시 회복되는 M자형 곡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M자형 곡선이 한국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M자형 곡선은 OECD 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1990년대 이후 발견하기 어려운 한국적인 특성이다.

[그림 4-6] 한국('12)과 OECD 평균('60~'1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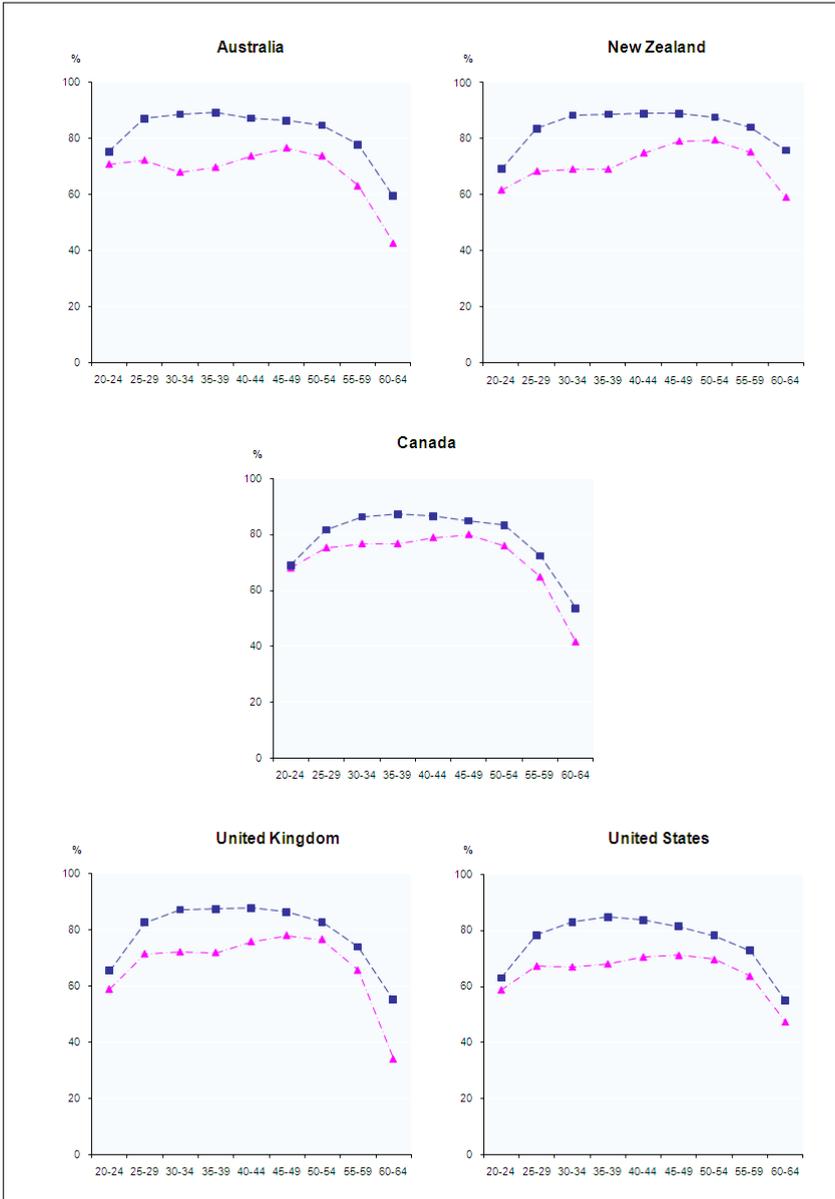
제4절 복지국가 유형별 OECD 주요 국가들의 여성고용 현황

그렇다면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참여에서 M자 곡선이 발견되는 시기가 있는가? 본 절에서는 복지국가 유형별로 OECD 주요 국가들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여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현재 M자형 곡선과 유사한 시기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1. 자유주의 국가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의 남녀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가운데,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깊지 않은 M자곡선이 발견되고 있다(그림 4-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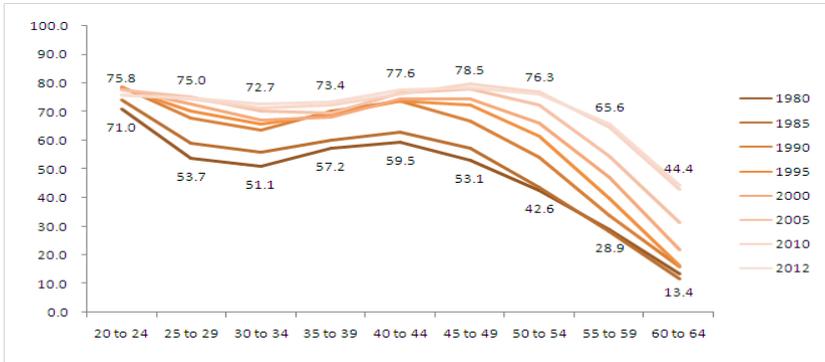
[그림 4-7] 자유주의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Chart LMF1.4.A: 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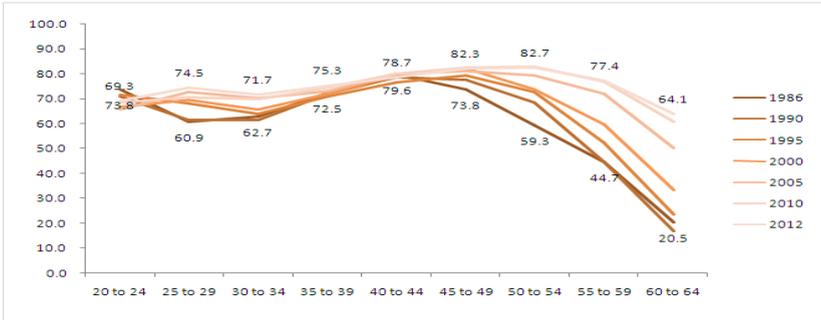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자료가 가능한 시점부터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8]~[그림 4-12]와 같다. 정도와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M자형 곡선이 출현한 시기가 발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비록 그 정도가 깊지는 않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M자 곡선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의 경우에도 M자 곡선이 1990년대까지 존재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역U자 형태로 전환되었다. 한편 M자형 곡선이 가장 먼저 나타났다가 소멸한 것은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이다. 1970년대까지 깊이가 깊지 않은 M자형 곡선이 존재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거의 역U자 형태로 전환되었다.

[그림 4-8] 호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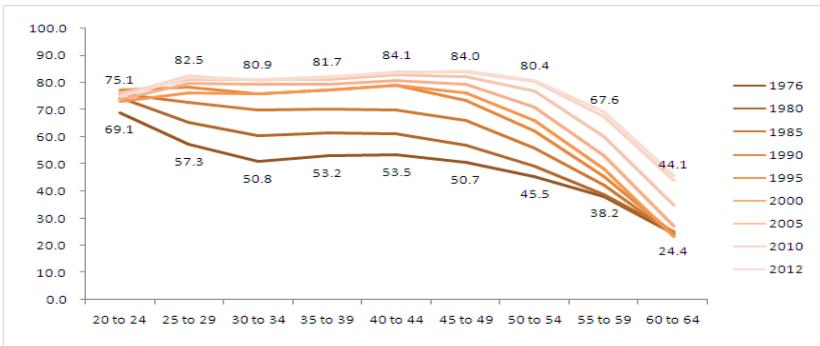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9] 뉴질랜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5~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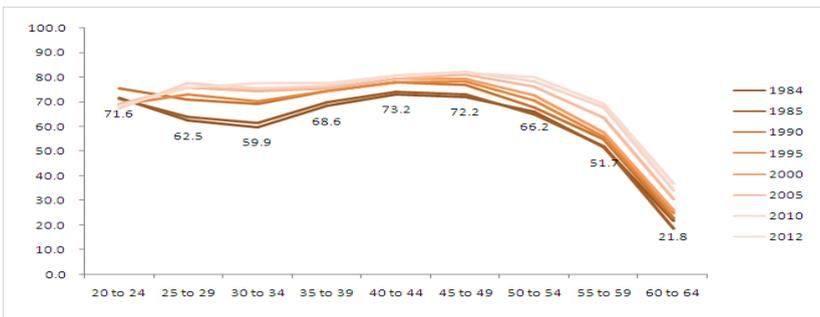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10] 캐나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76~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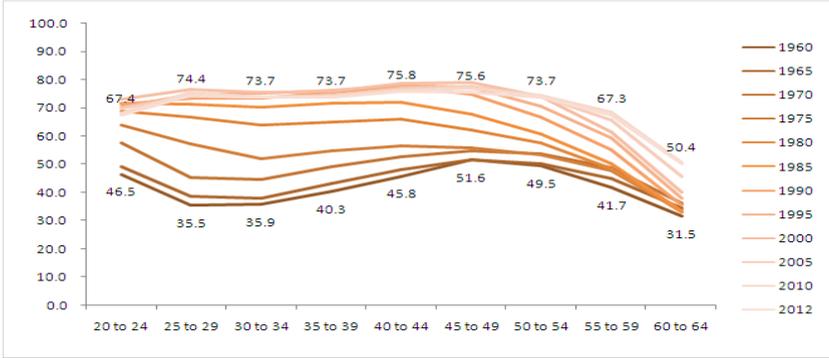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11] 영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4~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12] 미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6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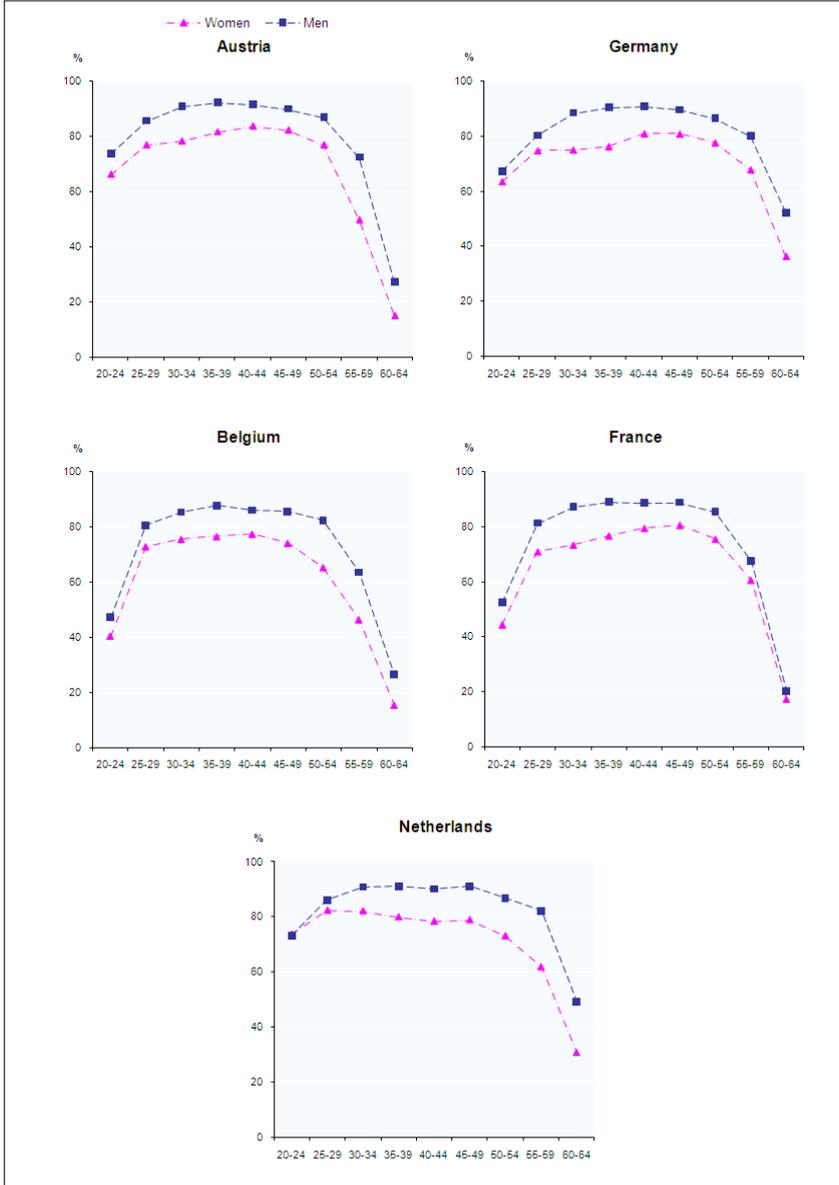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2. 보수주의 국가군

전통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지지적이지 않았던 보수주의 국가들의 경향은 어떠한가? 2011년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보면, 자유주의 국가들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역U자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3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소 정체되는 약한 M자 곡선이 발견되는 수준이다(그림 4-13 참조).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자료가 가능한 시점부터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14]~[그림 4-18]과 같다. 보수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M자형 곡선이 어느 정도 출현하였으나, 자유주의 국가들에 비해 뚜렷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20대에 정점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향하며 두 번째 봉이 발견되지 않는 역V자 혹은 일자에 가까운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곡선의 기울기는 다소 완화되어 있지만 유사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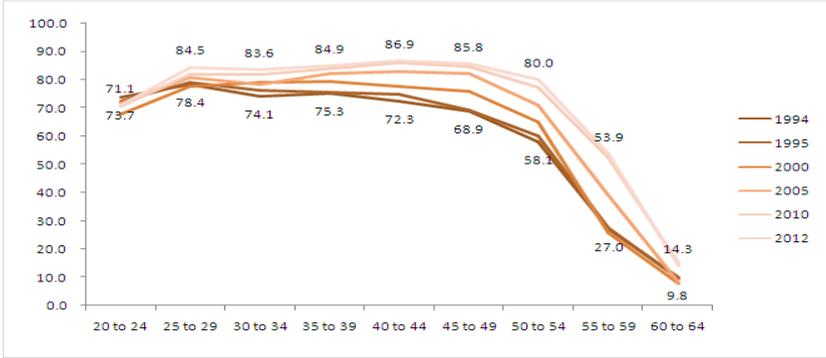
[그림 4-13] 보수주의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Chart LMF1.4.A: 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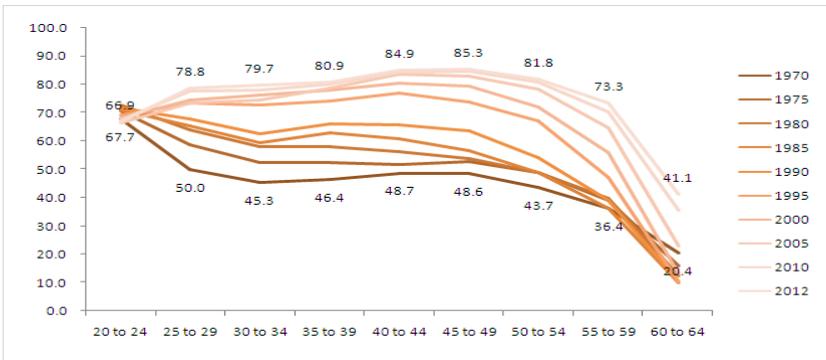
112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4-14] 오스트리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94~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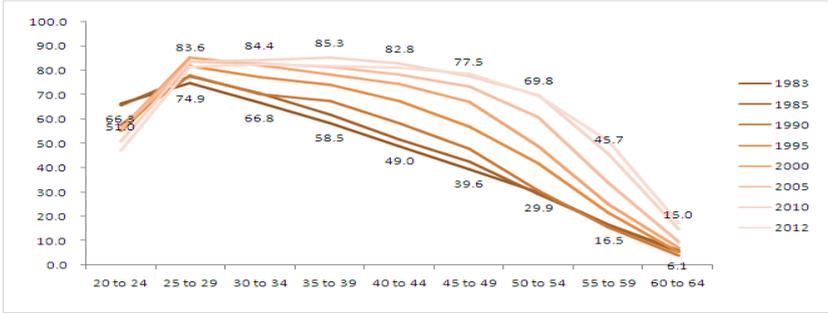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15] 독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7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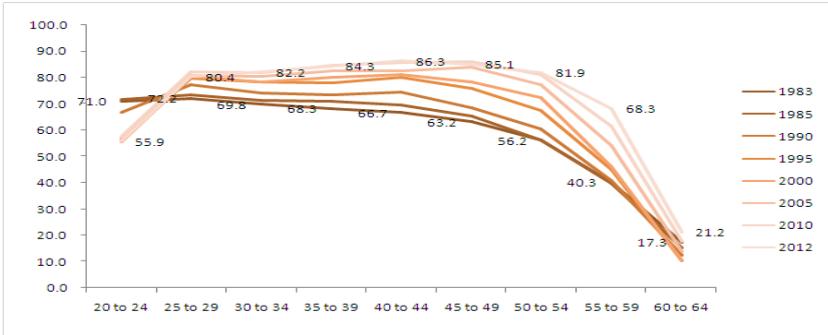
주: '90까지 서독자료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16] 벨기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3~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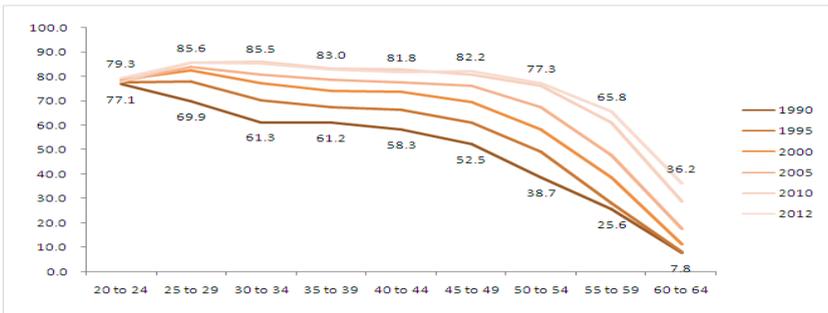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17] 프랑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3~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18] 네덜란드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9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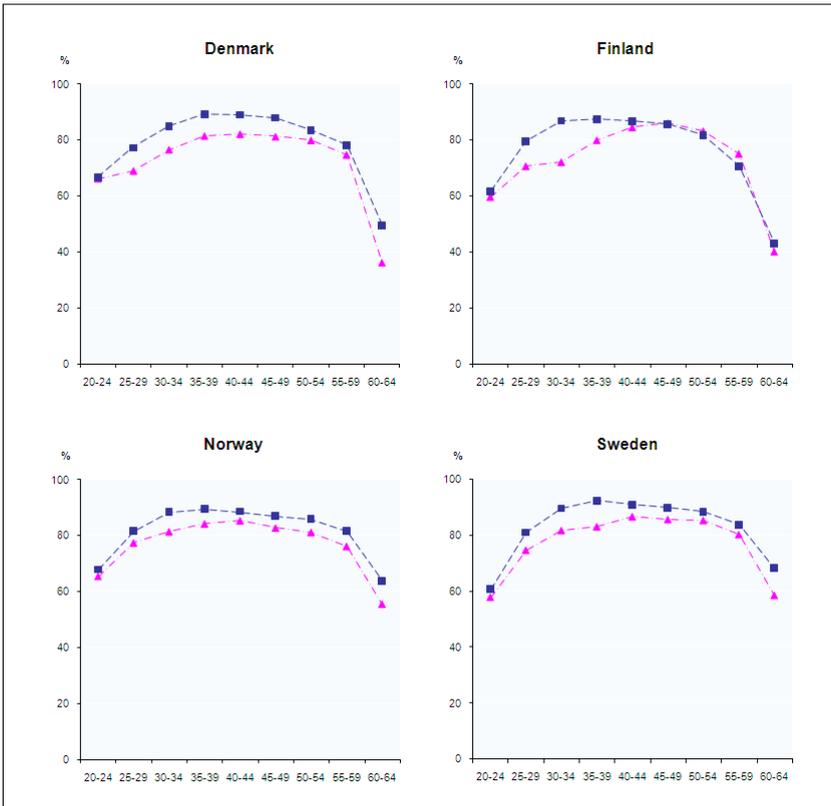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3. 시민주의 국가군

북구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히 높고 남성과 참여율 수준이나 곡선의 형태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약간의 정체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중년기가 되면 남성경제활동참가율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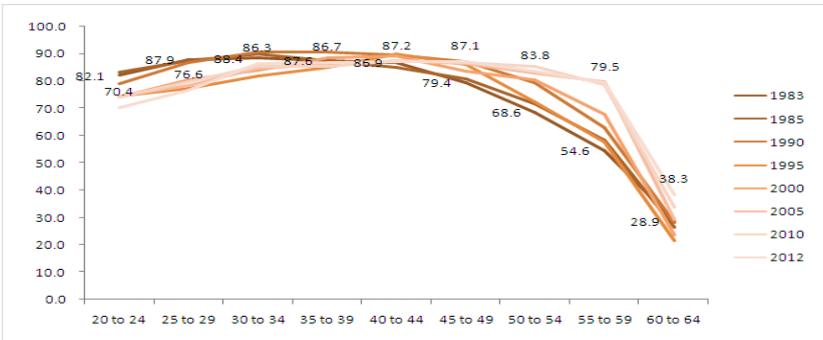
[그림 4-19] 시민주의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Chart LMF1.4.A: 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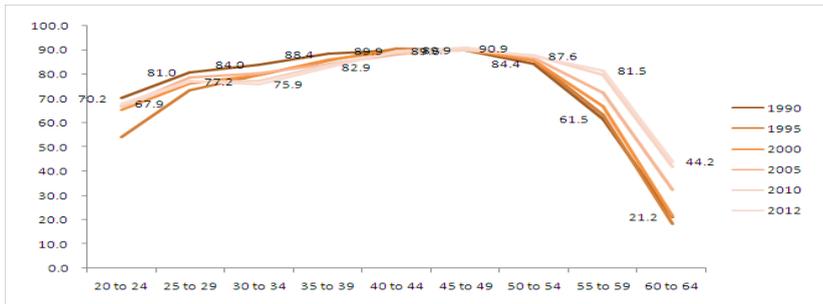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사민주의 국가들의 경우, 이미 1980년대에 역U자 곡선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70년대 이전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 M자형 곡선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좀 더 오랜기간 추적이 가능한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자료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이들 국가에서도 M자 곡선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예컨대 노르웨이의 1975년 이전 곡선, 스웨덴의 1970년 이전곡선에서 20대 초반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다가 후반에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그림 4-20] 덴마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3~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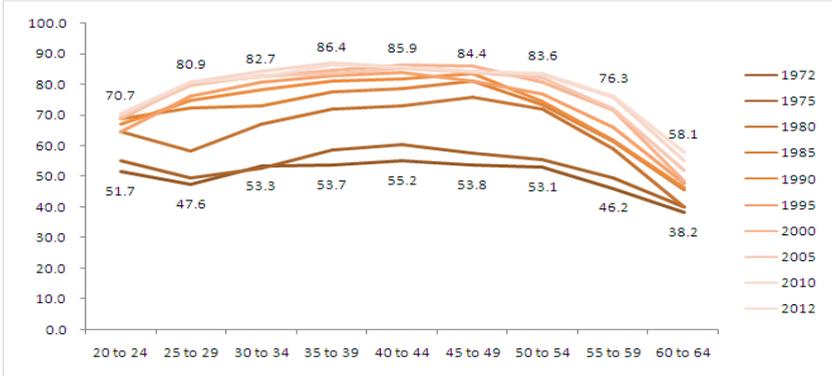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21] 핀란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9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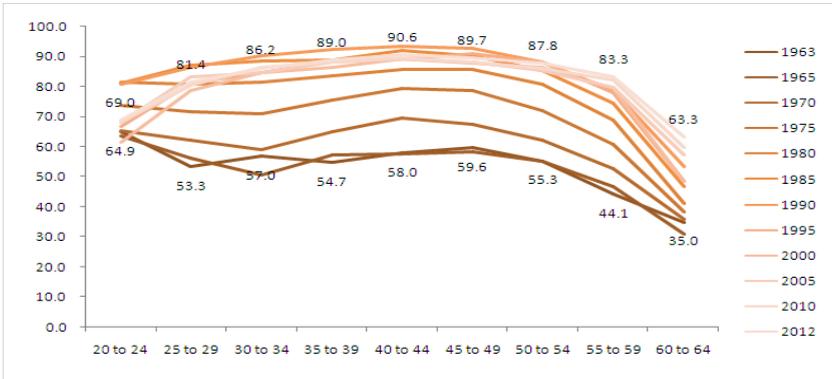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22] 노르웨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5~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23] 스웨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63~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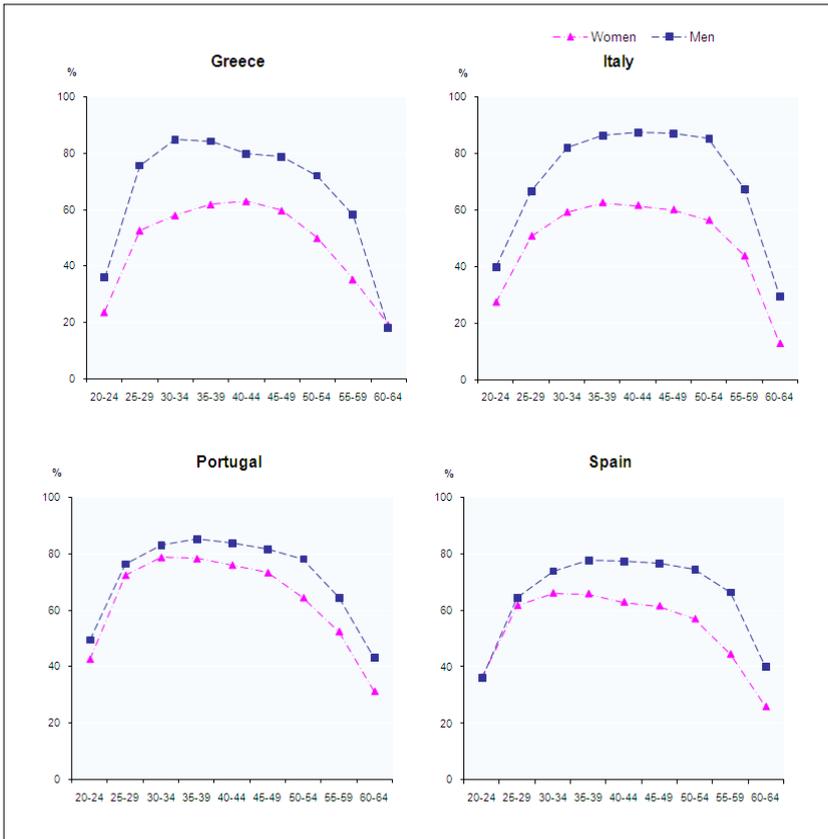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4. 남유럽 국가군

한편 보수주의 국가로 분류되기도 하는 남유럽 국가들의 경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남유럽 국가들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많이 차이나는 국가로,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전체적인 고용률이 낮은 수준이지

만 이들 국가들에서는 M자 곡선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중년층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림 4-24] 남유럽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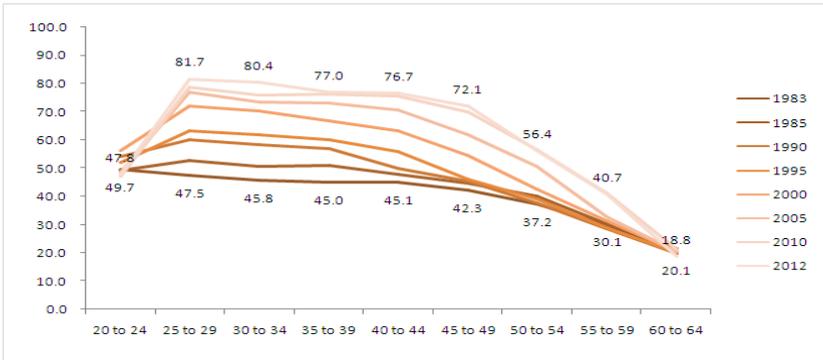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Chart LMF1.4.A: 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2011.

국가별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1970년대 자료까지 살펴봐도 M자형 곡선은 발견되지 않는다. 1970~80년대 모든 국가들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초반을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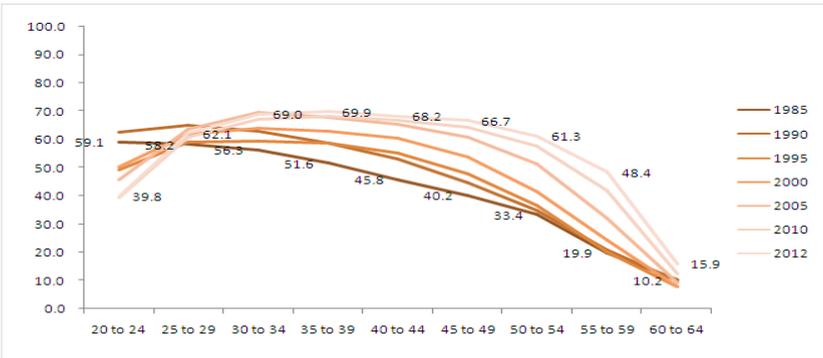
점으로 계속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대체로 역U자 모양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5] 그리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3~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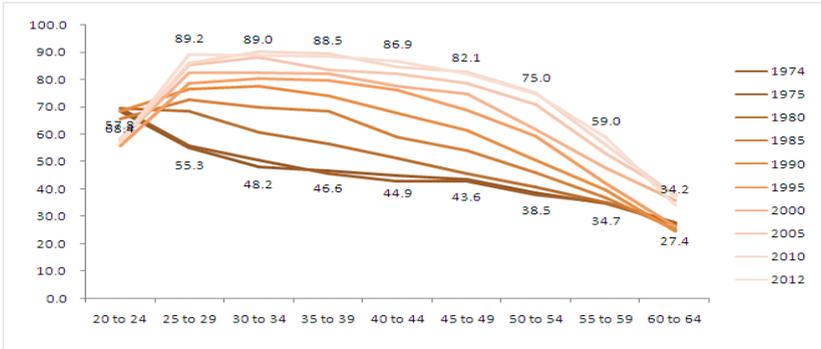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26] 이탈리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5~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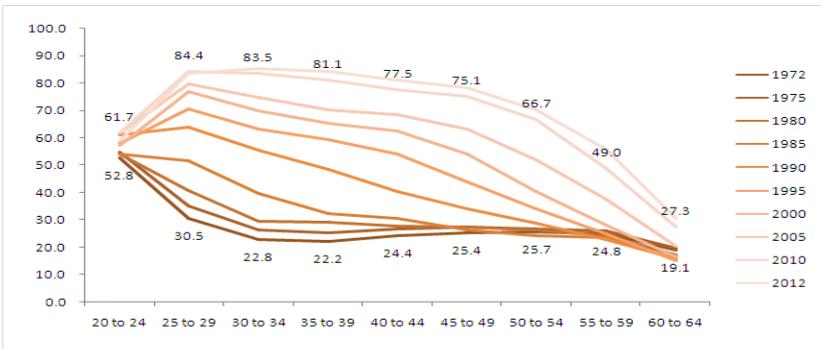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27] 포르투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74~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28] 스페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72~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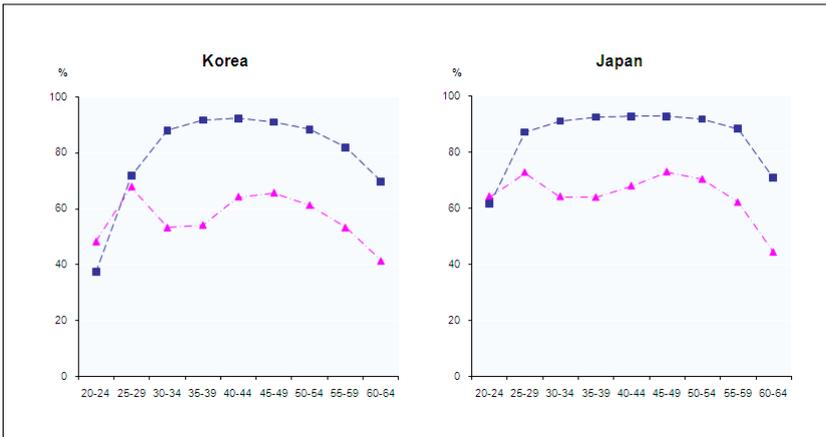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5. 동아시아 국가군

마지막으로 별도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은 전체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가운데 명확한 M자 곡선을 보인다는 점이 공통적인 특성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경우 20대 후반 여성경제활동은

남성을 넘어서는데 비하여 30대에 급격하게 하락하고, 중반기 다시 상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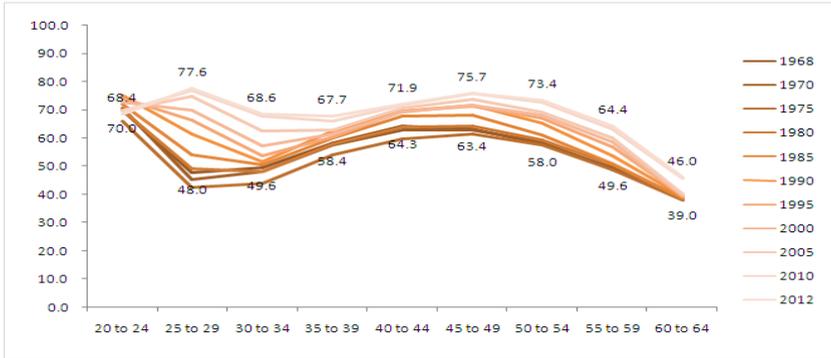
[그림 4-29]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Chart LMF1.4.A: 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2011.

앞서 살펴본 한국의 사례를 제외하고 일본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 역시 한국과 유사하게 첫 번째 정점이 시간에 따라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곡선은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60년대에는 20대 초반에서 가장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다가 20대 후반에 급격하게 떨어졌다면, 2010년 이후에는 20대 후반에서 가장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다가 30대에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약 50여년동안 M자 곡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경향이다.

[그림 4-30] 일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65~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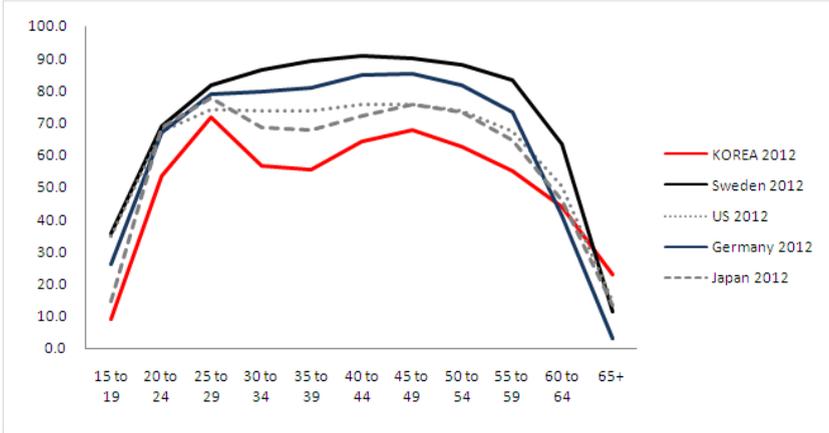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6.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국가의 M자형 곡선 출현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복지국가 유형별로 스웨덴, 미국, 독일 및 일본 등 대표 국가들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았다. 우선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서 M자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 뿐이다. 복지국가 유형과 관계없이 서구 복지국가들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곡선이 역U자 모양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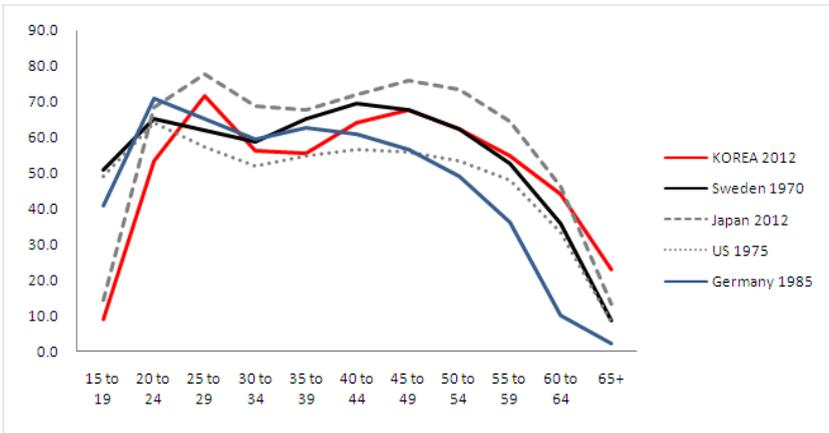
그러나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복지국가 유형에서 M자 곡선이 출현한 시기가 있었다. 사회주의 복지국가와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M자 곡선이 비교적 분명하게 출현하였고,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M자 곡선이 출현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었으나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약한 M자 곡선이 발견되었다. 대표국가 중에서는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독일의 경우 1980년대까지도 M자 곡선이 남아있었으며, 이를 2012년도 한국과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비교적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4-31] 한국과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국가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32] 한국과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국가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M자 곡선 출현시기)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이들 국가들이 한국과 유사한 M자 곡선을 보였던 시기와 이를 탈피하여 역U자 곡선을 보였던 시기의 주요 특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스웨덴

의 경우 여성 경활율이 M자 곡선을 보이던 1970년대에는 남성경활률은 80%를 상회하는 반면 여성경활률은 52.8%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M자 곡선이 사라진 시기에는 남성경활률은 다소 감소한 대신 여성 경활률은 67.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M자 곡선이 나타난 1975년에는 여성경활률은 50%에 미치지 못했지만, M자 곡선이 사라진 1995년에는 58.9%로 경활률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경우, M자 곡선 시기인 1985년 여성 경활률은 41.1%였으나 2000년에는 49.1%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자 곡선이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경우, 여성경활률은 각기 48.2%, 49.9%수준으로, M자 곡선이 개선될 경우 여성 경활률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4-2〉 한국과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국가 주요 경제활동 특성(M자곡선 출현소멸시기)

구분		스웨덴		미국		독일		일본 '12	한국 '12
		'70	'95	'75	'95	'85	'00		
경제 활동 지표	남성15+경활률	80.6	73.7	77.9	75.0	71.2	68.5	70.7	73.3
	여성15+경활률	52.8	67.2	46.3	58.9	41.1	49.1	48.2	49.9
	공식실업률	-	8.8	8.5	5.6	-	8.3	4.4	3.2
부문별 고용	농업부문	8.1	3.1	4.0	2.8	4.6	2.6	3.5	6.2
	제조업부문	38.4	25.9	30.6	24.0	41.3	33.7	24.8	24.5
	서비스업부문	53.5	71.0	65.4	73.2	54.1	63.7	71.7	69.3

자료: OECD Stat, <http://stats.oecd.org/>

한편 M자 시기와 역U자 시기 부문별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M자 곡선이 개선된 시기 서비스고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M자 곡선이 있었던 1970년에는 서비스업부문 고용이 53.5%에 불과했으나, 1995년에는 71.0%에 달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65.4%에서 73.2%로, 독일의 경우에도 54.1%에서 63.7%로 서비스부문의 확대가 M자 곡선의 소멸과 긴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서비스부문 고용은 각기 71.7%, 69.3%로 역U자 곡선이 출현한 시기의 스웨덴,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을 살펴볼 때, 한국에서 서비스산업의 고용증가가 반드시 M자형 곡선의 개선으로 연결될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제5절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 국가들의 여성고용

본 절에서는 M자 곡선이 출현했던 시기와 소멸된 시기의 구체적인 여성의 연령별 고용특성을 살펴본다. 즉 스웨덴, 미국, 독일과 일본, 한국의 원자료 분석을 통해 연령별로 어떤 부문에서 고용이 이루어졌는지, 고용의 질을 어떠한지를 평가한다. 현재 OECD 통계상으로 이와 같은 총량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Luxembourg Income Study의 historical database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¹⁸⁾.

1. 시민주의 국가: 스웨덴

스웨덴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서 M자 곡선이 발견된 1975년 자료와 역U자 곡선으로 전환된 이후 1995년 자료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4~54세 여성고용률은 65.1%에서 83.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8) Luxembourg Income Study는 1980년도부터 8개의 웨이브에 따라 국가별 소득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스웨덴,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에 대해서는 1960~70년도 자료를 historical database에 구축해두고 있다. 그러나 historical database의 자료들은 개인정보변수가 누락되어 있거나 사례수가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보다 고급통계를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다. 더욱이 Luxembourg Income Study는 고용관련 자료가 아니라 소득관련 자료로서, 고용관련 변수에 대한 내용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보다는 기술통계 수준에서 여성 고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비스업 고용비율은 이미 1975년에도 77.5%로 높은 수준이었기에 1995년에는 서비스업 비중은 오히려 다소 감소하였다(71.5%). 공공부문 고용은 1975년에도 이미 높은 48.9% 수준이었고, 1995년에는 이보다 더 증가한 53.2%로 여성고용의 과반수 이상이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직업을 살펴보면 1975년에 비해 관리자, 전문가의 비율이 높아져서 전체의 과반수에 가까운 42.4%에 달하고 있으며 단순노무종사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임금수준을 평가해보면 취업자 평균의 79% 수준에서 85%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부문 임금수준만 분리해보면 84%에서 87%로 개선되었다.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1975년에 비해서 1995년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지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75년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관리자, 전문가 비율이 높았지만 30대 후반에 그 비율이 크게 떨어진 후 점점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5년에는 20대 후반 37.4%에서 관리자, 전문가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50대 초반까지도 40%에 달하는 수준을 유지한다. 임금수준(근로사업소득)을 살펴보다도 1975년에는 연령별로 임금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1995년에는 명확하게 연령별로 임금수준이 증가하여 50대 초반 연령이 되면 여성임금이 평균임금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공부문 고용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1975년에는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공공부문 고용이 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1995년에는 연령증가에 따라 공공부문 고용은 역U자 형으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임금수준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40대 후반에 전체평균임금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1995년 서비스고용은 연령별로 명확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표 4-3〉 스웨덴('75, '95)의 주요 고용 특성(M자곡선 출현소멸시기)

구분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후반	50대 초반	25~54 전체	
스웨덴 '75	여성고용률	68.0	64.4	64.2	69.1	66.0	58.9	65.1	
	부문별 고용	농업	1.1	1.2	1.5	1.6	2.2	3.4	1.7
		제조업	17.7	23.3	23.1	20.9	19.9	20.2	20.8
		서비스	81.2	75.5	75.4	77.5	77.9	76.4	77.5
	공공부문고용		50.6	48.0	47.9	45.9	51.1	49.4	48.9
	직업	관리자, 전문가 (ISCO 1,2)	35.0	36.1	28.8	26.5	25.4	22.0	29.9
		그외 종사자 (ISCO 3~8)	60.6	58.2	63.9	66.9	65.5	65.0	62.9
		단순노무종사자 (ISCO 9)	4.4	5.6	7.3	6.6	9.0	13.0	7.3
	근로·사업 소득 ¹⁾	전체	77.0	81.0	77.0	80.1	81.4	75.2	78.6
		공공부문	78.7	86.1	83.7	87.8	90.6	78.9	83.9
스웨덴 '95	여성고용률	80.8	81.9	84.7	83.0	86.5	85.8	83.8	
	부문별 고용 ²⁾ ('92)	농업	2.0	3.5	2.4	2.1	2.6	2.9	2.5
		제조업	24.3	23.0	30.4	25.0	25.2	28.6	26.0
		서비스	73.7	73.5	67.2	72.9	72.2	68.6	71.5
	공공부문고용		43.0	45.9	57.2	58.1	57.4	55.8	53.2
	직업	관리자, 전문가 (ISCO 1,2)	37.4	40.9	46.8	47.1	42.7	39.5	42.4
		그외 종사자 (ISCO 3~8)	58.1	54.8	49.1	47.1	52.4	57.5	53.2
		단순노무종사자 (ISCO 9)	4.4	4.3	4.1	5.7	4.8	3.1	4.4
	근로·사업 소득 ¹⁾	전체	65.2	73.3	79.1	91.4	99.3	98.9	85.1
		공공부문	66.5	69.1	77.5	94.9	100.0	102.3	87.1

주: 1) 근로·사업소득은 취업자평균 대비 비율

2) 부문별 고용은 '92년 자료

자료: LIS(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 분석, <http://www.lisdatacenter.org/>

요컨대, 스웨덴에서 M자형 곡선의 탈피와 서비스고용의 증가추세는 크게 관련이 없는 반면, 공공부문의 고용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M자형을 탈피한 시기 여성고용은 직업과 임금 측면에서 연령이 높아질수

록 더욱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경력축적의 경로를 보여준다.

2. 자유주의 국가: 미국

Esping-Andersen(1990)이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미국의 여성고용 지표는 크게 나쁘지 않다. M자 곡선이 발견된 1974년 자료와 역U자 곡선으로 전환된 이후 1994년 자료를 비교해보면, 24~54세 여성고용률은 50.6%에서 72.3%로 스웨덴보다는 다소 낮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서비스업 고용비율은 1974년에도 79.2%에서 1994년 81.8%로 더욱 증가하였다. 공공부문 고용은 스웨덴에 비해 크게 낮아 1974년 23.6% 수준이었으며, 1994년에는 20.5%로 그 비율이 오히려 줄었다. 직업을 살펴보면 1974년에 비해 관리자, 전문가의 비율이 높아져 34.3%에 달했는데, 역시 스웨덴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개인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임금수준을 평가해보면 취업자 평균의 70% 수준(1974)에서 85% 수준(1994)으로 개선되었으며, 총량으로 볼 때 스웨덴과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1974년에 비해서 1994년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지위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74년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리자, 전문가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1994년에는 반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리자, 전문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임금수준(근로·사업소득)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뚜렷한데, 1974년에는 20대 후반 이후 40대 초반에 이루기까지 임금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1994년에는 연령별로 임금이 증가하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다. 한편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고용을 뒷받침하는 것은 서비스고용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94년에도 연령별로 서비스고용이 명확히 증가추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전반적으로 낮은 공공부문 비율에도 불구하고

하고, 1994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공부문 고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특히 공공부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국 여성들의 안정적인 경력 축적에 일정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4〉 미국('74, '94)의 주요 고용 특성(M자곡선 출현-소멸시기)

구분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후반	50대 초반	25~54 전체	
미국 '74	여성고용률	50.1	47.4	48.9	55.3	52.1	50.5	50.6	
	부문별 고용	농업	1.5	1.3	3.1	1.4	1.4	1.3	1.6
		제조업	18.0	18.0	16.8	19.7	21.8	21.1	19.2
		서비스	80.5	80.7	80.2	78.9	76.8	77.6	79.2
	공공부문고용	23.4	24.0	24.6	24.3	21.9	22.9	23.6	
	직업	관리자, 전문가 (ISCO 1,2)	25.5	23.5	22.3	20.4	19.7	18.5	21.9
		그외 종사자 (ISCO 3~8)	71.0	70.5	69.2	74.1	71.1	72.8	71.5
		단순노무종사자 (ISCO 9)	3.5	6.0	8.5	5.4	9.2	8.6	6.6
	근로-사업 소득 ¹⁾	전체	72.5	68.5	67.8	66.8	69.8	71.9	69.7
		공공부문	94.2	91.1	78.3	83.8	95.5	93.0	89.7
미국 '94	여성고용률	69.4	70.9	73.3	74.4	75.1	70.0	72.3	
	부문별 고용	농업	0.8	1.4	1.3	1.0	1.2	1.6	1.2
		제조업	15.9	17.6	17.3	17.8	17.0	15.7	17.0
		서비스	83.3	81.1	81.4	81.2	81.8	82.7	81.8
	공공부문고용	15.4	15.1	20.2	23.9	25.8	24.9	20.5	
	직업	관리자, 전문가 (ISCO 1,2)	31.3	32.4	33.4	36.5	38.6	33.5	34.3
		그외 종사자 (ISCO 3~8)	62.7	59.8	59.5	57.3	55.8	58.9	59.0
		단순노무종사자 (ISCO 9)	6.0	7.8	7.1	6.3	5.6	7.6	6.7
	근로-사업 소득 ¹⁾	전체	73.2	81.8	86.9	89.9	91.5	89.0	85.3
		공공부문	83.7	94.3	101.6	108.8	113.7	113.3	104.1

주: 1) 근로사업소득은 취업자평균 대비 비율
 자료: LIS(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 분석, <http://www.lisdatacenter.org/>

미국의 경우에서도 M자형 곡선의 탈피와 서비스고용의 증가추세는 크게 관련이 없는 반면, 공공부문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U자형의 고용패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또한 M자형을 탈피한 시기 여성고용은 직업과 임금 측면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교적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선에서도 공공부문은 임금 축적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보수주의 국가: 독일

한편 독일의 경우는 스웨덴이나 미국처럼 비교적 뚜렷한 M자 곡선을 보여주지 않았다¹⁹⁾. M자형 곡선이 희미하게 출현한 1984년과 그 경향이 비교적 사라진 2000년도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 고용률은 59.8%에서 75.0%로 개선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독일의 경우 탈산업화의 진전이 늦어 서비스업 고용비율은 1984년 69.3%에서 2000년 81.2%로 증가하였다. 공공부문 고용은 미국과 스웨덴의 중간 수준이었는데, 1984년 30.2%에서 2000년 29.6%로 큰 변동이 없었다. 직업을 살펴보면 관리자, 전문가의 비율은 1984년 11.7%에 불과한 수준에서 2000년에는 17.8%까지 증가하였으나, 스웨덴이나 미국의 1990년대 수치와 비교하여도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개인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임금수준을 평가해보더라도 취업자 평균의 70% 수준에서 75%으로 소폭 개선되었고, 스웨덴이나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19) 연도별 자료에 따라 여성 고용률은 M자형 곡선이 아닌 고원형의 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표 4-5〉 독일('84, '00)의 주요 고용 특성(M자곡선 출현·소멸시기)

구분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후반	50대 초반	25~54 전체	
독일 '84	여성고용률	66.2	61.2	58.6	57.6	60.6	53.8	59.8	
	부문별 고용	농업	0.5	0.0	0.6	0.0	2.6	3.5	1.2
		제조업	27.6	32.9	28.6	32.2	28.1	28.2	29.5
		서비스	71.9	67.1	70.8	67.8	69.3	68.3	69.3
	공공부문고용	31.6	33.3	29.1	29.9	30.8	25.6	30.2	
	직업	관리자, 전문가 (ISCO 1,2)	10.2	15.2	13.8	10.7	8.5	12.5	11.7
		그외 종사자 (ISCO 3~8)	85.4	77.5	78.7	76.5	71.9	70.4	77.0
		단순노무종사자 (ISCO 9)	4.4	7.3	7.5	12.8	19.6	17.1	11.2
	근로·사업 소득 ¹⁾	전체	67.8	75.0	71.9	68.8	68.0	69.9	70.1
		공공부문	77.8	93.0	95.8	85.2	88.1	95.4	88.6
독일 '00	여성고용률	69.6	70.5	76.2	81.0	78.3	72.6	75.0	
	부문별 고용	농업	0.6	1.7	1.0	1.0	0.8	0.9	1.0
		제조업	16.4	18.2	19.0	16.9	17.9	17.6	17.8
		서비스	83.0	80.1	79.9	82.0	81.3	81.5	81.2
	공공부문고용	30.1	26.3	27.4	29.3	30.2	35.1	29.6	
	직업	관리자, 전문가 (ISCO 1,2)	16.3	18.2	18.4	16.6	19.0	18.1	17.8
		그외 종사자 (ISCO 3~8)	75.6	74.5	71.5	71.6	71.0	67.7	71.8
		단순노무종사자 (ISCO 9)	8.1	7.4	10.1	11.8	9.9	14.2	10.4
	근로·사업 소득 ¹⁾	전체	63.8	68.1	73.6	75.0	84.2	79.3	74.5
		공공부문	72.9	80.5	84.1	95.8	103.4	104.6	91.8

주: 1) 근로·사업소득은 취업자평균 대비 비율

자료: LIS(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 분석, <http://www.lisdatacenter.org/>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관리자, 전문가 비율은 1984년에는 30대 이상으로 갈수록 다소 떨어지거나 큰 차이가 없었는데, 2000년도 전체적인 수치의 증가는 있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임금수준(근로·사업소득)에서는 1984년에 비

해 2000년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낮다. 2000년 독일에서도 연령별 서비스고용의 증가 혹은 감소추이는 명확하지 않으며, 공공부문 고용 또한 30대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공공부문이 여성고용의 M자 곡선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임금수준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높아지고 있어 경력을 축적하는 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동아시아 국가: 한국과 일본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M자 곡선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자료를 살펴보았다. 한국과 일본은 LIS와 최근에 협력을 맺어, 일본은 2008년, 한국은 2006년 자료만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변수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²⁰⁾.

일본의 경우, 25~54세 여성고용률은 72.0%로 역시 낮은 수준은 아니다. 서비스업 고용도 80%를 상회하여 1990년대 스웨덴과 독일의 수준을 넘고 있다. 다만 공공부문 고용 수준은 크게 낮아 순수 공공부문은 9.1%에 불과하고, 다른 국가들에서 민간으로 분류되는 비영리부문까지 포함하더라도 24.3% 수준에 불과하다. 개인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임금수준을 평가해보면 취업자 평균의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어서 고용의 질은 매우 낮다.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임금수준(근로·사업소득)이 30대에 급격하게 떨어져 50대까지 어떤 구간에서도 20대 후반의 임금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이하게 일본에서는 30대에 공공부문과 서비스고용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데, 이 시기 임금수준은 크게 낮아 공공부문의 고용

20) 한국의 경우 2006년도 자료로 비교적 예전 자료이다. 몇 가지 지표를 2012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하여 점검해 보았을 때, 2006년 자료에서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개선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양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공공부문의 임금수준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2006년)의 경우, 25~54세 여성고용률은 58.5%로 낮은 수준이지만, 여성고용 중 서비스업 비율은 70%를 상회하여 낮지 않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 여성고용에서 관리자, 전문가 비율은 7.2%에 불과한 수준으로 크게 낮다. 특히 관리자, 전문가 비율은 20대 후반 21.3% 수준까지 달하였다가, 30대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경력단절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경력이 축적되지 않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6〉 일본('08)의 주요 고용 특성

구분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후반	50대 초반	25~54 전체	
일본 '08	여성고용률	76.8	65.4	66.2	73.9	77.5	73.1	72.0	
	부문별 고용 ¹⁾	농업	0.0	3.0	0.7	2.0	3.9	1.9	2.0
		제조업	15.4	12.1	14.3	21.3	16.1	17.5	16.5
		서비스	84.6	84.8	85.0	76.7	80.0	80.6	81.5
	공공부문 고용	공공	3.3	5.9	9.9	5.8	14.1	11.8	9.1
		공공+비영리	26.6	24.7	25.4	19.4	26.9	23.6	24.3
	근로·사업 소득 ²⁾	전체	62.7	51.8	51.4	53.3	60.9	59.6	56.6
		공공부문	60.2	89.2	61.7	118.2	101.4	131.8	101.1

주: 1) LIS상 부문별고용변수 'inda1' 변수는 코딩오류가 있어 원변수인 'indb1' 변수로 재코딩하여 분류

2) 근로·사업소득은 취업자평균 대비 비율

자료: LIS(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 분석, <http://www.lisdatacenter.org/>

〈표 4-7〉 한국('06)의 주요 고용 특성

구분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후반	50대 초반	25~54 전체	
한국 '06	여성고용률	62.0	47.0	54.7	65.0	65.5	56.6	58.5	
	부문별 고용	농업	1.1	0.6	2.4	3.4	6.8	13.9	5.0
		제조업	16.7	14.6	21.1	24.7	20.2	21.9	20.7
		서비스	82.2	84.7	76.5	71.9	72.9	64.2	74.2
	직업	관리자, 전문가 (ISCO 1,2)	21.3	13.9	8.8	5.5	3.1	2.1	7.2
		그외 종사자 (ISCO 3~8)	76.4	79.1	77.3	79.8	79.1	75.4	78.2
단순노무종사자 (ISCO 9)		2.2	7.0	13.9	14.7	17.8	22.5	14.6	

자료: LIS(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 분석, <http://www.lisdatacenter.org/>

제6절 소결

본 장에서 분석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으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60세 이상 노년기에서는 한국이 OECD 평균을 상회하여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주(prime) 연령대로 한정할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연령대별로 분명하게 발견되는 M자 곡선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와 같은 M자형 곡선은 OECD 국가들에서 1980년대에는 평균적으로 발견되던 경향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발견되는 특성이다.

둘째, 복지국가 유형별로 OECD 주요 국가들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 참여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복지국가 유형에서 M자 곡선이 출현한 시기가 있었다. 특히 복지국가 유형 중에서는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M자 곡선이 비교적

분명하게 출현하였다. 반면 남유럽국가를 포함한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는 M자 곡선의 출현이 분명하지 않았고,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만 약한 M자 곡선이 발견되고 있었다. 유형별 대표국가 중에서는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독일의 경우 1980년대가 2012년도 한국과 일본의 상황과 비교적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셋째,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국가들에서 M자 곡선시기와 역U자 곡선시기 부문별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M자 곡선이 개선된 시기 서비스고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M자 곡선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서비스부문 고용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역U자곡선이 출현한 시기의 스웨덴,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을 살펴볼 때, 한국에서 서비스산업의 고용증가가 반드시 M자형 곡선의 개선으로 연결될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넷째, 복지국가 유형별로 대표적인 국가들의 M자 곡선 탈피를 전후한 여성고용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M자형 곡선 이전시기 연령이 높아져도 고용지위는 상승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던 반면, 역U자로 전환된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지위가 개선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관리자, 전문가 등 직업과 임금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용지위가 높아지는 경향도 분명하여 안정적인 경력축적의 경로가 발견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스웨덴에는 못 미치지만 직업과 임금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용지위도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었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M자 곡선이 사라진 이후에도 고용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직업이나 임금 측면에서 개선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M자 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경우 고용의 질은 낮은 수준이었고 연령에 따른 고용지위는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 경력축

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M자 곡선 탈피를 전후하여 공공부문은 모든 국가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잘 알려진 것처럼 공공부문은 전체 고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는데, M자 곡선의 탈피는 상당부분 공공부문의 안정적 고용에 기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문은 임신·초기양육기 연령대의 여성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 임금이 증가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한편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도 공공부문은 연령별로 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임금을 높이는 경력축적의 중요한 경로로 나타나고 있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공공부문이 임신·초기양육기 연령대의 여성을 고용하는 비율은 충분하지 않았으나, 공공부문에 취업한 여성들의 임금수준을 연령대별로 높이는 데에는 기여하고 있어 임금 축적에는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이미 탈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주(prime) 연령대 여성고용 중 서비스업 비율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들의 고용지위는 임신·초기 양육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경력단절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경력이 축적되지 않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청된다. 우선 노동공급 지원 측면에서, 임신 및 초기출산에 대한 정책의 고용친화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장년기나 노년기의 재고용, 재취업촉진에 앞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고용연속으로 인한 경력축적의 효과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미 출산초기양육기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은 상당히 확대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니라 어떤 방향의 확대인지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올해 크게 확대된 보육정책의 고용친화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양육수당과 같이 보육시설 수요를 제한하는 정책에서, 국공립보육시설 등 고용지원 인프라의 공급확대 및 관리정책으로 중점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와 같이 임신초기양육기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 여성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시·일용근로자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고임금 여성들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사용율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친화적인 재설계를 통해 출산초기양육기 여성 경력단절을 막는 가교(bridge)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김은지, 2013).

반대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다 좋은 고용성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중심의 서비스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단순히 탈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서비스고용의 증가로 M자 곡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서비스고용비율도 이미 낮지 않은 상황이며, 한국보다 서비스고용이 훨씬 높지만 아직도 M자 곡선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복지국가 유형에서 과거 M자 곡선이 발견되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M자 고용을 개선하는 데에는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공공부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수록 여성고용의 질도 높아지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여성의 연령별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정확히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2011년도를 기준으로 전체고용 중 일반정부 고용²¹⁾은 북구

21) OECD는 공공부문 고용을 일반정부와 공기업 고용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공기업 고용비율은 따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국가들의 경우 30%에 육박하며, OECD는 평균적으로 15.5%인데 비해 일본은 6.7%, 한국은 6.5%에 불과하다(OECD, 2013). 노동수요 지원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성별분리의 위험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전문화된 사회복지고용과 공공부문을 통해 탈산업화 사회로 이행하면서(Esping-Andersen, 1999) M자형 곡선을 탈피하여 여성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스웨덴의 사례는 여성고용증대의 한계에 달해 있는 한국사회에도 함의를 주고 있다.



제5장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제3절 연구자료 및 방법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소결

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론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반세기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래 증가율이 정체되어 2011년 현재 52% 수준에 머물러 있다(1963년 37%).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출산 및 양육부담이 큰 3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률이 높은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황수경, 2002; 금재호·윤자영, 20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정체되어 있지만, 유배우가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뚜렷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지역별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유배우가구중 맞벌이가 43.6% 홑벌이 42.3%, 기타무직가구가 14.1%를 차지해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홑벌이 가구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 맞벌이의 비율이 높은 농림어업 가구를 제외하고 도시가구(18~64세)의 맞벌이 비율을 추정했을 때에도 맞벌이 비율은 1998년 26%에서 2012년에는 49%로 두 배 정도 증가했다.²²⁾ 기혼여성에서 이러한 성장세는 전반적인 고용 증가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괄목할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는 생애주기에 걸친 여성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경제영역에서 양성평등을 확대시키며 가족 내에서도 협상력을 증가시켜 불평등한 성별분

22) 도시자영자가구를 제외한 도시근로자가구에서 맞벌이비율은 1998년 33%에서 47%로 14%p 증가했는데, 자영자가구에서 맞벌이가구의 증가율이 더 크다(통계청 가계조사 각년을 통한 필자 분석결과).

업체제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변화하는 가족구조와 노동시장 상황에서 삶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고 생애과정에서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의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유유상종’ 결혼, 혹은 동류혼(marital homogamy) 현상과 병행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구불평등을 증대시키는 경향과 병행되기도 한다. Fernández and Rogerson(2001)은 고소득자는 고소득배우자와, 저소득자는 저소득배우자와 결혼하는 서열혼(marital sorting)의 증가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Reed and Cancian(2009) 역시 1967년에서 2002년 기간 미국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의 절반이상이 부부소득상관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가구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소득동질혼(김영미·신광영, 2008), 직업동질혼(이성균, 2008)이 진척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험적 분석결과가 제출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까지 시계열 범위를 확장하여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에서 여성배우자의 경제활동, 즉 가구소득에의 기여가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들은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대체로 2005~2006년,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2년까지 시기를 확대하여 그 경향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기혼여성의 소득활동과 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아내소득의 ‘효과’ ‘기여’를 좀 더 엄밀한 방법론적 분석을 통해 접근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이중생계부양 가족의 증가를 경험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기혼여성 노동시장 참여와 불평등의

동향에 대한 연구가 상당정도로 축적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지 못했고 전반적인 불평등 분해과정에서 요소소득의 일환으로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는 아내소득의 '효과'를 분석하는 주요 기법중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방법을 사용해 1998년 이래 아내소득과 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셋째, 불평등 지수와 관련하여 분해방법에 자주 사용되는 지니계수와 분산계수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불평등 지수의 선택에 의해 분해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검토할 것이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개인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면 가구수준의 불평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성의 경제활동증대가 곧바로 가구소득 불평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킨다는 단정적인 평가는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가구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경제적 필요 효과'(necessity) 이론과 '동류혼 효과'(assortative marriage effect)이론으로 나뉘어진다. 경제적 필요효과 이론은 경제활동증가가 주로 저소득층 여성에 의해 주도될 경우에 주목한다. 즉 저소득 층 여성의 경제활동은 저소득층 가구소득의 증대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가구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등화 효과(equalizing effect)는 미국의 초기 연구들(Mincer, 1974; Danziger, 1980; Treas, 1983, Cancian and Reed, 1998)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패턴이 달라져 고학력 여성들이 경력으로서 직업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from jobs to careers") 기혼여성의 노동력 공급 증가는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생산되고 있다(Breen and Salazar, 2011; Esping-Anderen, 2007). 특히 동류혼(assortative marriage) 경향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노동시장 기회구조와 여성의 '선호'(preference)구조가 변화함으로 인해 고소득층 여성배우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Schwartz and Mare, 2005; Aslaksen, Wennemo and Aaberge, 2005; Schwartz, 2010; Hyslop, 2001; Reed and Cancian, 2009). 역사적으로 계층혼은 늘 존재해왔지만 최근 들어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향상, 노동시장 참여행태의 변화, 고소득층 남성배우자의 '소득효과' 감소 등에 의해 또 다른 버전의 동류혼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혼여성 중에서도 경제활동참여를 주도하는 계층이 누구인가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가구소득 불평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외국의 경우 대체로 가계소비지출 필요에 의해 저소득층 아내의 노동공급이 먼저 증가하고, 노동시장 구조 및 복지제도의 차이에 따라 고소득층과 중간소득층 여성들의 노동공급이 뒤를 잇는다. 저소득층 아내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경우 불평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소득층 아내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경우 불평등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내소득과 가구소득 불평등간의 관계는, 아내소득과 남편소득과의 상관성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지만 아내소득 자체의 불평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부부소득상관이 동일하다면 아내소득 불평등이 증가할 경우 가구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해 아내소득과 가구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분해 방법을 통해 규명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

〈표 5-1〉 아내소득과 가구소득불평등의 관계

저자	국가	시기	불평등효과	비고
Cancian, Danziger and Gottschalk(1994)	미국	1968/1978/1988	(-)	with or without women's earnings
Danziger(1980)	미국	1967/1974	(-)	with or without women's earnings
Cancian and Reed(1998)	미국	1979/1989	(-)	모의실험
Reed and Cancian(2001)	미국	1969/1999	(-)	모의실험
Karoly and Burtless(1995)	미국	1959~1989	1980년대 이후(+)	쇼록스 분해
Burtless(1999)	미국	1979/1996	(-)	모의실험
Del Boca and Pasqua (2002)	이탈리아	1977/1998	(-)	모의실험
Pasqua(2008)	ECHP	ECHP Wave VIII (1994~2001)	(-)	모의실험
Mastekaasa and Birkelund(2011)	노르웨이	1974~2004	(-)	모의실험
Harkness(2010, 2013)	LIS (17개국)	LIS waveVI (2003~2005)	(-)	모의실험
Jenkins(1995)	영국	1971/1986	(+)	쇼록스 분해
Cancian and Schoeni(1998)	LIS (10개국)	LIS wave I, II (1979년, 80년대 초중반)	(-)	모의실험
Esping-Andersen (2007)	ECHP (8개국)	1993/2001	us, se, dk (-) uk, ge, fr, it, es(+)	분산계수 차이
Aslaksen et.al(2005)	노르웨이	1973/1997	(+)	쇼록스 분해

소득불평등 분해방법으로는 분산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나 지니계수를 이용한 쇼록스분해와 시뮬레이션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최근 들어서는 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 아내소득과 불평등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분석대상 시기와 방법에 따라 결과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까지 아내의 경제활동은 가구소득 불평등

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말 80년대 초 LIS(Luxembourg Income Study) 비교국가 자료를 이용해 소득불평등을 분석한 Cancian and Schoeni(1998)에 따르면,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내의 소득은 전체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있다. 즉 불평등 심화와 관련하여 노동시장 상황, 젠더레짐, 복지정책 등의 차이에 의해 국가별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 시기 아내의 소득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CHP(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경 유럽국가들에서 아내소득의 가구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분석한 Pasqua(2008)의 연구 역시 아내소득 기여는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sping-Andersen(2007)는 최근 불평등의 동향과 관련하여 노동공급과 소득능력에서 부부유사성에 주목한다. ECHP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아내소득이 불평등을 감소시키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아내소득이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 그에 따르면, 과거 저학력 여성의 노동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때 여성고용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 동류혼(assortative mating) 경향의 강화 및 고소득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는 이러한 경향을 역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연구의 방법론 및 시기에 따라 분석결과가 상이하다. 구인회·임세희(2007)은 1992년에서 2002년까지 가구소득불평등의 추이를 분석하면서 가구소득불평등은 남성에게 의해 주도되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여성내부의 불평등을 감소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철희(2007)역시 1996년과 2000년 기간 가구주 임금불평등의 확대가 가구소득불평등 증가의 70%를 설명하고 배우자의 노동공급변화는 가구소득불평등 상승폭을 줄이는 강력한 상쇄요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장지연·이병희(2013)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과 비교적 최근시

기인 2011년을 비교하면서,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구주 임금불평등을 상쇄하는 효과는 사라졌으며, 고소득 가구주의 배우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불평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논문들이 기혼여성의 소득을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의 한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는 반면 김영미·신광영(2008)의 논문은 경제위기 이후의 불평등의 변화와 기혼여성의 소득 기여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5년 기간 동안 남편의 소득불평등 기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경제활동은 가구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아내소득 불평등이 가구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고 소득동류혼 효과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5-2〉 기혼여성 노동시장 참여와 불평등 추이분석 (한국)

구분	데이터	비교시점	방법	불평등기여
구인회·임세희(2007)	가계조사	1992/2002	모의실험	남성(+)
이철희(2007)	가계조사	1996/2000	MLD분해	(-)
김영미·신광영(2008)	노동패널	1998/2005	쇼록스분해	(+)
장지연·이병희(2013)	가계소비실태, 가계동향조사	1996/2011	MLD분해	(+)

위 연구들은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표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분석시기 뿐 아니라 분석집단, 분석대상소득, 분석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간 수평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90년대말 외환위기 시기 이후의 불평등 변화를 대상으로 하되 비교의 기준년도 및 분포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화를 측정하는 모의실험 방식을 통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할 것이다.

제3절 연구자료 및 방법

1. 연구자료

연구자료는 대규모 자료로서 비교적 장기간 부부소득 변화를 볼 수 있는 가계동향조사(구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했다. 가계동향조사는 1980년대부터 자료가 있지만 1997년까지는 배우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동일조사의 시계열 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가계동향조사 1998년부터 가장 최근 자료인 2012년까지를 분석자료로 선정했다. 아내소득 기여를 분석할 가구는 도시근로자 유배우가구중 여성연령이 25~54세(핵심근로연령)인 가구로 제한했다.

분석에 사용된 소득은 경상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더 한 것이다. 경상소득과 시장소득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노인가구에서는 두개의 차이에 유의한 분석을 진행해야겠지만, 핵심근로연령층이 25~54세 도시가구의 경우 이전소득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남편과 아내의 소득은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구성했으며 부부가 아닌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이전소득은 합산하여 기타소득으로 분석했다. 각 년도 소득은 2010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전환하여 사용했다.

2. 가구소득불평등 분해 방법론적 쟁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가구소득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 쇼록스 분해 방법 (Shorrocks, 1982, 1983; Jenkins, 1995; Karoly and Burtless, 1995; Aslaksen et al. 2005)

둘째, 모의실험 방법 (Cancian and Reed, 1998; Del Boca and Pasqua, 2003)

첫번째 방식인 쇼록스의 소득원천별 지니분해에 근거한 것으로, 아래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G_f = S_h R_h G_h + S_w R_w G_w + S_r R_r G_r \quad (\text{eq.1})$$

(Gk: 해당소득 지니계수, Sk: 해당소득의 비중, Rk: 순위상관지니계수
(f: 가구 h: 남편 w: 아내, r: 기타))

분해에서 소득원천별 기여를 분석할 때, $S_k R_k G_k$ 를 k 소득의 기여도로 분석하는 경우가 관행화되어 있는데, 이는 각 소득원천의 ‘기여’(contribution)를 왜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방정식에서 아내소득이 없는 가상적 상황을 가정하면, 지니분해방식의 아내소득의 불평등기여는 0 ($R_w = G_w = S_w R_w G_w = 0$)이기 때문에 아내소득은 가족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내소득을 제외시켰을 때 남은 ($S_h R_h G_h + S_r R_r G_r$)은 아내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 G_{f-w} 와 일치하지 않는다. 지니계수(나 분산계수의) 경우 전체소득, 소득평균의 영향을 받고 해당소득원천과 전체소득간의 순위상관(rank order correlation)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아내소득을 제외할 경우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변화한다. 따라서 아내소득기여를 $S_k R_k G_k$ 에서 구하는 방식은 오류를 낳게 된다(Cancian and Reed, 1999; Reed and Cancian, 2001; Mastekaasa and Birklund, 2011). 23)

분산계수(Coefficient of Variance)를 통한 분해 방법 역시 전체소득

에서 각 소득이 기여하는 바를 분해할 때 유의점이 있다. 분산계수 분해에서 k 소득의 분산계수가 커지더라도 k 소득의 비중과 부부상관계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k 소득의 불평등 증가가 반드시 전체불평등의 증가를 낳지는 않는다.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 가구소득이 남편과 아내의 소득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살펴보자.

$$CV_f^2 = (1 - S)^2 \cdot CV_h^2 + S^2 \cdot CV_w^2 + 2 \cdot \rho \cdot (1 - S) \cdot S \cdot CV_h \cdot CV_w$$

(CV_k : 해당소득 분산계수 S: 아내소득의 비중 ρ : 상관계수 (f: 가구 h: 남편 w: 아내))

이 경우 아내소득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세가지 요인의 변동에 의존하는데 (1) 아내소득불평등 (2) 아내소득 비중 (3) 부부소득의 상관인 그것이다. 각 요소의 한계효과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Mastekaasa & Birkelund, 2011: 223)

$$\frac{\delta(CV_f^2)}{\delta(CV_w)} = 2 \cdot S^2 \cdot CV_w + 2 \cdot \rho \cdot (1 - S) \cdot S \cdot CV_h$$

$$\frac{\delta(CV_f^2)}{\delta(S)} = 2 \cdot CV_h^2 \cdot (S - 1) + 2 \cdot CV_w^2 \cdot S + 2 \cdot \rho \cdot CV_h \cdot CV_w \cdot (1 - 2 \cdot S)$$

$$\frac{\delta(CV_f^2)}{\delta(\rho)} = 2 \cdot (1 - S) \cdot S \cdot CV_h \cdot CV_w$$

앞에서 보이듯이 다른 요인이 동일할 때 부부소득상관(ρ)이 증가할수록 가구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지만, 아내소득불평등(CV_w)의 증가는 부부

23) Shorrocks(1982:209) 역시 요소소득 분해의 각 항목들이 일상적인 의미에서 요소소득 k가 전체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쇼록스 분해의 직관적 해석의 문제점과 관련된 비판과 쇼록스의 대응 대해서는 Shorrocks(1999)을 참고하시오.

소득상관(ρ)이 0이상일 경우에는 가구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지만 (-)값일 경우에는 가구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아내소득의 비중(S)의 영향은 더 복잡한데 편미분식만으로는 그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두 시점 사이에 각 소득원천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는 동태적 분해 방식 역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기존 지니분해에서는 특정 소득원천(h, w, r)의 기여도 변화가 다른 소득원천의 기여도 변화보다 크다면 해당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한다. Cancian and Reed(1998)은 아내소득의 ‘효과’(effect, impact), ‘기여’(contribution)이라고 불리는 분석에서 선형적으로 명확한 개념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비교는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데, 기존 분해방식은 비교의 준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정 소득원천의 기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원천을 일정하게 유지(통제)한 상태에서 해당 소득원천의 변화가 불평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필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분해방식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관찰년도의 다른 모든 소득 요인이 동일하다고 할 때 준거년도의 k 소득원천의 준거 분포(reference distribution)를 적용한 불평등지수는 준거년도와 관찰년도 사이 소득원천 k 의 ‘영향’ 및 ‘기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한 방식이 모의실험(simulation) 방식이다.

모의실험 방식은 여러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가정을 적용해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8년과 2012년을 비교할 경우 1998년의 다른 요소 소득과 상관은 그대로 있으면서 아내의 소득상황(소득수준과 분포)만 변화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산술적 재배열이 필요하다. 먼저 1998년과 2012년 아내소득에 순위를 부여하고, 2012년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여성에게 1998년 아내소득값을 할당하여 2012년의 아내소득분포를 1998년의 아내소득분포와 동일하게 만든다. 이렇게

반사실적 가정을 통해 구해진 소득불평등 지수를 2012년 원래 불평등지수와 비교했을 때 반사실적 가정에 의한 분포보다 관측분포가 더 평등하다면 아내소득은 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²⁴⁾ 반사실적 실험은 아내소득을 0이나 상수로 고정하거나 아내소득뿐 아니라 부부소득상관을 통제하는 등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아내소득을 0으로 고정시킨다면 해당년도 아내소득에 의한 불평등의 변화를 즉 '기여' 혹은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내소득상황의 변화가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Reed and Cancian(2001)의 모의실험 방식을 적용하되 1998년과 2012년을 준거년도로 삼아 각각 불평등지수의 변화를 계산하고 다음으로 아내소득이 0인 상황을 가정해 불평등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몇 개의 가설적 상황을 대상으로 분산계수를 이용해 아내소득기여와 가구소득불평등의 관계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면 아래와 같다(그림 5-1 참조). 유배우가구에서 가구불평등의 변화는 남편소득분포의 불평등, 아내소득분포의 불평등, 여성소득이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부부소득 상관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남편소득분포 불평등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가구소득 불평등의 관계는 아내 소득분포가 불평등할수록, 부부소득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이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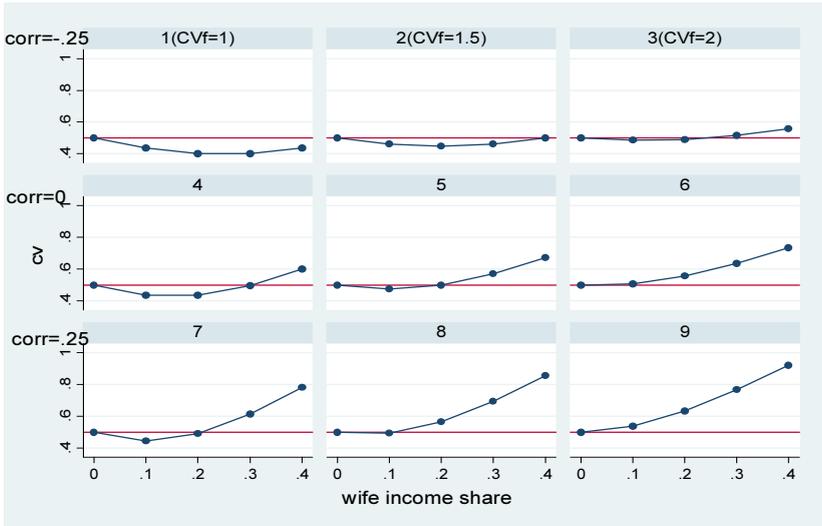
[그림 5-1]은 남편소득분산계수(CV_m)를 0.5로 고정시키고, 아내소득 비중, 아내 소득분산, 부부소득상관을 변동시켜 전체소득 분산계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부부상관은 -.25, 0, .25로 세팅했고, 아내소득불평등(CV_f)는 1, 1.5, 2 값을 부여했다.²⁵⁾ 이 조합에서 아내소득비중

24) 이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ancian and Reed(1999, 1999), Reed and Cancian(2001)를 참조하시오.

25) Harkness(2010)의 LIS데이터 분석(18~59세 유배우가구분석)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의 부부

은 0에서 0.4로 변동하도록 했다.

[그림 5-1] 아내소득과 가구소득불평등의 관계



첫번째 줄은 부부소득상관이 -0.25 인 경우(그래프 1, 2, 3)이다. 부부소득상관이 낮을 경우 아내소득불평등이 증가하더라도 아내소득의 불평등 기여는 미미하다. 아내소득기여가 40% 수준까지 올라가야 가구소득불평등이 증가한다. 아내소득 40%인 경우는 이 조합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운데, 아내소득 분산계수가 높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하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서 다수의 무소득자에 의해 분산이 커져야하

소득상관은 $-0.1 \sim 0.3$ 사이 값을 갖고 아내소득CV는 $0.6 \sim 1.6$ 사이에 분포한다. Pasqua(2008)의 분석에 따르면, 2001년 전후 유럽에서 아내소득(연령 24~56세) 비중이 가구소득의 30%를 상회하는 국가는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구국가에 국한되며, 다른 유럽국가들은 20% 수준에 있다. 부부소득상관은 -0.17 (독일)~ -0.25 (스웨덴) 범위에 있고 아내소득불평등지수(CV)는 $0.7 \sim 2.0$ 범위에 있었는데 그리스가 2.0으로 가장 높고 덴마크가 0.7로 가장 낮다. 아내소득 분산계수가 2를 넘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소득은 높을 경우에 발생한다.

기 때문이다. 전업주부가 많은 나라에서 소득기여가 40% 수준에까지 도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첫 번째 출처럼 부부소득상관이 매우 낮은 경우는 아내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더라도 전체 불평등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줄은 부부소득상관이 0인 경우(그래프 4,5,6), 즉 적어도 소득에서 유유상종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내의 소득비중이 30%이상 이 되거나, CV가 2인 경우처럼 아내소득 내부에서 불평등이 매우 높아져야 아내소득이 불평등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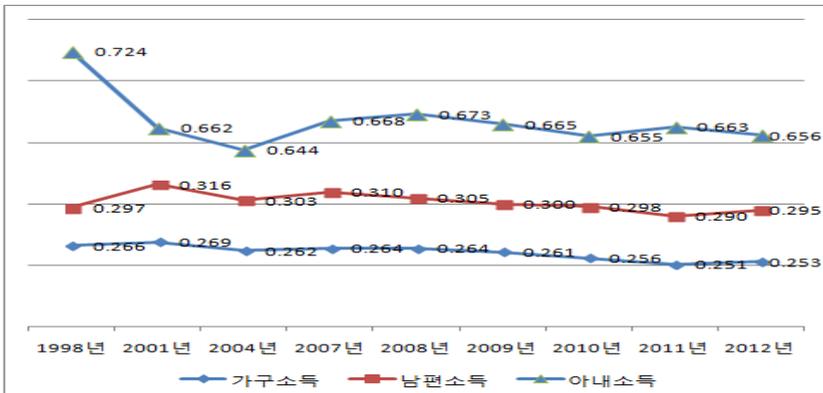
세 번째 줄의 그래프(7, 8, 9)는 부부소득상관(동류혼)이 매우 높아졌을 때를 가정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아내소득 비중이 낮은 지점에서부터 불평등이 증가하는 추이를 읽을 수 있다. 높은 부부소득상관은 고도로 계층혼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닌 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야 가능한 조건이다. 서구 국가에서도 부부소득 상관이 높은 국가는 북구국가들이다(Pasqua, 2008: 175). 우리나라 부부소득상관은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같이 음의 상관관을 보이거나 0에 가깝기 때문에 여성의 소득상황의 변화와 가구소득 불평등의 조합은 그래프 1-4의 범위에서 작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남성소득 CV는 0.5 보다 높기 때문에 아내의 소득상황이 가구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4절 분석결과

1. 불평등지표의 변화(1998년~2012년)

1998년 이후 도시근로자 유배우가구의 지니계수는 2001년 약간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5-2 참조). 남편소득 지니계수의 증감경향은 가구소득지니계수의 증감경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남편소득이 가구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남편소득의 불평등 경향과 가구소득 불평등 경향은 유사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남편소득 지니계수 역시 2001년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내소득 지니계수는 경제위기시기인 1998년 가장 높았고 2004년까지 계속 낮아졌다가 증가추세로 돌아섰고, 20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약간 감소하고 있다.²⁶⁾

[그림 5-2] 도시근로자 유배우가구에서 경상소득, 남편소득, 아내소득 지니계수 변화 (1998~2012)



26) 동기간 도시가구의 지니계수가 전반적으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때, 위 소득불평등 경향은 분석대상의 인구학적 특징(도시가구의 청장년 유배우가구)과 관련이 있다.

부부소득 상관계수는 1998년 이후 전 기간에 걸쳐 0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표 5-3 참조).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부부소득 상관계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증가와 부부소득 상관의 증가(flocking together 효과)에 주목하는 연구들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²⁷⁾ 남편소득의 가구소득 상관은 전 기간에 걸쳐 0.8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3〉 부부소득 상관, 남편/아내/가구소득 상관의 변화(1998~2012)

구분	1998년	2001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2년
부부소득상관	-0.08	-0.03	0.00	-0.02	-0.06	-0.10
남편-가구소득	0.80	0.79	0.81	0.81	0.81	0.81
아내-가구소득	0.42	0.45	0.48	0.49	0.45	0.42

2. 아내소득의 가구소득불평등 기여: 모의실험

1998년 아내소득분포가 가장 불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시점 이후 아내소득분포의 개선이 가구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세 가지 반사실적(counter-factual) 실험을 통해 분석했다. 각 년도의 왼쪽 막대는 해당년도 (원래) 관측지니계수이며, 오른쪽 막대는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아내소득상황을 대입했을 때의 지니계수이다. 실험 후 오른쪽 막대가 높다는 것은 아내소득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불평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²⁸⁾

27) 최근 부부소득상관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이근태·고가영(2013)의 발견과도 일치한다. 이들에 따르면 1990년대말 이후 부부소득상관이 증가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부소득 상관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28) 1998년이 경제위기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기이전과 비교할 수 있도록 1996년을 준거자료로 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부표에 제시되어 있다. 가계동향조사 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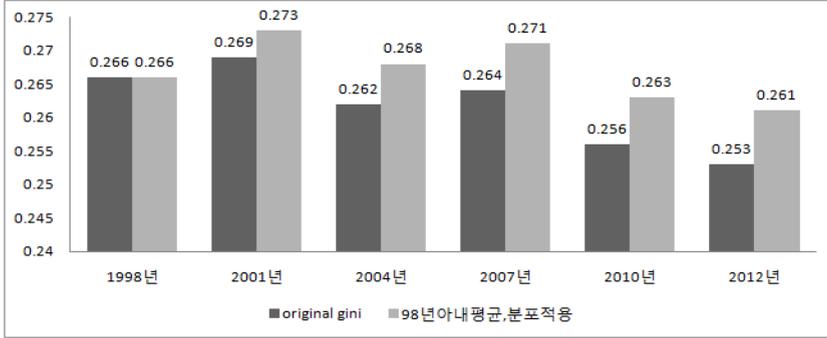
첫째, 다른 모든 소득요인들이 동일하다고 할 때, 1998년의 평균(2010년 불변가격)과 소득분포를 대입했을 경우 모든 연도에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했으며 이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 커진다. 1998년 이래 아내 소득의 평균 및 소득분포 개선이 가구소득불평등(경상소득기준 지니계수로 측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3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두 번째 상황, 2012년 아내평균과 분포를 대입하여 모의실험을 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그림 5-4 참조). 즉 최근 연도인 2012년 아내평균과 분포를 대입했을 때 1998년과 1998년 2001년 2007년의 경우 지니계수가 감소했으며 2004년과 2010년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의 소득기여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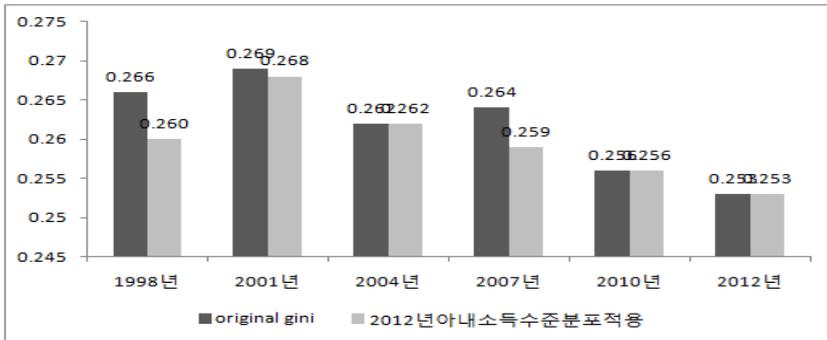
세 번째 모의실험은 아내소득이 0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즉 각 연도에서 아내의 소득이 없는 가상적 상황을 적용했을 때 원래의 소득불평등으로부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그림 5-5]에서 나타나듯이 아내소득의 '기여'가 없었다면 모든 연도에서 가구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동일한 변수가 없어 분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1996년 자료는 가구소비실태를 사용하였다. 부표의 분석은 자영업자 가구를 포함한 것인데, 위기이전 자영업자 가구를 포함해 분석을 확장하더라도 아내소득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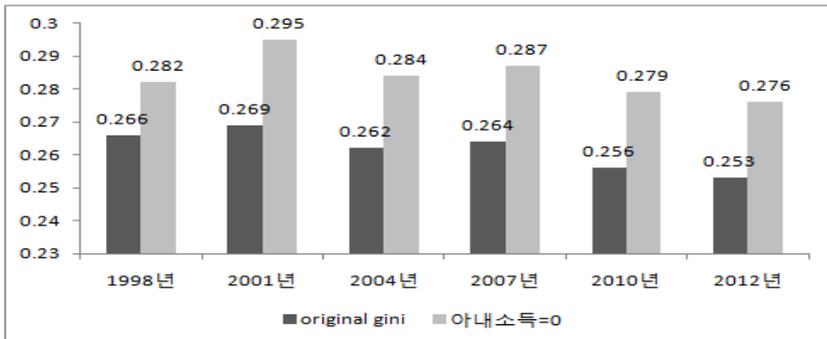
[그림 5-3] 아내소득변화시 지니변화(1998년 아내 평균과 분포로 통제)



[그림 5-4] 아내소득변화시 지니변화(2012년 아내평균과 분포로 통제)



[그림 5-5] 아내소득변화시 지니계수 변화 (아내소득=0)



지니계수와 더불어 대표적인 불평등지수인 분산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 지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모의실험을 수행했을 때, 지니계수와 유사한 불평등의 변화추이를 볼 수 있다(표 5-4 참조). 상대적으로 아내소득의 불평등정도가 높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았던 1998년의 아내소득평균과 분포를 대입했을 경우 모든 연도에서 불평등이 증가했으며 반대로 상대적으로 여성소득의 불평등도가 낮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2012년의 아내소득평균과 분포를 대입했을 때 모든 연도에서 불평등이 감소했다. 여성소득이 0인 경우를 가정하여 분산계수를 분석했을 때 역시 모든 연도에서 불평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998년부터 각 연도 아내소득에 의한 불평등 완화효과를 분석했을 때 모든 연도에서 아내소득이 없었을 경우 불평등이 증가했다. 아내소득에 의해 기여분을 분석했을 때 최근으로 올수록 아내소득의 평등화 효과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4〉 여성소득 변화시 분산계수 변화 모의실험 (CV)

구분	1998년	2001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2년
실제 CV	0.502	0.513	0.491	0.505	0.480	0.482
1998년분포대입시 CV	—	0.515	0.496	0.510	0.492	0.498
2012년 분포대입시 CV	0.497	0.508	0.489	0.491	0.479	—
아내소득을 제외했을 경우						
아내소득=0일 때 CV	0.536	0.549	0.520	0.539	0.523	0.534
아내소득기여(%)	6.8	7.0	5.9	6.7	9.0	10.1

3. 아내소득의 평등화 효과 요인

최근 들어 소위 동류혼, 유유상종혼 경향의 강화가 가구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했지만, 1998년 이후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최근까지 아내소득의 변동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내소득의 평등화 효과와 관련하여 관련 요인들을 차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1998년 이후 아내들의 취업률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정체되어 있지만, 도시근로자가구의 기혼여성노동자의 경우 1998년이래 노동공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난다. 1998년 36%에 불과했던 취업률은 2012년 52.6%로 증가했다(표 5-5 참조). 여성경제활동참여가 낮은 국가에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적 변화는 여성내부의 소득불평등을 줄이고(0값이 감소) 여성의 소득비중을 높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Pasqua, 2008) 즉 여성취업률이 낮은 국가에서 여성취업의 증가는 가구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고용효과’(employment effect)를 갖는다.

〈표 5-5〉 연도별 아내(25~54세) 취업률 변화(25~54세)

(단위: %)

연도	1998	2001	2004	2007	2010	2012
고용률	36.4	42.3	47.5	48.8	52.6	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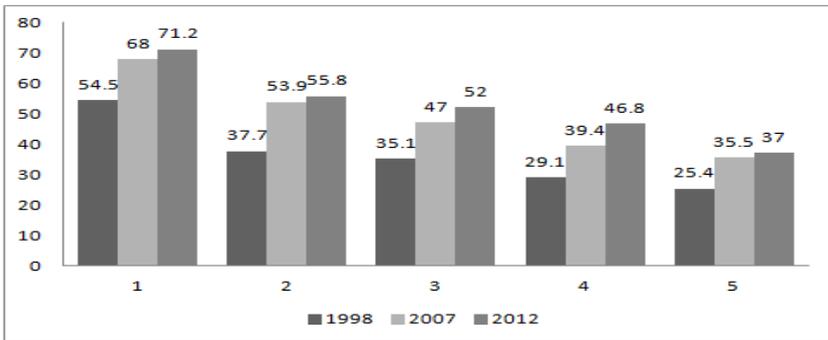
유배우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국가들에서 아내들의 고용증대는 일차적으로 아내들 내부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업주부가 많을수록 아내 소득의 분산은 커질 수밖에 없고 아내소득 내부의 불평등은 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아내들의 고용증대는 아내소득 분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고용효과를 통해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물론 전업주부로 있던 아내들이 고임금소득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면 아내소득 불평등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어렵다. 젊은 코호트들이 앞선 코호트들에 비해 대거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아내소득 불평등이 변화하겠지만 이들이 고소득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어떤 소득계층의 여성들이 노동공급을 늘렸는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노동공급이 증가할수록 여성내부의 불평등도는 감소하고, 고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할수록 여성내부의 불평등도는 증가한다. 1998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남편의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아내의 고용률이 높고 전반적인 경제활동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은 전 기간에 걸쳐 관철되고 있다(그림 5-6 참조). 특히,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의 경우 2012년 71%의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9)

[그림 5-6] 남편소득분위별 아내고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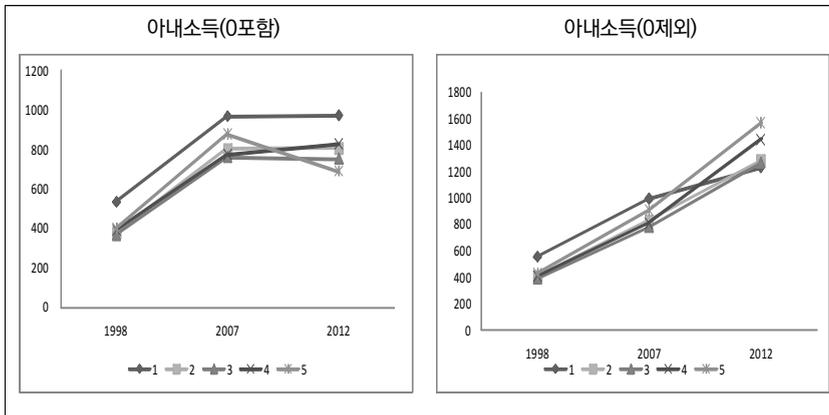


29) 외환위기이후 기혼가구의 노동공급 변화요인을 분석한 윤자영(2012)에 따르면, 1998년에서 2006년 기간 저임금과 고임금 남편을 둔 아내의 고용률은 증가했지만 중위임금 남편을 둔 아내의 고용률은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류혼 효과를 우려하는 김영미·신광영(2008)의 분석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일차적으로 분석대상 및 시기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25~54세 연령층인데 최근 장년기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부부들을 포함한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셋째, 동류혼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남편소득 분위별로 아내 소득 수준을 살펴보았다. 남편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아내소득수준이 높다면 소득 동류혼이 관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7]에서 나타나듯이, 남편 소득 5분위별로 아내소득평균은 모든 시기에 걸쳐 소득이 가장 낮은 분위인 1분위에서 가장 높다(좌측표). 남편소득 5분위 여성의 경우 2007년 소득이 크게 증가했으나 2012년 다시 감소하였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아내를 제외했을 때(우측표) 1998년에는 1분위 소득이 높았으나 2012년 5분위 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나 남성 고소득분위의 여성들에서 노동시장 참가율은 낮지만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여성들의 경우 소득은 현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분위 여성들의 소득평균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그림 5-7] 남편소득 분위별 아내소득 변화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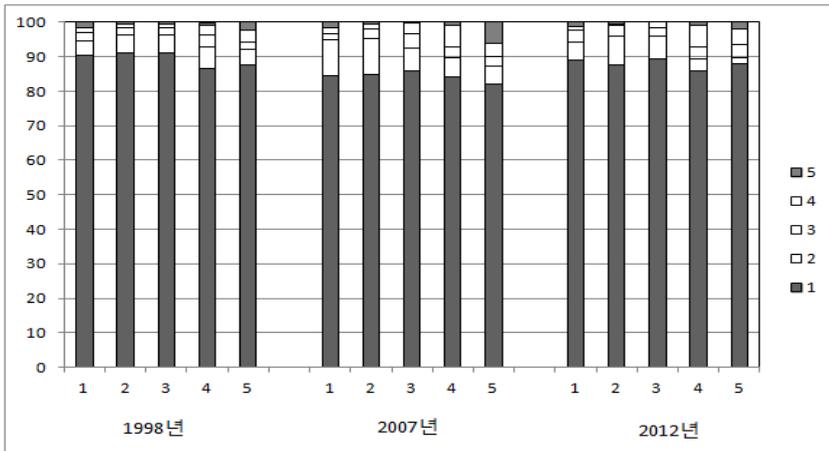


주: 소득은 2010년 불변가격 기준

[그림 5-8]은 남편소득분위별 아내의 소득분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아내소득분위를 가르는 소득기준은 남편소득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중산층 이상 즉 4, 5분위 남성의 경우 아내의 소득분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이 많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2007년 남성 5분위에서 상위분위 여성비중이 증가했음이 뚜렷이 보이지만, 2012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고소득 배우자를 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동류혼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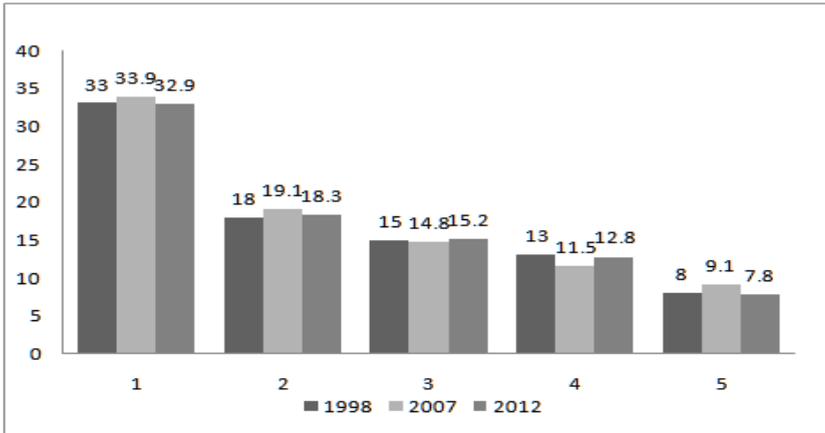
[그림 5-8] 남편소득분위 기준 아내소득분위 분포



넷째, 가구소득불평등은 아내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1998년에 비해 아내 취업률이 높아졌지만, 남편소득분위별 아내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가구경상소득)을 살펴보면 분위별 모든 분위에서 큰 변화가 없고, 남성 1분위에서 비중이 높고 남성 5분위에서 비중이 낮아 분위별 순위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그림 5-9 참조). 또,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를 제외하면 아내소득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처럼 아내소득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아내소득불평등에 의한 가구소득불평등 기여는 제한적이다.

[그림 5-9] 남편소득분위별 아내소득 비중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가구 소득기여에서 남녀의 동등기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이중경력맞벌이(dual-career) 사회라 할 수 있는 스웨덴의 경우와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지만 아내 내부의 소득격차가 크고 아내소득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1.5 생계부양자 모델의 네덜란드를 대조집단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30)

30)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실제 지표는 Harkness(2013)의 계산에 의한 것이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분석대상 연령은 여성 18~59세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령집단인 25~54세와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비교는 어렵다. 위 표의 분산계수에서 나타나듯이 스웨덴의 실제 불평등 지표가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표의 내용을 단서 없이 국가 비교 결과로 해석할 수 없다. 하지만 전반적인 불평등 양상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뮬레이션의 대상으로 삼았다. 좀 더 엄밀한 비교는 LIS의 원자료 분석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표 5-6) 스웨덴, 네덜란드의 여성소득상황을 적용한 분산계수 모의실험

구분		아내 소득 비중	남편 소득 비중	아내 CV	남편 CV	부부 상관	부부 소득 CV	CV 변화 (%)
실제 지표	스웨덴(2005)	0.41	0.59	0.747	0.598	0.264	0.525	
	네덜란드(2004)	0.26	0.74	1.079	0.720	0.051	0.615	
	한국(2012)	0.19	0.81	1.345	0.569	-0.096	0.505	
스웨덴 상황 가정	아내소득비중(①)	0.41	0.59				0.645	27.8
	아내CV(②)			0.747			0.468	-7.3
	아내소득비중+CV(③)	0.41	0.59	0.747			0.432	-14.5
네덜 란드 상황 가정	아내소득비중(④)	0.26	0.74				0.521	3.1
	아내CV(⑤)			1.079			0.486	-3.8
	아내소득비중+CV(⑥)	0.26	0.74	1.079			0.483	-4.4

주: 1) CV변화: (시뮬레이션CV-실제CV)/실제CV*100

2) 음영표시된 칸은 한국(2012) 지표 그대로 사용

시뮬레이션은 세 가지 상황을 가정했는데, 첫째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아내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바뀐 경우 둘째,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아내소득분산계수(CV)만 변화한 경우 셋째, 아내소득비중과 분산이 모두 변화한 경우가 그것이다. 먼저 스웨덴처럼 아내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를 가정했을 때(①), 불평등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아내소득의 불평등지수(CV)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아내소득비중만 증가할 경우 불평등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스웨덴은 아내소득비중은 높지만 노동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아내들 내부의 소득격차는 적다. 이와 같은 상황 ②를 대입하면 불평등은 현재보다 7.3% 감소한다. 노동시장과 복지제도가 여성에게 친화적인 스웨덴의 상황은 아내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노동시장 임금불평등은 낮다. 아내소득비중과 CV를 모두 스웨덴 형으로 대입할 경우(③), 우리나라는 현재보다 불평등이 14.5% 감소한다.

네덜란드는 스웨덴보다 아내의 소득기여 수준이 낮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소득기여가 높다. 네덜란드의 아내소득비중을 가정했을 경우(④) 불평등은 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덜란드의 아내소득 불평등 정도는 스웨덴보다 높지만 우리나라보다 낮는데 네덜란드의 아내CV를 대입하면 (⑤) 불평등은 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아내소득상황을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대입했을 때(⑥) 불평등은 4.4%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내소득비중보다는 아내소득불평등 수준이 불평등 감소에 더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제5절 소결

최근의 불평등 동향과 관련하여 고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가구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가구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고소득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여성내부의 소득격차를 증가시키고 동류혼 경향에 의해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고소득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변화'가 소득 불평등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 경제학자는 어떤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가구불평등의 증가는 우려할만한 것이지만 어떤 요인이 이를 추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이후의 정책적 판단과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이래 고소득층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고소득층 배

우자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2년 도시근로자가구에서 남편소득 5분위의 아내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을 훨씬 밑도는 37%에 불과했고 이들의 소득이 가구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고소득배우자,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동류혼 효과에 대한 우려는 아직 시기상조일 뿐이다.

부부소득상관이 높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수준이 일정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낮다. 우리나라 부부소득상관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보다 훨씬 낮으며 전업주부가 많은 독일이나 네덜란드에 가깝다.

소득동류혼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경우 이 요소가 가구불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반복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의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구소득 불평등과 관련하여 동류혼의 지배적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더욱이 노동시장이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유배우 여성이 경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는 기업내 문화와 관행,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소득 동류혼 효과에 대한 우려는 과잉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가구소득 불평등은 여전히 남편소득 불평등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아내소득이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구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해왔다. 노동공급의 전반적인 증가로 인한 '고용효과'와 저소득층 아내의 노동공급으로 인한 평등효과가 주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아내의 노동공급은 이미 70% 수준에 도달해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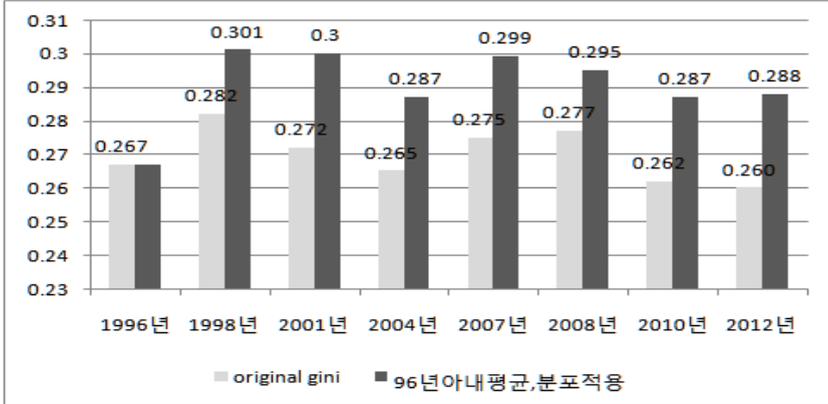
급하는 방식은 불평등과 관련하여 큰 개선효과가 없을 것이다. 저소득층 아내의 노동공급을 통해 가구소득 불평등 완화는 저소득층 아내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이 이미 높기 때문에 시효만료되었다는 진단(장지연·이병희, 2013)도 있다. 저소득층 아내들이 취업해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등 노동시장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불평등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간층 이상의 아내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중간층 아내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중간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과 가구 수준의 불평등에 대한 고려와 독립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남녀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추구해야할 사회적 목표이다. 거시적 수준에서의 불평등, 즉, 중고소득층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된 소득양극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임금구조에서의 불평등을 축소시키고 조세 및 사회적 이전 등의 재분배적 사회정책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다.

이 연구는 유배우가구를 대상으로, 특히 핵심근로연령층에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아내소득과 가구소득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근로연령층의 도시 유배우가구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구이며 단독가구나 한부모가족에 비해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가족자원이 있다. 최근 가족구조의 불안정성 증가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는 불평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앞으로 노동시장구조뿐 아니라 단독가구나 한부모 가족 등 가족구조의 변화가 불평등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성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는 상이한 조합을 드러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구학적 분포를 고려한 분석은 추후과제로 남겨둔다.

〈참고〉 1996년 기준 아내소득 기여 시뮬레이션 결과

〈부표 1〉 1996년 아내소득상황 대입시 지니계수 변화



대상: 도시지역 유배우 여성 25~54세 가구.

자료: 1996년 가계소비실태조사, 이후연도는 가계동향조사 (자영업자가구 포함)

〈부표 2〉 1996년 아내소득상황 대입시 CV 변화

구분	실제 CV	96년여성소득 대입시 CV	아내소득의 평등화효과(%)
1996년	0.634	—	—
1998년	0.536	0.576	7.5
2001년	0.523	0.559	6.9
2004년	0.500	0.535	7.0
2007년	0.527	0.564	7.0
2010년	0.497	0.537	8.0
2012년	0.495	0.554	11.9

대상: 도시지역 유배우 여성 25~54세 가구.

자료: 1996년 가계소비실태조사, 이후연도는 가계동향조사 (자영업자가구 포함)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6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제1절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만 15세 이상)에 있어 50%의 벽은 참으로 높다. 2000년대 후반(2005~2008년) 잠시 50% 벽을 넘을서는갔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이후 다시 49%대로 내려앉았다. 물론 이러한 정체는 인구고령화에서 큰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실제로 연령을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2011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61.8%를 크게 밑도는 54.9% 수준이다. 게다가 여성의 합계출산율도 1.3명으로 OECD에서 최하위에 속한다. 일면 역설적인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여성 경제활동실태와 경제활동 참가 요인 및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봄으로써 여성 경제활동을 고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명확한 'M자형' 곡선 형태를 보이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동일한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일본 역시 'M자형'을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그 골이 깊지 않으며,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에서도 1980년대 이전 부분적으로 M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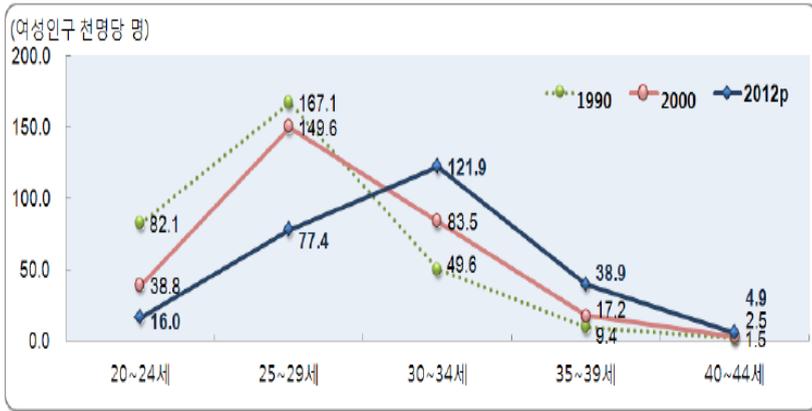
형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역U자형'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해 M자형의 골이 약해졌고 기존의 25~29세 구간에서 발생했던 골이 30~34세 구간으로 이동했다(그림 2-4 참조). 최근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평탄구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25~29세 구간에 깊어졌던 골이 30~34세 구간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2년에는 30~34세 구간에 발생한 골이 35~39세까지 연장되다가 40~44세 구간에 가서야 비로소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M자형의 발생은 물론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장했다가 이후 다시 재진입하는 이른바 여성의 '경력단절'을 상징한다. 골의 깊이가 얕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퇴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을 하고도 경력단절 없이 일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노동시장 상황이나 보육 현실이 개선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출산율 자체가 매우 낮은 현실 또한 이러한 '퇴장의 감소'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보면, M자형의 약화가 반드시 여성에 우호적인 방식으로 노동시장이 변화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한편, 평탄구간이 발생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기존에 25~29세에 집중되었던 결혼과 출산 시기가 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골의 깊이가 얕아진 것은 퇴장이 줄어들었다기보다 기간이 분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이 뒤로 이연되었을 뿐 출산율 분포도의 형태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번째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장한 여성의 경우 가정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퇴장하는 여성의 수는 줄어들

었지만 대신 퇴장한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진입 또한 그만큼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그림 6-1] 연령별 출산율 분포



자료: 통계청(2013)

둘째, 여성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산업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며, 특히 최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급감하고 대신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총량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여성경제활동참가의 이면에는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었다³¹⁾. 무엇보다도 기존에는 맞벌이라고는 하지만 남성배우자의 자영업에 함께 종사하는 여성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여성의 ‘임금근로자

31) 매우 안정적인 남성 노동시장에 비해 여성 노동시장은 지난 20여년 동안 격변기를 거쳤다는 것 자체가 남성과 여성 간 노동시장 분절성(segregation)이 존재한다는 것을 대변하는 결과일 수 있다.

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 배우자의 일자리 안정성이 줄어들고 자영업의 영락(榮落)이 매우 심한³²⁾ 최근의 현실에서, 여성이 가구경제의 안정을 위해 독립적인 별이를 모색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맞물려 최근 사회서비스-특히 돌봄서비스-일자리가 크게 확대되면서 무급가족종사자였던 여성의 일부와 경력단절 후 재진입한 여성들의 상당수를 이 부문에서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³³⁾.

그러나 최근까지도 한국은 서구 국가들이 'M자형'에서 '역U자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특징, 즉 관리자전문가의 비율 상승과 공공부문 고용의 증가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구조는 관리자전문가의 비율은 2006년 7.2%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문가의 비중은 떨어지고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경력단절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경력이 축적되지 않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2011년 기준으로 전체고용 중 일반정부 고용은 북구 국가들의 경우 30%에 육박하며, OECD는 평균적으로 15.5%인데 비해 한국은 6.5%에 불과하다.

셋째, 중위소득 50~150%를 기준으로 할 때, 고소득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0%로 낮은 반면,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여성의 경우 64.4%의 경제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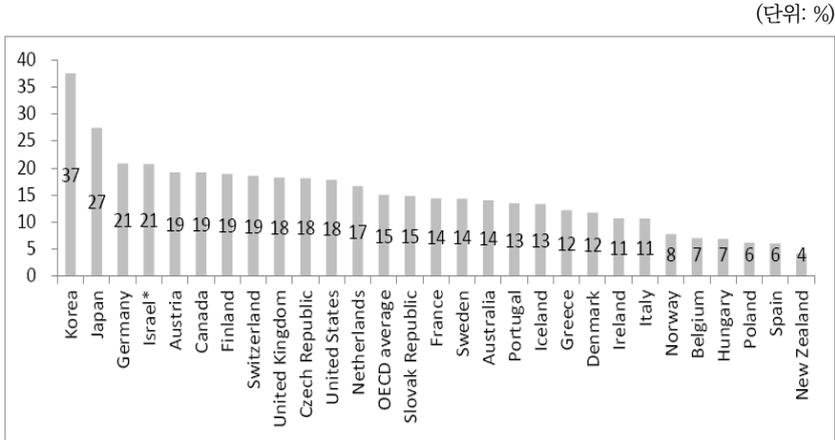
32) 2012년 취업자 대비 자영자 비중은 23.2%에 이르며, 자영업자의 92%가 1~4인 규모의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과다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자영업의 연간 창업률 대비 폐업률은 85%에 달하며, 특히 음식업 폐업률은 94.3%에 이른다(기획재정부, 2013). 이와 같이, 성공률이 낮은 자영업에 부부가 모두 종사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위험 분산의 차원에서 남성은 자영업에, 여성은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실제로 2011년 기준으로 돌봄노동시장 규모는 6개 서비스부문(노인요양서비스, 산후조리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환자간병서비스, 아동방문보육(교육)서비스, 가사서비스)에 486,518명으로 추산되었다. 이 중 공공부문 종사자가 약 20만명, 민간부문 종사자가 약 29만명으로 추정된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2.12.).

동 참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계층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선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고 매우 복잡한 이면들이 얽혀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성격차(gender gap 또는 segregation)가 심한 노동시장 환경에서 ‘일’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와, 아동 양육 및 교육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주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11년 기준으로 2,116시간으로 OECD 평균인 1,696시간을 무려 420시간이나 초과한다(관계부처합동, 2013.6.4.). 2011년 시간당 정액급여는 남성 평균 13,661원, 여성 평균 9,096원으로 여성의 시간당 평균급여는 남성의 66.6%에 불과하다(고용노동부, 2012).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에서 가장 크다. 또한 매우 전문화된 일부 부문을 제외하면 여성 노동시장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저임금직종에 몰려 있다. 출산·육아휴직제도와 성차별적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크게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업의 비가시적 장벽과 차별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워킹맘의 73.1%가 ‘고통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긴 노동시간으로 일과 가사를 병행하기 어렵고 성격차가 큰 노동시장 환경에서, 전문직이나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일부 여성을 제외하고는 일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면 피하고 싶은 선택지일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높은 반면, 고소득층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직 종사 비율이 높으면서 전체적으로는 경활률이 매우 낮은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2] 성별 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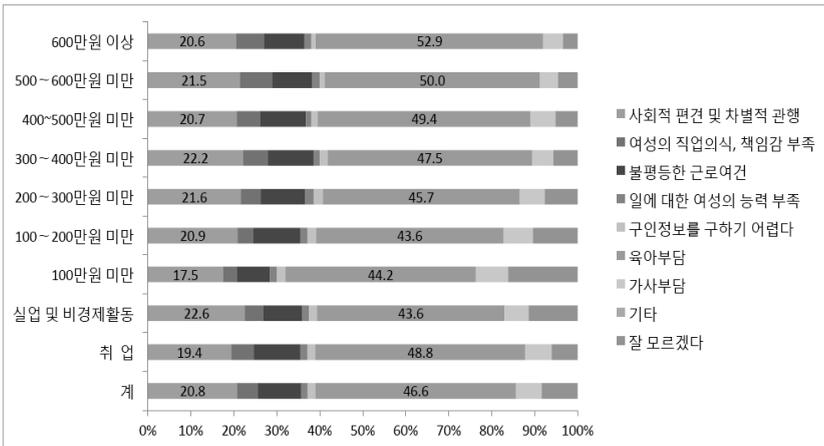


자료: <http://www.oecd.org/gender/data/>(다운로드: 2013/12/9)

다른 한편,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과도한 몰입과 경쟁 또한 고소득 여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 참가의 비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등히 높은 비율로 육아부담(46.6%)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소득계층별로 볼 때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부담이 여성 경제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성별과 자녀유무를 통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앞서 2장에서 소득계층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도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저소득여성의 경우 아동의 연령과 무관하게 아동의 유무는 경제활동 참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산층 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의 아동의 존재가 취업 결정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고소득층 여성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녀 교육에 투자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 저소득 여성에 비해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은 자녀의 존재가 취업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동시장 요인 뿐 아니라 교육·문화와 같은 또 다른 차원의 제도적 요인들이 함께 변화하여야만 여성 경제활동의 의미 있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3] 여성취업 장애요인



자료: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kosis.kr)

넷째, 아동의 존재는 여성 경제활동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도는 여성의 소득계층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아동의 영향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아동의 연령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보아야 할 부분은 상대적으로 3~5세 아동의 영향력이 낮다는 점이다. <표 3-6>에서 보듯이, 0~2세 아동의 승산비는 0.49, 3~5세 아동의 승산비는 0.64, 6~9세 아동의 승산비는 0.57로 3~5세 아동의 승산비가 가장 높다. 즉, 3~5세

아동이 미치는 경제활동의 비유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이 연령대는 보육정책의 주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최근 보편화된 보육제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심층인터뷰에서 한 취업모는 보육제도의 보편화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오전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이용할 수 있어 - 근무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든 반면,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오히려 아동에 대한 걱정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오전반이 끝나면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더라도 어머니의 퇴근 시간까지 많은 공백이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아동의 취학과 더불어 직장을 그만두는 어머니도 주변에서 흔히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2장의 분석결과에서, 고소득층 여성의 경우 6세 이하까지의 아동은 취업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6~9세 아동은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중산층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려와는 달리 유배우 여성의 소득은 가구소득을 평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장 <표 3-3>의 분석에서 여성 본인의 소득을 제외했을 때 저소득에 속하던 가구 중 44%가 여성의 소득을 포함할 때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소득을 제외했을 때 중산층이던 가구 중 8%가 여성 소득을 포함할 경우 고소득층으로 이동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소득을 제외했을 때 57.8%이던 중산층은 여성 소득을 포함했을 때 66.4%로 증가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약 8.6%p의 증산층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³⁴⁾.

34) 2장에서의 분석대상은 25~54세까지의 여성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동류혼 경향으로 인해 맞벌이의 증가가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와는 달리, 5장 <표 5-4>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내소득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최근으로 올수록 -2004년을 제외하고- 아내소득의 평등화 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고소득층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남편이 상위 20%의 소득을 가진 아내의 고용률은 37%에 불과한 데 비해, 남편이 하위 20%의 소득집단에 속한 아내의 고용률은 71.2%에 이른다. 그 결과 여성의 소득은 저소득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킬 확률이 훨씬 더 높고 따라서 여성 소득은 가구소득의 평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여성소득의 내부 불평등이 그리 크지 않은 것도 여성소득이 가구소득 평등화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같이, 여성의 소득은 빈곤과 불평등 모두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사회 전체 차원의 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미 저소득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진단(장지연·이병희, 2013)에서도 보듯이, 향후 여성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중산층 이상에서 추동될 경우 평등화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제2절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현정부의 핵심적 국정목표 중 하나는 “고용률 70% 달성: 일하고 싶은 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이다³⁵⁾. 최근 관련부처 합동으로

35) 그러나 여기에서 부제는 ‘여성’에만 대상을 제한해 놓고 보면 포괄적이지 않은 면이 있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5년의 로드맵과 세부 목표를 설정하면서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 친화적인 정책적·기업적·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여성 일자리 불일치(mis-match)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의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동향을 보면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줄어든 대신 상용직과 임시직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³⁶⁾.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여성 일자리는 서비스·판매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일자리 질과 안정성이 낮은 데 비해, 현재 비경황 여성은 상대적으로 의중임금이 높은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즉, 공급되는 일자리(vacancy)와 잠재적 일자리 수요(비취업여성 특성) 간의 불일치가 심하다는 것이다. 여성 일자리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려는 노력과 아울러,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경황 여성들의 수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매력적인(일자리 질,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의 측면에서) 일자리의 확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의향과 수요, 욕구를

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일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일하지 않는' 그래서 가장 경계가 허락된다면 '일'을 포기하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는' 경우가 비경제활동 여성 중 상당수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만약 국가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측면에서 고용률 증가가 필수적인 것이라면,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과 함께 좀 더 근본적으로 '누구나 일하고 싶게 만드는' 것도 여성 고용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36) 여성은 전체 임금근로자(7,618천명) 중 약 40% 이상(3,084천명)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속해 있어, 26.2%인 남성 비정규직 비율을 크게 상회한다(e-나라지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있는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부재하다시피하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가구 여건, 취업 욕구, 미취업 사유, 의증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여성 고용 증진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만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확산³⁷⁾도 방향성 측면에서 옳은 일이지만³⁸⁾, 이 때 ‘시간제 일자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³⁹⁾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산층 이상의 비경제활동여성의 경우 일자리의 자기통제 여지와 안정성을 중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임금이 다소 낮더라도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경제활동여성들이 일하고 싶게 만들 만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공이나 취미를 살린 소규모 (혹은 무점포) 창업, 협동조합이나 마을만들기와 같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의 진출, 문화단체나 시민단체의 유급활동, 프리랜서형 전문직종 등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내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여성의 경우 금전적 목적 못지않게 ‘일로부터 얻어지는 활력’에 의미를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과정에서부터 양성평등과 여성의 독립성을 고취시키는 내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⁴⁰⁾. 유교문

37) 2012년 시간제 일자리는 149만개이며, 이를 2017년까지 242만개로 확대하는 것이 “고용률 70% 로드맵”의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

38) OECD 국가의 고용률과 시간선택제 근로의 비중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급재호, 2013).

39) 네덜란드가 유연안정성을 통해 여성 고용률을 증가시킨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네덜란드에서는 여성 경제활동참여인구의 60.5%가 시간제 근로자로 분류될 정도로 시간제 근로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 나라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법」(1996)을 제정하여 근로조건과 임금, 사회보험가입 등에서의 차별을 없앴다.

40) 핀란드 출장 당시, 인터뷰했던 인구연구소(Institute of Population Research)의 Docen Anna Rotkirch 박사는 “핀란드 여성은 배우자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일하는 것이 당연

화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상당수 여성들이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의미와 정체성을 얻고자 한다⁴¹⁾. 물론 그 자체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여성의 독립성과 정체성이 여성 경제활동 여부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만 보면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의식과 독립성을 고취하는 것은 미래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취업맘 친화적’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의 재편이 요구된다. 여성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제의된다 하더라도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히 경제적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여성들이 취업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영유아의 존재는 특히 중산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저하시키는 변수 중 일관되게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하는 여성의 양육과 교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보육과 교육의 사회화’가 뿌리내려야 한다. 보편적 무상보육이 실현되었다고는 하나, 현재의 보육시스템은 취업맘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수 발견된다. 실제로, 민간보육시설에서 (3시간을 맡기든 12시간을 맡기든 보육료는 동일하기 때문에) 취업맘 자녀를 꺼려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영아에 대한 안전대책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심층 인터뷰와 전문가 인터뷰 결과). OECD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우리나라에서 12시간 이상 보육을 원하는 취업맘은 많으나 장시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의 접근성

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그렇다”고 단호하게 응답했다. 실제로 핀란드 주 연령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0%에 육박한다.

- 41)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94.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이 중 절반인 50.6%만이 가정일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절반은 결혼전(4.7%), 첫 자녀 출산까지(7.1%), 자녀 성장후(14.1%), 결혼 전과 자녀 성장 후(23.5%) 등 출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20~29세 여성 응답자조차도 94.2%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 중 61%만이 가정일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은 떨어진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취업맘에게 더 큰 고민을 안겨 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전 수업 이후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의 공백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가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취업맘 친화적인 보육시스템 정비와 관련해서 첫째, 취업맘 자녀의 비율이 높은 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취업맘 자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패널티를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장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2년 현재 2,203개소로 전체 어린이집(42,527개소)의 4.8%에 불과하며, 직장어린이집은 이보다도 훨씬 적은 523개소 1.2%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13).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공적 투자를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요건을 완화하며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육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취업맘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간연장 보육, 24시간 보육 지정 보육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취업맘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여야 한다. 셋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공백기를 안전하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물론 현재도 대부분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시간이 짧고, 내니(nanny)의 활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내니의 자질을 검증하기도 어렵다. 방과후 교실,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안심귀가서비스, 사교육, 내니 등 다양한 자원을 체계화하고 아동의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향후 추가적인 보육·교육제도나 관련 정책 설계시 '여성의 고용영향평가'를 사전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번 도입된 정책은 불가역성으로 인해 되돌리거나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관련 정책이 특히 여성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비유인요소가 있다면 도입에 신중을 기하거나 개선방안

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복지 지형 자체를 Orloff(2006)가 말하는 바의 '친여성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친여성적'이 '반남성적'임을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남성적'이기도 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정규직 남성중심의 노동시장과 기업문화는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곤 한다. 4장에서 확인된 바, 서구 국가들에서 1980년대 이전에 나타났던 M자형이 역U자형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공공부문 종사자와 관리자, 전문가 비율 상승, 남녀 간 임금격차 등 고용격차 감소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들 '전환국'들은 여성들의 '결혼·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성별 격차 확대'라는 악순환고리를 끊고 '경력축적-성별 격차 축소'라는 선순환고리로 들어서면서 여성 고용률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 과정에서 보육의 사회화, 육아휴직제도의 강화 등 친여성적 고용-복지정책이 중요한 지원군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역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서구의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의 혜택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⁴²⁾. 출산휴가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은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육아휴직의 경우 정규직조차도 기업의 분위기 때문에 눈치를 보거나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다. 낮은 육아휴직 급여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42) 육아휴직제도의 사용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아동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 2001년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는 16.6%에 불과하였으나,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68.6%로 나타났다. 전체 출생아 중에서 육아휴직 사용자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12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5%에 미치지 못하는 13.2% 수준이다(김은지, 2013).

이 보편화되어야만 저출산과 여성고용 활성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기 기간 동안 ‘의무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평균보다 연간 420시간이나 더 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의 양극화가 일어나기 쉽다. 즉,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경활인구는 일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비경활인구는 일할 의욕이나 의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일에 지쳐 가사나 육아를 등한시하게 되고, 전업주부는 가사나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일을 할 엄두는 못내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 전체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가정 양립과 여성 고용의 활성화도 동반 성장할 것이다. 셋째, 기업에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규제와 인센티브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고용 활성화는 또 다른 주요한 사회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 및 격차 축소와 동일한 방향성을 갖도록 추구되어야 한다. 즉, 여성 고용 활성화는 중산층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지향성을 가져야 하며, 최소한 불평등과 격차를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3장과 5장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중산층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류혼 경향과 향후 고용 증가의 주요 대상 집단이 중산층 이상의 여성이 될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지금까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긍정적 효과가 역전될 수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괜찮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재 여성들이 진출해 있는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것

도 여성 고용과 관련해서 주요한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관련해서, 첫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한 여성이 집중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향후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임금, 근로조건, 안정성, 4대 사회보험 가입 등과 관련해서는 열악한 일자리에 포함된다. 또 직무표준이나 영역이 불명확하고 전문성이 낮아 단순 임시·일용직 일자리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유연안정성, 직무표준,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질을 전반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정서 및 감정 노동에 대한 안전 규범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는 대인서비스, 즉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일자리가 많다. 백화점, 마트, 상점, 은행, 돌봄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상시적으로 고객을 불평, 불만, 폭언, 심지어 폭행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직종의 경우 직장 내 고객대응팀을 상설화하고, 심리상담사나 직장 사회복지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며, 의무 휴식시간을 두도록 하고,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직장 내·사회적 차원의 안전 규범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내의 남녀간 임금 격차와 근로조건, 인사상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여성이 더 높는데 비해,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들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크다. 여성 경력단절이 이러한 임금격차의 주범으로 지목되곤 하지만 그 못지 않게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가시적·비가시적 차별 요인들도 임금격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차별 요인들을 발견해 내고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해 나갈 때만이 여성 고용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참고문헌 <<

- 강이수(1993). 1920~60년 한국 여성노동시장 구조의 사적 변화: 고용과 임금격차 변화를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4:166-209.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2011.12).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과제. 제81차 상무위원회 중간보고 안건.
- 고용노동부(2012). 여성과 취업.
- 관계부처합동(2013.6.4). 고용률 70% 로드맵.
- 구인회·임세희(2007). 1990년대 이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불평등 악화의 요인 분해, *사회복지연구* 34권: 5-27.
- 금재호(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현황과 과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위원회」 워크숍 자료.
- 금재호·윤자영(2011). 외환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기획재정부(2013.3).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 최근경제동향.
- 김복순(2012). 여성노동시장의 고용구조. 월간 노동리뷰 2012년 6월호: 64-73.
- 김수정(2007).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위험의 젠더격차. *페미니즘연구* 7(1): 93-133.
- 김수정(2008). 빈곤의 여성화’ 재검토: 지표의 사실과 허구. *젠더와 사회* 7(2): 183-211.
- 김수정(2008).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 *보건사회연구* 28(2): 33-52.
- 김영미·신광영(2008). 기혼여성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가구소득불평등의 변화, *경제와 사회* 77호.
- 김영순(2010).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사회권을 통해 본 한국의 젠더체제. *사회보장연구* 26(1): 261-287.

- 김영옥·민현주·김복순(2006).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이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옥·이선행·김민수(2011). 2000년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미래전략: 여성 자영업자의 감소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지(2013). 일가족양립 실태와 평가: 부모휴가 및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워크숍 자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김은하(2009). “근로빈곤층 여성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인적자본, 가구특성, 노동시장 지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3): 239-268.
- 김진욱(2005).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가사노동분담에 관한 협조적 적응, 이중노동부담, 적응지체 가설의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No.3, 2005. 8: 51-72.
- 김진욱·고은주(2012). 한국 소득이전 빈곤감소 효과의 성분화: 2000-2010 빈곤의 여성화 추이연구. 사회복지정책 39(1): 23-53.
- 김혜원(2006).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의 변동요인 분석, 노동리뷰, 2006년 8월호: 41-58.
- 백진아(2004). 고학력 여성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4.6, 587-591.
-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2012. 12월말 기준).
- 성재민(2012). 배우자 유무별 여성의 고용률 변화. 노동리뷰(2012년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어수봉(1991).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1991-003).
- 여유진·강신욱·이봉주·정익중·최은영·박세경·오지현·박경희(2010). 복지분야 휴먼 뉴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자영(2012). 외환위기이후 기혼가구의 노동공급 변화요인, 여성경제연구 9(1): 99-122.
- 윤자영(2010). 기혼 여성 취업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 이병화·홍경준·이상은·강병구·윤자영.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남재량·박혁·김은지(2004).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근태·고가영(2013).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 완화, LGERI 리포트 2013. 6.19.

- 이병희·강신욱(2007).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 이전조세의 재분배 효과 추이 분석, 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균(2008). 경제위기 이후 가구단위 소득 구성요소와 직업의 소득불평등 효과: 도시 임금소득자 가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8권 제4호: 119-146.
- 이성균(2008). 경제위기 이후 가구단위 소득 구성요소와 직업의 소득불평등 효과: 도시 임금소득자 가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8(4): 119-146.
- 이주희(2012).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재구조화: 월스톤크래프트 딜레마의 극복을 위한 대안. 한국여성학 28(3):35-62.
- 이철희(2008). 1996~2000년 한국의 가구소득불평등 확대: 임금, 노동공급, 가구구조의 변화의 영향, 노동경제논집 31(2), pp. 1-34.
- 장경섭(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창비.
- 장미혜·송효진·이인선(2012). 30-40 여성의 생활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지연·이병희(2013).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선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호.
- 정규연(200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방안. 세무학연구 24(1): 131-155.
- 최바울(2012). 소득불평등 변화요인 및 소비지출의 노동수요 파생효과 분석: 맞벌이가구의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박사학위 논문.
- 최선영·장경섭(2012). 압축산업화 시대 노동계급가족 가부장제의 물질적 모순: '남성생계부양자' 노동생애 불안정성의 가족 전이. 한국사회학 46(2): 203-230.
- 최숙희 (2005). 외환위기이후 저출산 원인 분석. Issue Paper(2005.12.23.). 삼성경제연구소.
- 통계청(201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 통계청(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틸리, 루이스 A. and 조앤 W. 스콧 (지음). 김영·박기남·장경선 (옮김) (2008). 여성 노동 가족. 후마니타스(Tilly, Louis A. and Joan W. Scott. 1987.

Women, Work and Family. Taylor & Francis Group LLC.)

- 홍승아 외(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사례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김은지·선보영(2013). 가정내 육아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 양육수당제도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수경(200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김가울(2005).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 맞벌이가구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9월호.

- Aslaksen, I., Wennemo, T. and Aaberge, R. (2005).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The impact of choice of spouse on family labour income inequality', *Labour* 19: 491-515.
- Breen, R. and Salazar, L. (2011) '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and Earnings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3):808-843.
- Burtless, G. (1999) 'Effects of Growing Wage Disparities and Changing Family Composition on the U.S. Income Distribu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43: 853-865.
- Burtless, G. (2003) 'Has Widening Inequality Promoted or Retarded US Growth?' *Canadian Public Policy* 29(s1):185-202.
- Cancian, M. and Reed, D. (1998) 'Assessing the effects of wives' earnings on family income inequa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 73-9.
- Cancian, M. and Reed, D. (1999) 'The impact of wives' earnings on income inequality: Issues and estimates', *Demography* 36: 173-84.
- Cancian, M. and Shoeni, R. (1998) 'Wives's Earnings and the Level and Distribution of Married Couples' Earning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Income Distribution* 8(1):45-61.

- Cancian, M. Danziger, Sh. and Gottschalk, P.(1994). ‘*Working Wives and Family Income Inequality among Married Couples*’, in Danziger, Sh. and Gottschalk, P.(eds.) *Uneven Tide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Russell Sage Foundation.
- Cipollone, Angela., Eleonora Patacchini and Giovanna Vallanti. (2012). “Women’s Labour Market Performance in Europe: Trends and Shaping Factors”. *CEPS Special Report*(No. 66/September 2012).
- Cusack, T. R., T. Notermans, and M. Rein. (1989). “Political-Economic Aspects of Employmen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7:471-500.
- Danziger, Sh.(1980). 'Do Working Wives Increase Family Income inequalit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XV(3): 444-451.
- Del Boca D. and Pasqua, S. (2002). ‘Employment Patterns of Husbands and Wives and Family Income Distribution in Italy (1988-1998)’, *IZA Discussion paper series* no.489.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Vol. 6)*. Cambridge: Polity press.
- Esping-Andersen, G. (2007). ‘Sociological explanations of changing income distribution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 639-58.
- Fei, J. C., Ranis, G. and Kuo, S. (1978). ‘Growth and the family distribution of income by factor componen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2: 17-53.
- Fernández, R. & Rogerson, R.(2001). ‘Sorting And Long-Run Inequa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4): 1305-1341.
- Gornick, J. C., & Jacobs, J. A. (1998). "Gender, the welfare state, and public employment: A comparative study of seven industrialized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8-710.
- Gornick, J. C., & Meyers, M. (2005). *Families that work: Policies for*

reconciling parenthood and employment. Russell Sage Foundation.

Gornick, J. C., Meyers, M. K., & Ross, K. E. (1997). "Supporting the employment of mothers: Policy variation across fourteen welfare stat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7(1), 45-70.

Harkness, S. (2010). 'The contribution of Women's Employment and Earnings to Household Income Inequality: A Cross-Country Analysis', *Working Paper. Luxembourg: Luxembourg Income Survey Working Paper Series.*

Harkness, S. (2013). 'Women's Employment and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n Gornick, J. and Jäntti, M.(ed) *Income Inequality: Economic Disparities and the Middle Class in Affluent Countr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Hyslop, Dean R. (2001). "Rising U.S. Earnings Inequality and Family Labor Supply: The Covariance Structure of Intrafamily Earnings." *American Economic Review* 91:755-77.

Jaumotte, Florence. (2003).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mpirical Evidence on the Role of Policy and Other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37.

Jenkins, S. (1995). 'Accounting for Inequality Trends: Decomposition Analyses for the UK, 1971-1986', *Economica* 62: 29:63.

Karoly, L. A. and Burtless, G. (1995). 'Demographic change, rising earnings inequality, and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well-being, 1959-1989', *Demography* 32: 379-405.

Kolberg, J. E.(1991). "The Gender Dimension of the Welfare Stat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21:119-48

Luxembourg Income Study, <http://www.lisdatacenter.org/>.

Mandel, H., and Semyonov, M. (2006). "A welfare state paradox: state

- interventions and women's employment opportunities in 22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1 (6): 1910-1949.
- Mandel, Hadas. (2009). "Configurations of Gender Inequality: The Consequences of Ideology and Public Polic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0(4).
- Mastekaasa, A. and Birkelund, G. (2011). 'The Equalizing Effect of Wives' Earnings on Inequalities in Earnings among households' *European Societies* 13(2): 219-237.
- Mincer, J. (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United States*.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Ochiai, E.(1997). *Japanese family system in transition : a sociological analysis of family change in postwar Japan*, Tokyo: LCTB International Library Foundation, 이동원(1997)(역) 21세기 가족에 게 : 일본의 가족과 사회, 양서원.
- OECD (2007). *Modernising Social Policy for the New Life Course*, Paris: OECD.
-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 OECD(2013). *Government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3-en.
- Orloff, Ann Shola. (2006). *"From Maternalism to "Employment for All": State Policies to Promote Women's Employment across the Affluent Democracies"*. edited by Jonan Levy. *The State After Statism*. Harvard University Press.
- Pasqua, S. (2008). 'Wives' work and income distribution in European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5: 197-226.
- Reed, D. and Cancian, M.(2009). *'Rising Family Income Inequality: the*

- Importance of Sorting*, mimeo,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University of Wisconsin.
- Rein, M.(1985). "Women,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in Klein R. and M. O'Higgins(Ed.). *The Future of Welfare*, New York: Basil Blackwell: 37-57.
- Schwarz,C.R. and Mare, R.D.(2005). 'Trends in Educational Assortative Marriage From 1940 to 2003', *Demography* 42(4): 621-646.
- Schwarz,C.R.(2010). 'Earning Inequality and the Changing Association between Spouses' Earning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5(5): 1524-57.
- Shorrocks, A. F. (1983). 'The Impact of Income Components on the Distribution of Family Incom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8(2): 311:326.
- Shorrocks, A. F. (1982).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50: 193-211.
- Siter, Haya., Noah Lewin-Epstein and Michael Braun. (2001). "Welfare Regimes, Family-Supportive Policies, and Women's Employment along the Life-Cours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 1731-60.
- Treas, J.(1983). 'Trickle down or Transfer? Postwar Determinants of Family Income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546-559
- Ugreninov, Elisabeth, Bjørn Hvinden and Viggo Nordvik. (2013). "Can Work-Family Policies Reduce the Poverty Gap between One-parent and Two-parent Household?: A Multi-level Analysis of child Poverty across 25 European Countries". *COPE(Combating Poverty in Europe) Project Paper*.
- Walby, S. (1990). *Theorizing patriarchy*. Basil Blackwell.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판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회비납부

-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019-219956-01-014 (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01	근거중심보건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김남순
연구 2013-02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3-03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대중
연구 2013-04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윤강재
연구 20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기혜
연구 2013-06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김정선
연구 2013-07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박은자
연구 2013-08	진료비지출 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신현용
연구 2013-09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3-1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김동진
연구 2013-11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I: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강희정
연구 2013-12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원종욱
연구 2013-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강신욱
연구 2013-14	소득계층별 순조세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남상호
연구 2013-15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김태완
연구 2013-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3-17	2013년 빈곤통계연보	임완섭/노대명
연구 2013-1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3-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이현주
연구 2013-20	한국복지매일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3-21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박세경
연구 2013-22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정홍원
연구 2013-2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성희
연구 2013-24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질과 공급특성 분석 연구	박수지
연구 2013-25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박인화
연구 2013-26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고제이
연구 2013-27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신화연
연구 2013-28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유근춘
연구 2013-29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현황과 대책	정영철
연구 2013-30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정은희
연구 2013-31-01	한중일 인구동향과 국가 인구전략	이삼식
연구 2013-31-02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0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신윤정
연구 2013-31-04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은정
연구 2013-31-05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김미숙
연구 2013-31-0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여유진
연구 2013-31-07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도세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31-08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3-31-09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신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이소영
연구 2013-31-10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황나미
연구 2013-31-1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분석을 위한 지역 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오영희
연구 2013-31-1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외부위탁
연구 2013-31-13	남북한 통합 시 적정인구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1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정경희
연구 2013-31-15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연구	이윤경
연구 2013-31-16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 방안	윤석명
연구 2013-31-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선우덕
연구 2013-31-1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수
연구 2013-31-19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정영호
연구 2013-3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외부위탁
연구 2013-31-22	농촌 노인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외부위탁
연구 2013-31-23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윤경
연구 2013-32-1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서미경
연구 2013-32-2	건강영향평가TWC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최은진
연구 2013-33	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홍석표
연구 2013-34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년차)	정은희
연구 2013-35	2013년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전략III: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 모델	이철선
연구 2013-36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3-3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송태민
연구 2013-38	2013년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운영: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이상영
연구 2013-39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영	김승권
연구 20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이현주
연구 2013-40-2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표본가구 통합DB(KOWEPS Combined)을 중심으로	최현수
연구 2013-41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입산출산 부가조사	최정수
협동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오영호
협동 2013-2	가임기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이상림